

國民年金 任意加入者 擴大를 위한 實態調査研究

1988.

정 경 배 박 경 숙 박 능 후
권 선 진 권 선 희 김 성 희



韓國人口保健研究院

머 리 말

그동안 經濟의 高度成長에만 全力을 쏟아왔던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1980 年代 후반은 우리 社會가 各 分野에서 多様な 要求의 분출을 經驗하는 격동의 時代이다. 그 中 社會福祉에 대한 國民들의 要求는 나날이 增大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여 醫療保險의 擴大, 國民年金制度의 實施 등 社會福祉制度가 하나씩 우리 社會에 뿌리를 내리기 始作하였다.

1973 年에 立法되어 1988 年부터 實施된 國民年金制度는 實現 가능한 面을 증시하여 첫 단계로서 10 人以上 事業場의 勤勞者와 使用者만을 當然加入對象으로 하여 所得과 聯關짓는 각출 및 給與를 實施하는 制度로서 始作하였다. 이와같이 勤勞者를 最初의 對象으로 하여 점차로 그外 集團에게 擴大해 나가는 것이 所得比例年金에서 基本的으로 볼 수 있는 年金擴大段階이다. 獨逸은 1889 年 最初로 勞動者를 中心으로 所得比例年金制度를 實施하여 100 年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全國民에게 當然加入을 適用하지 않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 15 年, 프랑스의 경우 18 年이 걸려서야 자영자 一部가 年金에 當然加入되었다.

그러나 現在 韓國은 이미 年金制度를 相當히 發展시킨 주변의 福祉先進國들과 比較되어 오래가지 않아 年金擴大에 대한 相當히 높은 國民의 要求에 직면할 것이며 따라서 年金의 當然加入擴大範圍를 넓혀나가는 期間이 위 國家들처럼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年金制度를 오랫동안 實施해 온 나라들의 산 經驗이 있으므로해서 보다 짧은 期間內에 社會保障制度의 토대가 되는 國民年金制度를 全國民에게 擴大 實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制度가 福祉先進國에서 實施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韓國에 適合한 制度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은 社會保障制度란 各 나라의 高유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로부터 도출되는 各 나라 高유의 產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民年金制度 當然加入擴大를 구상하기에 앞서 韓國 高유의 風土에 대한 調査가 먼저 先行되어야 한다. 이번 調査를 통하

여 國民年金 當然加入 擴大에 對한 必要性 및 그에 障礙가 되는 要素들을
分析함으로써 앞으로 當然加入 擴大方向을 提示하게 된 것은 참으로 意味
있는 일이라 思料된다.

이 調査가 韓國固有의 風土에 適合한 國民年金制度 發展을 이루는데 초
석이 되기를 바라며 本 研究를 주도적으로 遂行한 研究陣들의 노고를 치
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 研究書의 內容은 研究陣의 個別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
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8 年 12 月

韓國人口保健研究院長 池 達 顯

목 차

제 1 장 문제규정	5
제 2 장 문헌연구	11
제 1 절 연금미가입계층의 특성	12
제 2 절 연금제도관련 기존조사문헌	20
제 3 장 연구가설 설정	33
제 1 절 연구질문 설정	33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41
제 4 장 조사설계	43
제 1 절 조사대상 모집단 및 표본추출	43
제 2 절 실제 조사대상 가구주 및 조사완료가구주의 수	47
제 3 절 조사기간	48
제 4 절 조사방법	48
제 5 절 분석기법	48
제 5 장 연구결과분석	49
제 1 절 경제활동종류별 집단 분포	49
제 2 절 경제활동종류별 집단 특성의 비교	50
제 3 절 가설검증	79
제 6 장 결 론	111
부록 I 당연가입확대대안	123
부록 II 全國民年金 확대방안 기초조사 조사표	159
참고문헌	185

표 목 차

〈표 1- 1〉	가입대상사업장 대비 현 가입사업장	5
〈표 1- 2〉	각 공적연금제도 가입자수	6
〈표 2- 1〉	1986년 15세이상 인구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별 수	16
〈표 2- 2〉	1987년도 각 유형별 인구수와 백분율	18
〈표 5- 1〉	경제활동종류별 표본수 및 비율—비농민가구주의 경우	50
〈표 5- 2〉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령	52
〈표 5- 3〉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53
〈표 5- 4〉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결혼상태	54
〈표 5- 5〉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유직가족에 대한 ANOVA	55
〈표 5- 6〉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10인이상 사업장 근무경험여부...	57
〈표 5- 7〉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퇴직시 지위	58
〈표 5- 8〉	경제활동별 10인이상 사업장 퇴직동기	59
〈표 5- 9〉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산업	61
〈표 5-10〉	경제활동별 산재율	62
〈표 5-11〉	경제활동별 은퇴예정연령	63
〈표 5-12〉	경제활동별 노동대체가능 가족원여부	64
〈표 5-13〉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후계자 선정여부	65
〈표 5-14〉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에 대한 ANOVA	66
〈표 5-15〉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1에 대한 ANOVA	67
〈표 5-16〉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에 대한 ANOVA	67
〈표 5-17〉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2에 대한 ANOVA	68
〈표 5-18〉	가구근로소득 1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71

〈표 5-19〉	가구근로소득 11 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71
〈표 5-20〉	가구근로소득 2 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72
〈표 5-21〉	가구근로소득 22 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73
〈표 5-22〉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 분포	74
〈표 5-23〉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1 분포	75
〈표 5-24〉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 분포	76
〈표 5-25〉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2 분포	77
〈표 5-26〉	경제활동별 가구의 노후대책	81
〈표 5-27〉	경제활동별 가구의 연금에 대한 필요성	82
〈표 5-28〉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가입의사	82
〈표 5-29〉	자영가구주의 사업자등록증 소유여부	84
〈표 5-30〉	농가의 근로소득분포와 농지세 과세표준액 분포의 비교 ..	85
〈표 5-31〉	자영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과세표준액 분포	86
〈표 5-32〉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釀出料 부담형태	90
〈표 5-33〉	정부의 釀出料부담 당위성여부에 대한 가구주응답	91
〈표 5-34〉	정부의 釀出料 부담능력 유무에 대한 가구주응답	92
〈표 5-35〉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釀出料 수준에 대한 ANOVA ...	93
〈표 5-36〉	정부의 釀出料 실제부담 가능수준에 대한 ANOVA	93
〈표 5-37〉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현 釀出料 (7,500 원) 에 대한 부담정도	94
〈표 5-38〉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釀出料 부담가능수준에 대한 ANOVA	95
〈표 5-39〉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1	97

〈표 5-40〉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11	97
〈표 5-41〉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2	98
〈표 5-42〉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22	98
〈표 5-43〉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釀出料 부과시기	99
〈표 5-44〉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 수	100
〈표 5-45〉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101
〈표 5-46〉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 중 연금가입가능자의 비율	101
〈표 5-47〉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여부	105
〈표 5-48〉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國民年金에 대해 알면서도 가입안한 이유	106
〈표 5-49〉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금이 필요없다거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108
〈표 5-50〉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연금가입형태	109

부 록

〈표 1〉	각 대안별 가입자분류	129
〈표 2〉	각 대안별 재원조달방안	130
〈표 3〉	각 대안별 급여구조	132
〈표 4〉	1986년 5인미 만규모 취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수	138
〈표 5〉	급여수익률 및 釀出料 납부기간에 따른 제 2 호 피보험자의 정액 釀出料	143

참고문헌	185
------	-----

제 1 장 문 제 규 정

1988년 1월부터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國民年金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國民年金은 실시초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지만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규정하여 임의가입대상자의 항목에 분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우선적인 가입대상 및 수혜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國民年金制度의 실시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총 國民年金 가입자는 4,248,022명으로 전체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인 24,776,812명의 17%이어서 아직 국민 대다수가 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당연적용가입대상 사업장 62,204개 중 52,552개소가 가입하여 84.5%의 사업장이 가입하였고, 임의적용가입대상 사업장 45,208개소 중 795개소가 가입하여 1.8%가 가입하였으므로 당연적용가입대상 사업장은 대부분이 國民年金에 가입한 반면, 임의적용가입대상 사업장의 약 98%가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 표 1-1 〉 가입대상사업장 대비 현 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	합 계
총가입대상 사업장 (A)	62,204	45,208	107,412
현가입 사업장 (B)	52,552	795	53,347
B/A	84.5 %	1.8 %	49.7 %

자료 : 國民年金管理公團, 업무보고, 1988. 4월

지역가입자는 16,354,000¹⁾명인 취업자수에서 5인이상사업장 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가입자인 5,272,000 명을 제외한 가입 대상자 중에서 556 명만이 ²⁾ 가입하여 연금에 가입 한 사람은 1 %도 안되는 실정이다.

〈표 1-2〉 각 공적연금제도 가입자수

연 금 제 도 종 류	수
• 國民年金制度	4,248 천명
• 공무원 연금제도	738 천명
•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133 천명
• 군인연금제도	153 천명
계	5,272 천명

자료 : 國民年金管理公團 내부자료, 1988,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88.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988.

국방부 내부자료

이와같이 사업장근로자를 우선적으로 國民年金 당연가입대상자로 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피고용인을 우선적인 공적연금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연금대상을 그 외의 집단에게 확대해 온 외국의 선례에서 나타나듯이 본인의 노동 외에는 아무런 수입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다른 자영자 집단보다 연금을 더 필요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업장근로자, 그 중 특히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가 소득과 악이 가장 용이한 집단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보험료부과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國民年金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p.24.

2)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 1988년 4월

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나타나듯이 장래 수혜자가 자신 스스로 노후, 장애, 사망을 준비해야한다는 자립 정신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소득없는 사람에게 까지 당연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자립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당연가입대상자를 10 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 국한시키게 된 동기일 것이다.

그러나 10 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외에 자신의 노동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많은 근로자 및 생산수단이 있어도 소규모의 자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소규모 자영자등 실제로 國民年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득과악의 어려움의 이유로 인하여 國民年金에서 제외되고, 수입이 전혀 없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제외될 때, 연금재정은 안정될지 몰라도 國民年金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연대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國民年金가입자 내에서만 달성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국민연대의식의 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나라들이 그러하였듯이 한국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당면하여 國民年金의 당연가입자격을 완화하여 당연가입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國民年金의 당연가입을 확대하는 과제는 용이한 것이 아니다. 각 외국의 나라들이 그들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연금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현재 國民年金制度를 가지고 있는 132 개국의 나라³⁾ 중에서 1985년을 기준으로 한국보다 국민 1 인당 GNP가 높은 나라는 39개국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어민이나 농어민이외의 자영자를 당연가입시키면서 한국처럼 연금제도로 사회보험의 형태만 취하고 있는 나라는 11 개국이며 (Algeria,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5, 1986.

Austria, Barbados, Cyprus, Gabon, Germany, Fed. Rep., Greece, Malta, Netherlands, Spain, Suriname) 그 11개국 모두 농어민이나 자영자를 國民年金에 당연가입시키는 형태가 다르다. 11개국 중 Austria 와 Greece 2개국은 농어민을 특별한 제도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Gabon은 자영자를 분리된 제도에서 수용하고, Germany, Fed. Rep. 과 Spain 두나라는 자영자와 농어민을 다 특별한 제도로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6개국은 자영자와 농어민을 다 한 연금제도에서 통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자영자와 농어민을 연금제도내에 수용하는 형태가 각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때 자영자나 농어민을 연금제도내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단 한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되 자국의 환경에 알맞는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도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연금제도의 확대에 관련된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제반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에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확대과제는 곧 현재 연금제도의 확대를 필요로하는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의 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여건들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기초로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산출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연금제도의 확대를 필요로하는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힘으로써 앞으로 國民年金의 당연가입 확대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國民年金 당연적용 확대를 위한 과제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지며, 그것은 곧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國民年金의 당연가입 확대대상의 선정방향, 재원조달의 방향, 연금제도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이들을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다.

(1) 國民年金 확대대상의 선정에 관한 과제 : 國民年金을 일률적으로 확

대해야 하는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찾아야 하며, 정해진 요건하에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대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과제는 國民年金의 확대를 위한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것으로 목표집단을 설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연금임의가입 대상자집단이 연금에 대한 필요성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인지 다양한 집단인지를 규정하여 필요성 측면에서 연금확대의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것 ; 둘째, 연금임의가입 대상자집단이 연금에 대한 수요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인지 다양한 집단인지를 규정하여 수요측면에서 연금확대의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것 ; 셋째, 보험료 부과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금임의가입 대상자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 다양한 집단인지를 규정하여 연금확대의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금가입 대상자집단이 어떤 한 변수에 대해 각 집단별로 별로 중요한 차이가 없는 변수값을 가질 때 연금 임의가입대상자집단이 그 변수에 대해 동질적인 집단이다. 혹은 일관성 있는 집단이라고 하며, 중요한 차이가 나는 변수값을 가질 때 다양한 집단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필요성,수요, 보험료 부과가능성 측면에서의 목표집단을 선정하여 확대대상의 시간적 확대방안 및 순서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목표집단을 설정하고 일관성 및 다양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다만 한 요인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연금에 대한 필요성, 수요, 보험료 부과가능성 등의 여러 요인이 연금형태를 결정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國民年金이 10 인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당연가입대상자로 하게된 배경에는 근로자들이 자영자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필요로 한다는점과 보험료부과가 용이하다는 요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부담이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그친 이유 중에 하나도 보험료를 혼자의 힘으로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범위와 그들의 실제 부담능력정도를 기존 소득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런 경우는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보다도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방안의 결핍이 연금형

태의 결정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예라 할 수 있다.

가야 하는가?

이 과제는 國民年金의 확대대상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원 조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國民年金 임의가입자집단 간에 보험료 부과형태에 대한 선호도나 정부부담에 대한 기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수준, 보험료 부담능력, 무급가족종사자의 실태 및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 國民年金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에 대한 과제: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國民年金제도의 가입형태, 또는 國民年金制度에 대한 인식교취 등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과제는 선호하는 가입 형태 및 가입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임의 가입 대상자집단의 차이유무를 파악하여 國民年金 '당연가입 확대에 따르는 자격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측면의 과제는 연금제도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및 그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측면, 수요측면, 보험료 부과 가능성측면, 재원조달과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측면에 나타나는 집단간의 상이점, 또는 동질성을 파악하여 國民年金의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순위 및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향을 결정하고, 또한 國民年金가입방식 및 가입촉진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가지 측면에 연관된 기존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이러한 네가지측면에 대해 실시된 연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유도하고 이어 연구가설 및 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 다음장에서는 자료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그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제 2 장 문 헌 연 구

연금제도의 시행연륜이 일천한 까닭에 확대적용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드물다. 특히 연금제도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건들을 파악하여 國民年金 당연가입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들은 아직 행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國民年金확대방안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미가입계층을 구성하는 특정집단별로 연금제도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이 요구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임의가입 대상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 종류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수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있는 까닭에 이들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상정하여 제도확대 실시를 시도할 경우 대상내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출발한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 확대실시의 과정적 전략으로서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 역시 미실시계층내에 특성이 구분되는 하위집단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확대실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수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짓고 제도실시와 관련되는 변수에 대해서 집단간 동질성 및 이질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실시단계에서 직면하는 당위적 실시요청과 현실적 적용 불가능간의 갈등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며, 동시에 각 집단의 특성에 부응하는 보다 현실성있는 제도확대 실시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자영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자가 누구인지를 우선 규정하고, 자영자의 성격 및 구조를 이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 중에 목표집단

이 누구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집단의 성격에 맞는 연금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금제도를 분립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¹⁾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미가입계층을 구성하는 특정집단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여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가입계층이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있어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당연가입 확대대상을 선정하고, 재원조달의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통계치상에 나타난 미가입계층의 특성과 연금확대측면에서 연금미가입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을 찾고, 연금미가입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간의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것이 처한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연구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입각하여 본 연구가 연금확대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도출해 낼 것이다.

제 1절 연금미가입계층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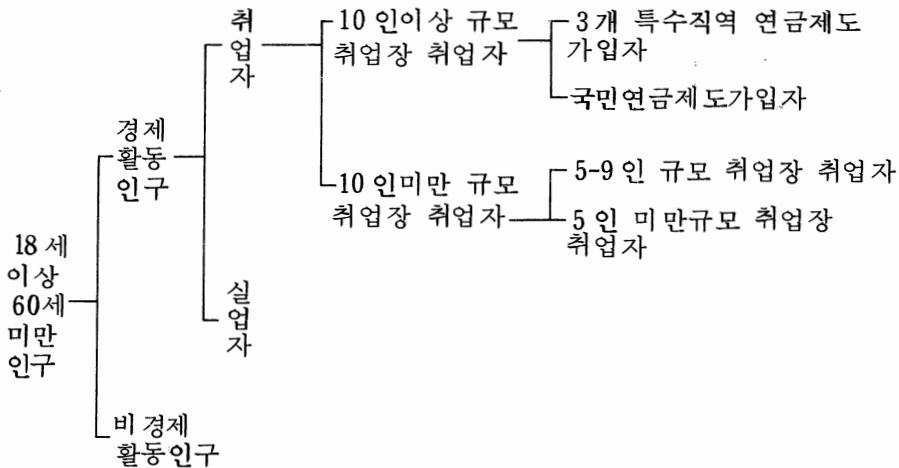
1. 미가입계층의 분류

연금미가입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미가입층이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 준거를 찾아서, 그 준거대로 미가입층을 분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가

1) Kenneth Thompson,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Schemes For Self-Employed Persons, Report for the Eighth ISSA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1988, pp.18-22.

입층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데는 여러가지 준거가 있을 수 있다. 성, 연령, 산업, 취업 형태, 취업장규모, 종사상의 지위 등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 취업장규모별로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연금미가입층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종사상의 지위는 소득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하위집단별로 경제적 특성의 상이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준거로 하여 연금미가입층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이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國民年金法이 가입자의 분류기준으로 택하고 있는 취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미가입계층을 분류하려면 취업장 규모의 선행개념인 취업여부가 기준이 되고 이는 다시 경제활동여부의 선행개념을 가진다. 이러한 경제활동여부 - 취업여부 - 취업장규모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중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중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 미만의 임시고용직을 제외하면 기존의 3개 특수지역 연금제도나 國民年金制度에 당연가입되어야 하

는 계층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법지식의 미비나 고의적인 회피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소수의 집단이 있을 것이나 그 수를 무시하기로 한다.

취업자 중에서 10인이상규모취업장 취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모두 임의가입 대상자인데 이들은 5-9인 규모 취업장 취업자, 5인미만 규모 취업장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 범주의 대상 계층 중에서 1988년 4월말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임의가입한 5-9인규모 취업장 종사자 5,700명과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한 556여명을²⁾ 제외한 거의 전부가 현재 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확대적용의 대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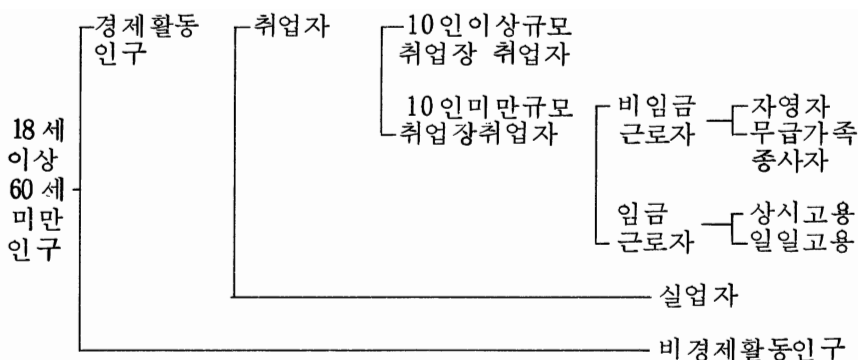
18세 - 60세미만의 인구 중 國民年金制度 등 4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한 5,272천명을 제외한 19,505천명이 國民年金制度 확대적용의 대상이 되는 계층인데, 이들을 특성별로 유형구분함에 있어서 취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적합지 못하다. 왜냐하면 미가입계층의 취업장 규모는 1-9인으로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가입자의 특성이 구분되도록 여러 유형으로 세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굳이 國民年金法에서 임의사업장 가입자가 될수 있는 5-9인 규모와 지역가입자가 되는 1-4인 규모로 구분짓는다 하더라도, 연금확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업자 9,838천명 중 5-9인 규모 취업장 취업자수는 1,145천명(1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8.4%인 8,693천명이 모두가 1-4인규모 취업장 취업자로 분류되므로 미가입취업자 계층을 특성별로 세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미가입계층간 사회,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종사상의 지위를 첨가하여 연금미가입계층을 한층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이를 준거로 연금미가입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적용의 또 다른 요건인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는 대상자를 무직자, 비임금근로자 및 임금근

2)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 1988.4.

로자로 범주짓기 때문에 年金醗出料를 부담하는 주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소득활동이 없어 醗出이 불가능한 무직자와, 醗出金에 대한 사용자부담분을 고려할 수 없는 비임금근로자, 및 醗出金에 대해 사용주의 부담분이 고려되는 임금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선행국들인 각국의 예를 보아도 대상자를 임금근로자(피용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자)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영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용자는 그 고용상태를 볼 때 소득보장 및 산업재해 등 근로와 더불어 발생하는 보상 및 손해의 책임소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자영자에게 발생하는 보상 및 손해는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고, 피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피용자와 사용자간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年金醗出料 부담정책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피용자인 가입자는 취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피용자로서 처리되어 醗出金의 일부를 사용주가 부담해 준다. 이에 비해 취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외국의 예로서는 일본이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규모 취업장 피용자에 대해서만 후생연금보험을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가 되지 않고 일반자영자들이 소속되는 國民年金에만 가입되도록 하여 피용자와 사용자간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를 경제활동여부 - 취업여부 - 취업장규모 -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이 중에서 연금제도에 당연가입된 10인 이상 규모 취업장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미가입 계층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고용, 일일고용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지고 그외에 직업이 없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어 6개 집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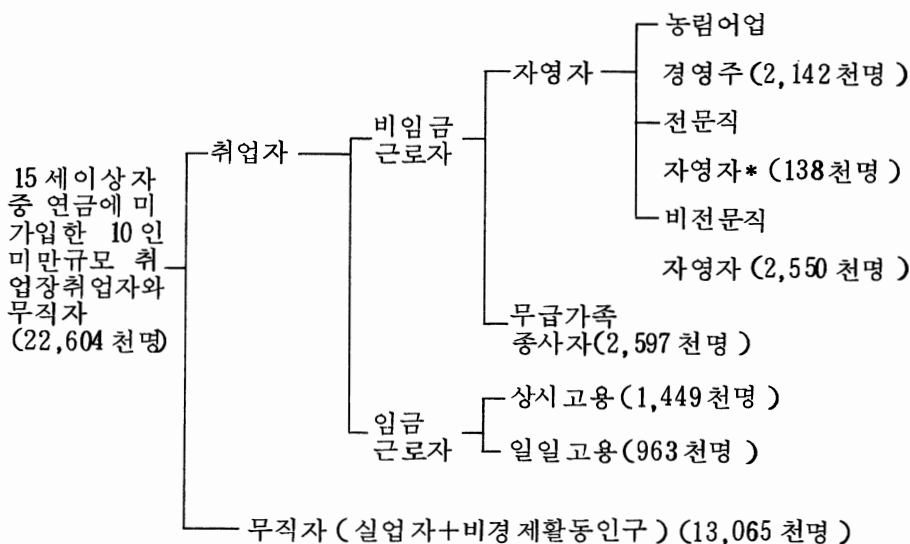
18세이상 60세미만의 인구에 대해 상기 유형별 정확한 수치를 현존 통계자료로서는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0인미만 규모 취업장 취업자에 대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고용구조 특별조사는 연령을 5세 단위로 계급구분하면서 15-19세를 한 계급으로 묶고, 55세 이상 전 연령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고 있으며 기타 자료들도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 18-59세만의 관련인구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근사치를 알고자 하면 15세 이상 전인구에 대한 각 유형별 수치를 구할 수 밖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15세이상 인구층의 상기 유형별 수는 다음과 같다.

〈 표2-1 〉 1986년 15세이상 인구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별 수

15세이상 인구 (28,511천)	경제활동 인구 (15,997천)	취업자 (15,446천)	10인이상 규모 취업장 취업자 (5,608천)		
			10인미만 규모취업장 취업자 (9,838천)	비임금 근로자 (7,426천)	자영자 (4,830천)
					무급가족종사자 (2,597천)
				임금근 로자 (2,412천)	상시고용 (1,449천)
					일일 고용 (963천)
	실업자 (551천)				
비경제활동인구 (12,514천)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특별조사 결과보고, 1987.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미가입계층을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고용, 일일고용, 무직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유형구분한 것 중 자영자는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농민 자영자에는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의 객관적 파악이 힘든 영세자영자와 의사, 변호사 등 소득수준이 높고 과세자료를 보유한 전문직 자영자가 공존하며, 농민자영자는 여타 산업에 비해 소득발생의 계절성, 불안정성이 강한 농림어업경영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확대대상을 분류하되 자영자를 농림어업경영주,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전문기술 및 관련직 자영자를 전문직 자영자로 간주

2. 미가입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연령분포

상기 7개 유형 중에서 현존통계치로부터 연령분포가 정확히 포착되는 계층은 일일고용과 무직자 群 뿐이다.

그 밖에 농림어업자영업주의 경우 그 자체만의 연령분포는 알 수 없으

나 15 세이상 농가 경제활동인구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무직자, 농가경제활동인구, 비농가 경제활동인구, 일일고용의 연령계급별 수와 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2 〉 1987 년도 각 유형별 인구수와 백분율

(단위 : 천명 , %)

연령 구분	경제활동인구		무직자		농가경제활동인구		비농가경제활동인구		일일고용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5-19세	744	4.4	3,551	27.9	101	2.7	642	4.9	28	2.1
20-29세	4,577	27.0	3,097	24.3	531	14.2	4,026	30.7	271	20.2
30-49세	8,232	48.8	2,779	21.8	1,538	41.0	6,694	51.0	776	57.9
50-54세	1,402	8.3	567	4.5	523	14.0	878	6.7	128	7.4
55-59세	885	5.2	573	4.5	410	10.9	475	3.6	139	12.4
60세 이상	1,054	6.2	2,153	16.9	645	17.2	409	3.1	-	-
계	16,873	100	12,720	100	3,749	100	13,124	100	1,341	10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0세이상 인구비율은 6.2%이다. 이에 비해 농가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는 17.2%로서, 비농가 경제활동인구 중 60세이상 인구 비율 3.1%에 비하여 매우 높고 취업연령으로서는 고령인 50-59세 인구가 24.9%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비농가의 10.3%에 비하여 2배이상 많아, 농가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일고용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연령이 12.4%로서 비농가경제활동인구의 6.7%보다는 높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입된 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상용피용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령 구 분	상 시 고 용	
	수	백 분 율
15 - 19 세	350	5.3
20 - 29 세	2,633	40.1
30 - 49 세	3,108	47.3
50 - 54 세	299	4.6
55 세 이 상	178	2.7
계	6,568	100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국, 고용구조특별조사 결과보고, 1987.

상시고용 피용자는 50 세 이상이 7.3 %로서 50 세 이상이 19.8 %인 일
일고용 피용자가 상시고용 피용자보다 더 노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가입계층의 경제적 특성

연금제도 미가입계층을 구성하는 무직자군과 1-9인 규모 취업장 취
업자 중에서 1-9인 규모 취업장 취업자들은 이른바 비공식부문 근로자
란 개념에 의하여 그 경제적 특성이 연구되고 있다. 비공식부문에 대 한
개념정의가 다양하지만, 정부나 노동조합 등에 의한 조직적인 보호여부를
기준으로 “ 고정된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직하여 특별
給與 혜택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활동은 공식부문
에, 그 외에 잔여활동들은 비 공식부문에 소속시키게 된다.”³⁾ 는 개념 규정
에 따른다면 1-9인 규모 취업장 취업자 9,838천명 중 5-9인 규모 취업
장 취업자 1,145천명을 제외한 1-4인 규모 취업장 취업자 8,693천명이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1-4인규모 취업장취업자들은 내부구조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소득에 있

3) 조형, “한국의 도시 비 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총, 41집,
1982, p.113.

어서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이러한 여러계층은 가내부업, 생산활동으로부터 상당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업경영직까지 포함하여 종업원수는 적지만 상당액의 자본금이 투여되는 양말공장 경영주와 소규모의 자본금만 필요한 노점까지, 그리고 행상, 단순 막노동, 파출부 등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종에서부터 미장이, 목수 등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 및 정비공 등 비교적 복잡한 기계작동 기술을 요하는 업종까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부문내 소득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형은 자본의 소유유무와 기술의 보유여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자본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자와 자본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차가 클 것이라는 것과 그 중에서도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종사자와 비전문직종사자의 소득차가 클 것을 예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것에 기초한 분류가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건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연금미가입계층을 구분하는 준거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금제도관련 기존조사문헌

연금제도와 관련된 기존 조사문헌들에는 國民年金의 일반적인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자료들, 즉 한국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청장년층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집단들에 대하여 노후준비실태, 노후준비방법, 소득과약의 가능성 정도 등에 있어서 그 현황이 어떠한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주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연금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예측하게 해주는 연금에 대한 필요성의 측면 또는 수요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진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釀出料 부과 가능성측면 및 가입방식을 다루거나 가입을 촉진, 또는 저지하는 요인을 다룬 자격관리형태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부문에서 실시한 수개의 조사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

4) Ibid., pp.20-22.

서 필요성 및 수요측면에서는 노후준비실태에 대하여 연구된 일부 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하며, 釀出料 부과 가능성측면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부문에서 진행된 조사들을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연금가입 형태에 대한 반응들을 다룬 일부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본 실태 조사의 연구가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1. 노후준비 실태

복지제도의 성장으로 인한 복지비용의 비대로 국가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서구복지국가들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창설하든지 효율성과 효과성 및 프로그램 창설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 들은 창설되기 전에 반드시 필요성분석(need assessment)을 선행하여 그 필요성이 증명된 후에야 비로소 그 창설이 정당화된다. 한국의 國民年金제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더불어 1986년 12월 國民年金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은 누차 언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실행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현재 10인이상 사업장가입자에게만 당연적용되는 國民年金制度를 앞으로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필요성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國民年金制度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그 중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청, 장년들이 노후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두번째로 國民年金制度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의 생활상태, 그중에서도 수입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의 수입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현재 노인세대와 청, 장년세대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청, 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

지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國民年金制度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청, 장년층의 노후준비와 노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문헌들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것을 기초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國民年金制度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는 많지 않고 단지 경제기획원에서 1983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방법을 조사한 자료가 있을 뿐이다. 무작위표본추출방법으로 546개의 인구센서스 표본조사구를 1차추출단위로 하고 그 표본조사구내의 약 16,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하여 노후준비방법을 조사한 결과 69.2%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고, 노후준비방법으로 적금을 택한 사람은 12%, 보험은 6.1%, 기타가 5.5%, 계가 4.5%, 그리고 연금이 2.7%였다.⁵⁾ 연령과 노후준비비율의 관계는 graph로 볼 때 U자형을 나타낸다. 즉, 40대를 기점으로하여 나이가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노후준비를 하지않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40대 사람의 56%, 30대 및 50대 사람의 58-63%, 20대이하 및 60대이상 사람의 65%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國民年金制度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는 별로 많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청, 장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981년 노후생활비 수입원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전국 60세이상 노인 중 1,427명을 표본으로 선택한 이 조사에서는 노후생활비의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자식들이 대준다가 78.2%, 일을해서 번다가 16.2%, 재산소득 5.5%, 저금했던 돈 3.5%, 기타 3.6%, 구제금이나 생활보조금이 2.0%이었다.⁶⁾ 그 외에 유양순은

5)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p.238.

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4, p.163.

자녀에게 부양받고 있다는 노인이 82%가 된다고 발표했고⁷⁾ 박재간과 임춘식은 5개의 농촌지역과 5개의 도시지역에서 무작위추출한 60세이상 농촌노인 310명과 도시노인 299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78.9%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⁸⁾ 서기문이 광주시에서 노인정에 출입하거나 집에서 소일하는 59세이상 노인 중 임의로 추출된 48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조달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존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⁹⁾

위의 노후준비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조사들을 통해 볼 때,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주된 생계유지수단이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30대이상의 청장년층만을 볼때, 연령층이 젊은 사람일수록 노후준비를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60세이상 되었을 때 스스로 준비해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1988년 1월부터 실시된 國民年金制度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될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국민을 하나의 대상으로하여 조사하는 것은 전국민에 대한 노후준비방법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한 것이지만 노후준비실태를 國民年金制度수립에 반영해야하는 필요성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민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國民年金을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제도설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國民年金을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마련과정에는 현재 연금에 당연가입하지 않은 집단간에 연

7)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p.678, 재인용.

유양순, 재가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

8) 박재간, 임춘식,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1983, p.18.

9) 서기문, 도시거주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거노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86, 12.

금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어 연금확대의 목표 집단을 선정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현재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노후준비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으며 다만 간접적으로 노후생활실태 등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발표한 몇몇의 조사가 있을 뿐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재간, 임춘식의 연구와 임종권의 4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재간, 임춘식이 198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생계비에 대해 사전준비를 했다는 비율이 도시노인은 13%, 농촌노인은 20.3%로 농촌노인 중에 사전준비를 했다는 사람이 도시노인보다 더 많다.¹⁰⁾ 임종권의 4인은 1985년에 161개의 동, 읍, 면단위의 조사를 무작위추출하여 12,000가구 중 노인이 사는 3,050가구의 60세이상 3,704노인들의 수입원에 대해 조사하였다.¹¹⁾ 그 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수입유무와 수입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노인의 37%가 수입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 노인의 40%, 농촌노인의 55%가 수입이 있어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다. 수입원을 보면, 노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노동이 수입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높다. 대도시 노인들의 수입원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인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70%, 농촌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노인이 노후생활대책에 있어서 도시노인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것같이 보일 수 있으나 첫째, 변수의 측정방법상의 문제와 둘째, 노후생활대책의 형태측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박재간, 임춘식의 질문은 사전준비를 했느냐, 준비할 여유가 없었느냐등 간접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측정수준에서 노후대책을 측정함으로써 그것이 직접적인 노후대책의 측정이 되지 못한다. 첫째 지적의 예로 박재간, 임춘식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고민 및 용돈사용여부와 노후준비가 상반된 결론을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노인들의 고민을 조사하였는데

10) 박재간, 임춘식, 1983.

11) 임종권의 4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등장하였으되 도시지역 노인 중 35 %가 돈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답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 중 39 %가 같은 답을 하여 돈이 없는 것이 도시노인보다도 농촌노인에게 더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거의 못쓰는 비율도 농촌노인이 23.9 %, 도시노인이 9 %로 농촌노인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이 사전준비를 한 비율이 도시노인보다 더 높다면 돈이 없는 것이 고민인 농촌노인의 비율이 도시노인의 것보다 더 낮아야 하고 또한 용돈을 못쓰는 비율도 더 낮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상반되는 양상을 보여 사전준비를 했다는 주관적인 답의 타당성(validity)이 의문시된다.

둘째 지적의 예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더 나은 노후준비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농촌노인의 계속적인 노동에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노후준비에 관한한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임종권외 4인의 연구에는 지역별 노인의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도 되어있는데 농촌에서는 취업률이 49 %로 높았고, 중소도시에서는 29.4 %, 대도시에서는 23.2 %로 도시지역일수록 취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¹²⁾

결론적으로, 전국민의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연구나 도시와 농촌간의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비교에 있어 國民年金의 전국민 연금확대실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 연금확대실시를 위해서는 연금확대에 대한 집단간의 필요성의 차이유무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이번 전국민 연금확대실시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연금미가입자의 노후대책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유무를 증명하고 필요성의 관점에서 목표집단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Ibid., p.135-6.

2. 釐出料 부과 가능성

보험형태 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釐出料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釐出料 부과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釐出料부과 가능성은 정액제가 아닌 정율제의 釐出料부과형태를 취할 때 釐出料가 항상 소득을 근거로 측정되기때문에 바로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5에서 다른 연금제도를 가진 132개국 중, 1985년을 기준으로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NP가 높은 39개국 가운데 농, 어민이나 자영자를 당연가입으로 보험형태의 연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다.¹³⁾ 그 중 농어민이나 자영자에 대해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Bermuda 와 Japan 및 일부 가입자에게 소득등급별 정액을 채택하고 있는 France 와 Germany, Fed. Rep., Malta를 제외한 20개국이 소득에 근거한 정율제의 釐出料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볼 때도 보험형태의 연금제도에서 소득파악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실업, 산재보험등 보험형태를 취하는 것들은 모두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며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이 소득을 파악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각 개인의 소득이 어느정도 잘 파악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바로 과세자료이다. 釐出料부과형태로 정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대부분이 그 나라의 세무관청을 이용하여 세무관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釐出料를 釐出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자료는 과세자료인 것을 알 수 있다.

13) 사회보험형태로만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농, 어민이나 자영자를 당연가입으로 연금에 포함시키는 11개국에다가 수당형태의, 또는 부조형태의 연금제도도 실시하면서 농, 어민이나 자영자를 당연가입으로 보험형태의 연금에 포함시키는 Bahamas, Belgium, Bermuda, Canada, Finland, France, Israel, Italy, Japan, Norway,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의 14개국을 추가하여 25개국임.

현재 연금임의가입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는 연금보다 먼저 실시된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 여러면에서 분석된 자료가 있으나 그 결론은 현재 한국의 과세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釐出料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과세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지역과 시지역은 과세자료 사용가능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초 6개 군단위의 의료보험시행지역의 과세자료보유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각 지역의 전체세대 중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73.2 %에서부터 93.2 %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그 중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3.0 %에서부터 8.0 %까지 분포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49.1 %에서부터 80.2 %까지 분포되어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합계 52.1 %에서부터 88.2 %까지 분포되어 있다.¹⁴⁾ 이에 비해 보사부에서 1987년 11월에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98개 시와 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보유한 세대는 전체 세대의 16.7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갑근세만을 내는 세대수는 제외하였으므로 갑근세를 내는 세대를 추가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 보유세대가 전체 세대의 20 %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그 조사는 예상하고 있다.¹⁵⁾ 이는 시와 구지역의 과세자료보유세대가 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시와 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 아닌 자영자나 근로자이고, 군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농민이 59 %이고 나머지 41 %가 비농민인데 그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농업자영업주에 대해서는 약 98 %¹⁶⁾

14) 농촌경제연구소,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88, p.82.

15) 보사부,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실시를 위한 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88, pp.55-57.

16) 내무부에서 발행한 1987년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1986년 전국농업자영업주 1,872,000 중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p.142) 농지소득과세 및 임대소득과세 대상인원은 1,834,701명으로 전체의 약 98 %가 과세 대상으로 포착된다.

즉 거의 모든 농업자영업주가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이 도시지역 자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의료보험 2차시범지역의 과세자료보유율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강화군과 보은군은 농지세 과세자료보유세대율이 전체 세대의 66 %가 되는 반면, 목포시는 소득세 과세자료보유세대율이 전체 세대의 13 %에 그치고 있어¹⁷⁾ 농민과 도시지역 자영자들이 소득과악의 용이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도시 지역 자영자들의 소득과악이 어려운 이유는 농지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농민들과 달리 이들의 소득원 및 취업형태가 다양하고, 소득을 얻는 시기가 부정기적일 수 있으며, 주민이동이 심하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대부분 지역별로 세무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농민과 도시자영자들에 대한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암시적인 결론만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현재 연금임의가입대상자내의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뿐만아니라, 기준집단으로 지역전체 주민을 분모로하고 임의가입대상자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자로 취급하여 과세포착율 및 실제 납세대상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농민, 자영자, 피용근로자집단간, 또는 자영업자집단내에서도 전문직 및 비전문직집단 등 연금임의가입대상자 집단간 釀出料 객관적 부과 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연금임의가입대상자내의 다양한 집단간에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가능성에 있어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되 현과세자료상의 소득분포와 실제소득분포의 차이를 통하여 집단간의 격차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의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더하고자 한다.

17)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지역 및 직종의료보험조합 '86 결산 및 '87 예산현황, pp.78- 79.

3. 國民年金의 재원조달 및 자격 관리

國民年金制度에 대해 현 임의가입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가입 형태 및 釀出料부담방식은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지 등, 國民年金制度의 중요한 제도적 측면에서 앞으로 임의가입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國民年金制度가 실시된지 1년도 채 못되고, 아직 많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國民年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국민에게 어떠한 제도형태를 선호하는지를 묻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간략한 설명을 통하여 國民年金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알아보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임의적용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개발할 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國民年金이 실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國民年金에 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하여 조사가 된 경우는 아직 드물고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國民年金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조사에서 농민의 반응이 조사되었을 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987년에 1352농가를 대상으로 國民年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주요 조사항목은 연금에 대한 가입의사 및 釀出料부담에 대한 반응이었다. 가입의사를 질문한 항목에 연금에 가입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51%였으며, 모르겠다고 27%, 가입하지 않겠다고 22%로 연금가입에 대해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가입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釀出料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인가 47%로 가장 많았고 매월 釀出料를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15%로 나타나 釀出料에 대한 부담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실제 釀出料부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3% 및 9%

18) 정명채, 농어민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연구, 1987, p.59.

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醃出料가 소득의 3%일때는 적당하다는 사람이 5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9%일때는 부담이 크다는 사람이 6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醃出料 부담은 정율제에 대한 반응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현재 농어민의 醃出料 납부방식이 실질적으로 정액제인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있으나 앞으로 사업 장가입자와 같은 정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조사결과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醃出料 수준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醃出料 적정수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소득의 3% 醃出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이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의 5%에 28%가 답하여 醃出料 적정수준은 3%에서 5%까지가 적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年金醃出料 3%가 부담이 크다고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소득에 비해 납입료가 많다가 43%로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하였지만 두번째로 많은 사람이 답한 항은 27%를 차지한 월수입기준측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수입이 사업장근로자의 것과 달라 자영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타산업 자영업자의 수입과는 달리 자가소비형태 및 현물수입으로 인한 차이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농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醃出料 측정기준이 앞으로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민의 國民年金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으나, 농민이 아닌 연금임의가입대상자의 반응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어, 농민외의 연금임의가입자 대상집단은 농민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려 줄 수 있는 조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농민에 대해서도 가입형태나 醃出料 부과 형태와 수준 및 부과시기 등의 제도의 다른측면에 대한 조사도 더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國民年金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금미가입계층을 구성하는 특정집단별로 연금제도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 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이 필수적

19) Ibid., p.56.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의된 연구들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현재 도시와 농촌노인의 사전준비비율과 수입원 유무여부로 측정되었으나 그나마 간접적인 측정의 타당성문제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둘째, 장애여건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과세자료여부에 대해서도 연금미가입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들간의 비교분석이 되어있지 않고 다만 농촌과 도시간의 비교만이 되어있다. 이때 농촌은 도시보다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소득과 과세표준소득액과의 차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외 장애여건으로 측정될 수 있는 課出料 부담능력 및 연금가입의사태진에 대해서도 미가입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들을 비교한 자료는 없으며 다만 농민에 대한 조사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연구미비현상으로 인하여 연금미가입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의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상이함은 단지 간접적으로 비공식부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집단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의 차이로부터 유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특성의 간접적 파악은 연금미가입계층을 구성하는 하위집단이 직업종류, 종사상의 지위, 소득기회 및 실소득수준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제로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각 집단별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 중 특히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자본소유유무와 기술보유여부에 따른 미가입계층의 구분은 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여건의 다양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구분기준이 될 것이다.

제 3 장 연구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질문 설정

본 장에서는 앞서 1장에서 제시한 세가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하여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들을 설정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연구가설들을 2장에서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세가지 연구과제는 첫째, 國民年金 확대대상 선정방법을 필요성, 수요 및 보험료의 객관적 부과가능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 둘째, 재원조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셋째, 國民年金의 가입대상자를 위한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방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첫째, 國民年金 확대대상 선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 國民年金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가?
- 國民年金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 國民年金의 釐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둘째, 國民年金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 釐出料부담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 정부부담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 釐出料부담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 釐出料 부과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 釐出料 부과단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셋째, 國民年金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 가입형태는 어떠한가?
-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가?
- 國民年金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각 질문에 대응하는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질문에 대응하는 변수 및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객관적인 것으로는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로 정의되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없다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실제 대책으로서 미흡하다거나 할 때는 객관적으로 國民年金에 필요한 경우이다. 주관적인 필요성은 각 개인이 國民年金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國民年金에 가입할 의사로서 실제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를 정의한다. 國民年金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필요하니까 가입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측정이 國民年金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國民年金의 釐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자들 중 과세자료보유율 및 조세자료상 소득분포와 실제 소득분포와의 차이로부터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釐出料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과세자료보유율은 소득이 세무관청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자의 비율로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파악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때 과세자료보유율에서 검토되는 과세의 종류는 자영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의미한다. 임금근로자나 농민은 본인의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세자료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영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세대상으로서 세무자료에 포착되기 때문에 과세

자료보유율을 산출해 낼 수 있다. 과세자료상 소득분포와 실제소득분포와의 차이를 볼때 사용되는 과세는 농민에게 적용되는 농지세,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이다. 조사대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과세 소득분포와 자료는 기존자료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 釐出料부담의 형태—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액수를 내는 정액제와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정율제로 釐出料 부담형태를 구분한다.

- 정부부담수준 및 부담가능수준—정부부담수준은 정부가 본인보혐료의 몇%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부담가능 수준은 실제로 정부가 본인 釐出料의 일부를 부담해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와, 그럴때 본인 釐出料의 몇%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각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釐出料의 부담가능수준—정액釐出料일때 본인이 느끼는 부담정도 및 실제로 釐出料를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釐出料 부담 능력—현재 사업장가입자의 釐出料 산정 최저 기준소득인 75,000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백분율로 정의한다. 이때 소득으로는 월평균 총가구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비농민가구의 소득과 농민가구의 소득이 다르게 계산된다. 비농가의 경우, 가구원의 총소득을 임금 및 봉급,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그중 임금 및 봉급과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며, 부동산소득 및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댓가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농가의 경우 소득은 네 가지로 구분, 정의되는데, 이 소득자료는 농가경제조사를 위하여 표본농가가 매일 작성한 일계부자료와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작성한 원부자료를 사용하여 집계한다. 농가경제조사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농가의 소득 중에 현물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중 자가소비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상당히 세심한 기입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단한번의 질문으로 월평균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매일매일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히 농가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자가소비량이 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농작물수입 중 현물수입으로 계산된 비율을 계산하면 총 농작물수입의 32%가 현물수입이 되므로 자가소비량이 전체 생산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을 알 수 있다.¹⁾

이 농가의 소득을 비농민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 근로소득 1 = 농업소득 (농업조수입현금 + 농업조수입현물 - 농업경영비현금 - 농업경영비현물) + 겸업현금 및 현물소득 + 노임현금 및 현물소득 + 급료현금 및 현물소득 - 사업이외 지출 (농협, 기타 이자 및 농외취업비용 현금 및 현물).

○ 근로소득 11 = 농업현금소득 (농업조수입현금 - 농업경영비현금) + 겸업현금소득 + 노임현금소득 + 급료현금소득 - 사업이외지출 (농협, 기타 이자 및 농외취업비용현금)

○ 근로소득 2 ; 근로소득 1 과 구성요소는 같아 현물 및 현금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되 다만 근로소득 1 은 농업조수입과 농업경영비를 계산할 때 일계부와 원부자료를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 2 에서는 농업조수입 계산시 일계부자료만 사용한다.

○ 근로소득 22 ; 근로소득 11 과 구성요소는 같되 다만 근로소득 11 은 농업조수입과 농업경영비를 계산할 때 일계부와 원부자료를 합하여 계산한 것이고 근로소득 22 에서는 농업조수입 계산시 일계부자료만 사용한다.

이와 같이 농가의 소득을 기존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용되는 항목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이유는 비농가의 근로소득과 개념이 같게 근로의 댓가로 얻는 소득만을 발체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현금과 현물소득을 구분하여 현금소득만 따로 계산함으로써 농민들의 실제 소득에 대한 감각을 이해하고자 함이요 ; 둘째, 일계부와 원부를 구분하여 농업조수입의 경우 일계부자료만 따로 계산함으로써, 원부에서 현물로 기재되는 재고농산물증감

1)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7, p.106

액 및 대동식물증식액인 현물근로소득이 총현물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 비중을 낮으로써 실제로 현금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재고농산물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 현물소득을 釀出料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할지 알 수 있다. 현물소득으로 책정되는 이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을 농가소득의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논란이 있었는데 대동식물증식액의 경우 일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식물분에 대한 환산액을 포함하므로 실제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소득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원부에 기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재산적 수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항목임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1986년 대동식물증식액 589,577 원 중에서 대동식물 재산적 수지는 492,736 으로 약 84%가 실제소득으로 잡혔다. 여기서 재산적수지는 재산적수입 동·식물분에서 재산적지출 동·식물분을 감한 것으로 그해 동·식물 재산에 대해 실제소득으로 들어온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물소득 중에 이웃이 준 선물 등실제현금소득과 무관한 것이 현물소득에 포함되는데에 있다. 따라서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으로 인한 소득이 총 현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현물소득의 중요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 소득이 총현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釀出料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을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현물소득이 포함된 근로소득이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 釀出料 부과시기—일년에 몇번을 납부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부과시기가 결정된다.

○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가족구성원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구주의 사업을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도우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족상 지위—무급가족종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 손자/손녀, 형제로 구성된다.

○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연금가입 가능한 자의 비율—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현재 정액 醵出料 7,500 원을 납부한다고 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 가입형태—國民年金에 가입시 개인의 자유재량이 어느정도 사용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입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선택여지가 없이 國民年金에 모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國民年金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로 정의한다.

·○ 國民年金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이유—國民年金에 대해 필요없다, 또는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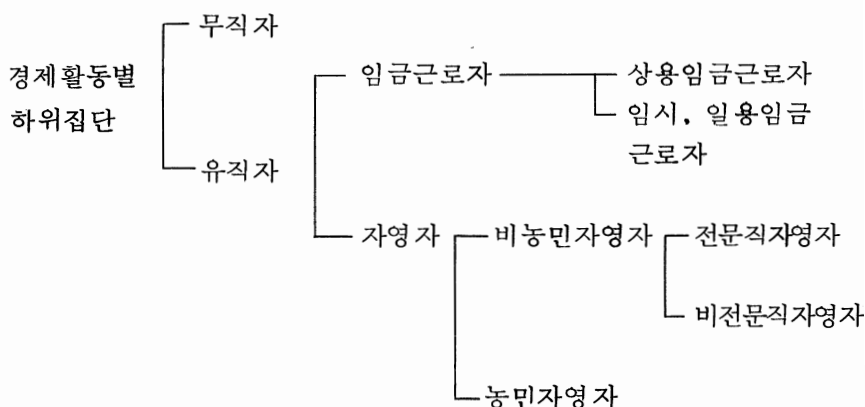
2. 독립변수

위의 종속변수들 값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연금확대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변수는 경제활동종류이다. 그 이유는 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선진국들이나, 또는 분리된 특별제도를 가진 연금제도들이 그 확대대상이나 특별제도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는데 개인의 경제활동종류를 사용했고 경제활동종류가 개인의 소득종류나 소득보장방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 경제활동 종류는 비농민의 경우 앞의 미가입계층을 구분하는 자본소유유무 및 기술보유여부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앞의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이 노후대책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변수로 나타나 있는데 도시와 농촌은 비농민과 농민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 간접적 기준이 되므로 농민, 비농민여부도 역시 경제활동 종류라는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종류는 여섯가지 집단으로 측정된다. 이들은 농민, 무직자,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이다. 이들 모두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농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농가라고 정의된 가구의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주를 의미한다. 농가의

정의는 경지(논, 밭, 수원지) 10 a 이상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하는
가구와 경지가 없더라도 대가축 1마리 이상이거나 중가축 3마리 이상
또는 소가축 40마리 이상, 가금 30마리 이상이거나 꿀벌 5통 이상을 사육하는 축
산농가를 말한다. 무직자는 수입을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자.
전문직 자영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전문인으로서 의료계, 법률
계, 예술계 등의 전문직을 포함한다.

비전문직 자영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되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
자영자를 말한다. 자영자 집단에는 농민이 제외된다. 상용임금근로자는 피
고용인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의미하며, 임
시·일용임금근로자는 피고용인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임시직원 및 매일일용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여섯
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3. 외생변수

위의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종류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로서 연금임의가입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들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다. 연금임의 가입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유직가족비율,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햇수,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의 지위, 산업,
은퇴예정연령,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의 존재여부, 후계

자 선정 여부

연금임의 가입대상자의 경제활동 종류별 집단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여 각 경제활동 종류별 집단의 실제 年金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입장이상이하게 나타날 때 그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외생변수들과 경제활동 종류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각 외생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연령－만연령
- 교육수준－최종학력 수준
- 혼인상태－배우자와의 현재 관계
- 유직가족비율－전체 가족 중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수입을 얻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의 비율
-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여부－10인 이상 사업장에 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이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10인 이상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사의 근로자 수까지 합한 수를 전체 사업장 근로자수로 보아야 한다.
-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의 지위－최종 근무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의 지위를 의미한다.
-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동기－최종 근무한 10인 이상 사업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의미한다.
- 산업－가구주가 속한 사업장의 산업을 의미한다.
- 은퇴예정연령－수입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정하는 나이
-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 존재여부－가구주가 하는 일을 가구주가 할 수 없게 될 때, 맡아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 후계자 선정여부－가구주의 사업을 맡아서 계승할 후계자를 가

구주가 선정해 놓았는지의 여부

○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근로의 댓가로 얻는 소득으로서 비농민의 경우 봉급, 임금,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농민의 경우 농업경영의 결과로 얻는 소득 및 농업이외의 겸업경영으로부터 얻는 소득, 임금과 봉급 등 근로의 댓가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소득은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외생변수로 취급되지만 釀出料 부담능력 측정시는 종속변수로 작용함을 유의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앞서 소개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위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國民年金 확대대상 선정방법을 필요성, 수요, 釀出料 객관적 부과가능성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다.
- (2)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 (3)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의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

둘째, 國民年金의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경제활동종류별 釀出料부담형태가 다르다.
- (2) 경제활동종류별 임의가입대상자가 원하는 釀出料 정부부담 당위성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 (3) 경제활동종류별 임의가입대상자가 원하는 釀出料 정부부담 수준이 다르다.
- (4) 경제활동종류별 임의가입대상자가 생각하는 釀出料 정부부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5) 경제활동종류별 임의가입대상자가 예상하는 釀出料 정부부담 가능수준이 다르다.

(6) 경제활동종류별 釀出料부담 가능수준이 다르다.

(7) 경제활동종류별 釀出料 부담능력이 다르다.

(8) 경제활동종류별 임의가입대상자가 선호하는 釀出料부과시기가 다르다.

(9) 경제활동종류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다르다.

(10) 경제활동종류별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족상 지위가 다르다.

(11) 경제활동종류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다르다.

세째, 國民年金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에 대한 선호하는 가입형태가 다르다.

(2)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가 다르다.

(3) 경제활동종류별 國民年金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다르다.

제 4 장 조사설계

제 1 절 조사대상 모집단 및 표본추출

연금에 당연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國民年金 전국민확대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모집단을 연금임의가입 대상자가가구주로 규정하였다. 분석단위로 가구주를 채택한 이유는 연금제도가입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목적은 개인이 속한 가족원 전체를 수입의 단기적 및 장기적 단절로 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가족전체, 즉 가구가 연금혜택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원으로 이루어진 구성체를 의미한다.

표본가구주는 대상 모집단을 비농가와 농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추출하였다. 여기서 농가는 가구주가 농업자영자인 가구이고 비농가는 가구주가 농업자영자가 아닌 모든 경우의 가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농가와 농가 두 종류로 나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집단이 소득계산방법 및 소득종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농가와 비농가는 경제활동이 상이하여 소득을 조사할 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특히 농가의 경우는 비농가의 경우와 달리 현물소득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나 되고, 집에서 산출한 농산물 등의 자가소비가 많기 때문에 소득조사시 각 농가의 가구주가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소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농가의 경우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의 소득자료를 사용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선출시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하여 선출하였다.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소득이외의 질문사항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1. 농가 가구주의 표본선출

농가 가구주의 표본은 1986년까지 농림수산부에서 농가경제조사를 위하여 사용한 2,000 호의 표본가구들 중에 1,000 호의 표본가구를 계통추출하여 그 가구의 가구주로 하였다. 농림수산부에서 농가경제조사를 위하여 사용한 2,000 호의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80년 농업센서스에 기록된 전국 35,914 개의 자연부락을 모집단 조사구로 하여 그들을 도별, 농업지대별, 영농형태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그 중 200 개의 조사구를 각 조사구의 인구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로 추출하였다. (probability proportional to population size) 그런 후 각 조사구로부터 조사구의 총농가를 농지규모순으로 나열한 후에 10 호를 계통추출법으로 (simple systematic sampling) 뽑아 최종 2,000 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였다. 표본선정할 당시 추출률은 $1/1,079$ 이었다.

이 2,000 호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1986년까지 농가경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농가경제조사는 농가경제 및 경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행정 및 농업문제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유의할 것은 각 표본농가에서 매일매일의 수입, 지출을 일제부에 작성하여 농가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부가 사용하는 2,000 호 표본농가중 1,000 호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200 개 표본조사구를 도별, 농업지대별, 영농형태별로 나열한 후 계통추출 (simple systematic sampling) 하여 100 개의 표본조사구를 선정한 후 그 100 개 조사구의 전 표본농가 1,000 호를 본 연구의 표본농가로 선정하였다.

2. 비농가의 표본선출

본 조사에는 비농가 가구주의 표본선출을 위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자료 중에서 직업 및 사업장 규모의 변수를 사용하여 표본을 분류함으로써 연금임의가입대상자를 선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정된 조사구내의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國民年金 당연가입대상자 및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가입자를 제외하여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자를 선별해 냄으로써 조사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농가의 표본은 1988년까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578개 표본조사구 내 약 17,000 가구 중에서 115개 조사구의 약 1,950호 연금미가입 대상자가구를 집단추출방법을 (cluster sampling) 사용하여 선정한 후 그 가구의 가구주로 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578개 표본가구를 추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에서는 1980년 전국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시부에서는 전국의 50개 시중 17개 소도시를 인접한 다른 도시에 통합하여 33개 시집단을 만들고, 군부에서는 9개도를 개별집단으로 설정하여 시부와 군부별로 이 집단들을 행정구역순으로 나열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내에서 조사구를 농가율이 1%이상인 경우와 1%미만인 경우별, 주된 산업별—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순으로—, 주택특성별—일반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의 비율순으로—순서대로 나열한 후 조사구내의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probability proportional to population size) 시부에서는 447개, 군부에서는 93개의 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하였다. 그런 후, 추출된 표본조사구를 다시 한 구역에 약 10가구가 포함되도록 분할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부에서는 각 조사구에서 2개의 인접구역을, 군부에서는 6개의 인접구

역을 추출하여 추출된 구역내의 모든 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1980년에 표본조사구 540개내의 약 15,500 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되었고 추출률은 1/547이었다. 경제기획원은 매년 생기는 신축가구때문에 추출률이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가구를 기존 조사구내에 포함시키거나 기존조사구를 분할하여 일정한 추출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86년에는 총 표본조사구가 578개로 증가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 578개 조사구내의 경제활동조사 표본가구 중 경제활동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임의가입 대상자만을 추출한 다음 조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연금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제활동특성별로 조사구를 나열한 후 시부, 군부별로 계통추출방법으로 115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연금임의가입 대상자 가구는 경제활동표본가구의 가구주가 10인이상 사업장에 상용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모든 가구를 의미하며, 이때 가구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조사의 표본가구에서 제외시켰다.

- * 교원, 입법공무원 및 정부관리직 공무원, 정부행정공무원,
- * 자영자나 고용주로서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이거나 경영사업체의 종업원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교원 및 공무원들은 그들 고유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인 경우는 이미 표본농가의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경영사업체 종업원 규모가 10인이상인 경우의 고용주도 현 國民年金 당연가입대상이므로 제외시켰다. 115개의 표본조사구는 578개의 조사구의 연금임의가입대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2) 고용주수, 자영자수, 상용근로자수, 임시근로자수, 일용근로자수; (3) 전문직수; (4)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에 따라 특성번호를 주어 특성번호가 비슷한 조사구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후 시부, 군부의 조사구 비율과 같게 계통추출되었다. 이때 경제활동중

류별 가구수에 따라 조사구를 분류한 이유는 경제활동 종류가 경제활동조사 자료 중에서 이용가능하면서도 노후준비나 연금에 대한 釀出料 부담능력 등 본 조사의 종속변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5개 표본조사구내의 연금임의가입대상자 가구가 본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표본추출 절차로부터 115개의 표본조사구내의 전체 연금임의가입대상 가구주인 1,935 가구의 가구주가 표본가구주로 선정되었다.

3. 표본가구수 선정근거

비농가 가구주 표본 1,935명과 농가 가구주 표본 1,000명을 합하여 총 2,935명의 표본을 선정하게 된 근거는 근본적으로 예산에 있다. 조사원 45명을 채용하여 그들이 16일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한 사람당 약 가구주를 넷정도를 하루에 면접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총 2,935명의 표본을 선정하게 되었다.

제 2 절 실제 조사대상가구주 및 조사완료가구주의 수

실제 조사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비농가 표본 1,935가구주 중에서 pre - test 로 사용된 경우가 12건, 가구주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217건,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인 경우가 87건, 가구주가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학생인 경우는 37건으로 합계 353건이 조사대상가구주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가 표본 1,000가구주 중에서는 pre-test 로 사용된 경우가 10건, 가구주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18건,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무직인 경우가 73건으로 합계 101건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조사대상이 된 표본가구주는 비농가 가구주 1,582명, 농가 가구주 899명으로 합계 2,481명이 되었다.

이 중에 실제 조사완료가구주는 2,065 명이었는데 그 이유는 표본비농가 가구주 중 응답거부 33 건, 이사, 거주지 불분명, 또는 가구주 장기 부재 건이 231 건으로 조사미완이 264 건이었고, 표본농가 가구주 중 응답거부 3 건, 이사, 거주지 불분명, 또는 가구주 장기 부재건이 50 건, 표본농가번호 불일치 건이 99 건으로 조사미완이 152 건이었으므로 합계 416 건이 조사미완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농가 실제 조사완료 가구주는 1,318로서 비농가 표본의 응답율은 83%, 농가 실제 조사완료 가구주는 747로서 농가표본의 응답율도 83%가 되었다.

제 3 절 조사기간

본 조사는 1988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동안 실시되었다.

제 4 절 조사방법

본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선정된 표본가구주에게 응답을 구하는 사회조사방법 (social survey)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다. 4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교육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각 표본조사 가구주를 면접하여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제 5 절 분석기법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일 경우는 경제활동종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cross tabu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등간격변수나 비율변수일 경우는 ANOVA (변량분석)를 사용하되 non-parametric test 인 Kruskal-Wallis 분석과 cross tabulation 을 보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5 장 연구결과분석

본 장에서는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이미 제시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國民年金 制度의 당연가입확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독립변수인 경제활동의 종류별로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집단의 특성이 國民年金 制度의 당연가입확대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런 후 첫째, 國民年金 확대대상 선정방법을 필요성, 수요,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제시하고, 둘째, 재원조달의 방향을 선정하고, 셋째,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을 위한 자격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과제에 첨부된 가설을 검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제 1 절 경제활동종류별 집단의 분포

비농민 가구주의 각 경제활동종류별 분포를 보면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 가구주 표본 중에 비전문직 자영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상용임금근로자와 임시, 일용임금근로자가 각각 19.2%, 18.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무직가구주도 16.5%로 상용, 임시, 일용임금근로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전문직 자영자는 2.3%로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 가구주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 표 5 - 1 〉 경제활동종류별 표본수 및 비율-비농민가구주의 경우

	무 직 가 구 주	전 문 직 자 영 자	비 전 문 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합 계
표 본 수	217	30	577	352	239	1,316 ¹⁾
백 분 율	16.5	2.3	43.8	19.2	18.1	100

참고 1): missing case 2 포함하여 1,318.

제 2절 경제활동종류별 집단 특성의 비교

경제활동종류외에도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자의 확대대상 선정방법, 재원조달방향과 가입방식 설정 및 가입촉진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다.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유직가족비율, 1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여부, 10 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의 동기 및 지위, 산업, 은퇴예정 연령,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 존재여부, 후계자 선정 여부, 소득이 이러한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은 노후준비 실태 및 재원조달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변수를 기준으로 당연가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많으며, 행정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또한 각 변수 항목별로 너무 다양한 경제활동집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제활동집단들이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비교되는 성격을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각 경제활동집단이 노후준비실태나 재원조달측면 또는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때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연령

연령분포를 통하여 각 경제활동 집단간 고령화정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현 제도처럼 연금가입을 60 세미만으로 할 경우

현재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종류별 연금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재정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2의 각 집단별 연령분포를 보면 농민·가구주와 무직자가구주의 고령화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직자의 57.6%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은 농민으로 농민의 26.4%가 60세 이상이다. 일용임금근로자가 13.4%로 농민 다음으로 고령화정도가 심한 집단이고 그의 전문직자영업자의 6.6%, 비전문직자영업자의 7.8%, 상용임금근로자의 5.1%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정도가 가장 약하다.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현재 연령기준으로 연금을 확대할 때 연금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령화정도와 제외되는 사람수의와는 정비례관계가 나타난다. 즉, 집단의 고령화가 심할수록 연금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수가 많을 것이다.

이 고령화 정도는 國民年金 임의가입자 확대의 자격관리 및 재원조달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격관리 측면에서 볼 때 현행의 가입연령제한 규정하에 당연가입을 확대시키면 國民年金 실시초기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주비율이 집단간에 크게 차이가 나며 무직자 및 농민중에 제외자가 가장 많이 생기게 된다. 40세 이상되는 사람들중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대책이 없다는 결과¹⁾를 참고로 할 때 고령화현상이 심한 무직자와 농민중 60세 이상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재원조달측면에서 볼 때 무직자 및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집단의 연금재정의 상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집단을 따로 분리시켜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재정의 악화가 다른 집단으로부터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1)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p.238.

〈 표 5 - 2 〉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령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 용근로자
10 - 19					4 (1.6)	
20 - 29	10 (1.3)	13 (6.0)	3 (10.0)	41 (7.1)	71 (28.1)	18 (7.5)
30 - 39	82 (11.0)	21 (9.7)	16 (53.3)	192 (33.3)	81 (32.0)	46 (19.2)
40 - 49	179 (24.0)	25 (11.5)	8 (26.7)	194 (33.6)	48 (19.0)	74 (31.0)
50 - 59	279 (37.3)	33 (15.2)	1 (3.3)	105 (18.2)	36 (14.2)	69 (28.9)
60 - 69	163 (21.8)	79 (36.4)	1 (3.3)	36 (6.2)	11 (4.3)	31 (13.0)
70 -	34 (4.6)	46 (21.2)	1 (3.3)	9 (1.6)	2 (0.8)	1 (0.4)
계	747 (100.0)	217 (100.0)	30 (100.0)	577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746.71 , D.F. = 30, p = 0.0000 .

2. 교육수준

사회학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이 밀접한 정비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흔히 증명되어 왔다. 이에 덧붙여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대책을 세울 여유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노후준비대책의 차이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 3을 보면 무직가구주 수는 무학이 가장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수가 적어지며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가장 많고 전문직 자영자는 대학이상 수험자가 가장 많다. 이것을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순위는 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자영자,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그리고 무직자순이다. 교육수준을 비교해 볼때 노후준비 실태면에서 무직자와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자영자보다,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자영자가 전문직자영자보다 빈약한 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 표 5 - 3 〉 .경제 활동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무 학	126 (16.9)	68 (31.3)	1 (3.3)	34 (5.9)	14 (5.6)	46 (19.2)
국 교 중 퇴 또 는 졸 업	358 (48.1)	59 (27.2)	1 (3.3)	101 (17.6)	38 (15.1)	89 (37.2)
중학교중퇴 또는 졸업	150 (20.1)	27 (12.4)	3 (10.0)	144 (25.1)	52 (20.6)	62 (25.9)
고교 중퇴 또는 졸업	100 (13.4)	37 (17.1)	6 (20.0)	217 (37.8)	109 (43.3)	36 (15.1)
대학 중퇴 또는 졸업	11 (1.5)	25 (11.5)	16 (53.3)	74 (12.9)	35 (13.9)	6 (2.5)
대학원중퇴 또는 졸업		1 (0.5)	3 (10.0)	4 (0.7)	4 (1.6)	
계	745 (100.0)	217 (100.0)	30 (100.0)	574 (100.0)	252 (100.0)	239 (100.0)

CHI-SQUARE= 586.66, D.F.= 25, P= 0.0000

3.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노후준비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와 없는 가구주는 생활안정 및 소득면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표 5-4를 보면 농민과 전문직자영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0% 이상인데 비해 비전문직자영자는 84.4%, 상용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73.1%, 그리고 무직자는 59%이다. 무직자는 배우자사별이 33.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배우자사별은 19.3%로 무직자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배우자사별이 생활안정 및 소득에 영향을 미쳐 노후준비를 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면 무직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가장 불리한 집단일 것이다.

〈표 5-4〉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결혼상태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유배우자	689 (92.4)	128 (59.0)	27 (90.0)	487 (84.4)	185 (73.1)	174 (73.1)
배우자사별	48 (6.4)	73 (33.6)	—	57 (9.9)	11 (4.3)	46 (19.3)
이혼	1 (0.1)	6 (2.8)	—	9 (1.6)	5 (2.0)	6 (2.5)
미혼	8 (1.1)	10 (4.6)	3 (10.0)	24 (4.2)	52 (20.6)	12 (5.0)
계	746 (100.0)	217 (100.0)	30 (100.0)	577 (100.0)	253 (100.0)	238 (100.0)

CHI - SQUARE = 323.14, D.F. = 15 , P = 0.0000

4. 유직가족비율

가족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가구소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구주의 노후준비실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5를 보면 유직가족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무직자로 가족원의 6.9%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농민의 유직가족비율이 33.4%로 무직자 다음으로 낮고 비전문직자영자가 38.0%, 전문직자영자가 41%,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49.7%, 그리고 상용임금근로자가 50.6%로 나타난다. 따라서 무직자가가구주 가족의 유직가족비율이 가장 낮아 노후준비를 하는데 가장 불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5-5〉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유직가족에 대한 ANOVA

SOURCE	D. F.	S. S.	M. S.	F	P	
BETWEEN GROUPS	5	290678.73	58135.74	120.80	0.0000	
WITHIN GROUPS	2057	989933.42	481.25			
TOTAL	2062	1280612.15				
GROUP	N	MEAN	S. D.	S. E.	MIN	MAX
농 민	747	33.40	17.39	0.63	0.00	100.00
무 직 자	217	6.85	14.62	0.99	0.00	66.66
전 문 직 자 영 자	30	41.00	25.08	4.58	16.66	100.00
비 전 문 직 자 영 자	577	38.03	23.94	0.99	12.50	100.00
상 용 임 금 근 로 자	253	50.55	28.04	1.76	14.28	100.00
임 시 · 일 용 근 로 자	239	49.67	26.82	1.73	14.28	100.00
TOTAL	2063	36.01	24.92	0.54	0.00	100.00

5.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여부

도시 자영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그리고 무직자등 현재 국민연금임의가입대상자들의 일부는 과거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도시 근로자들을 구별하여 비교할때 공식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조형은 Masumdar 의 정의를 사용하여 정부 또는 조직적 보호의 존재여부를 공식·비공식부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현행 한국노동법상 보호가 5인 이상 사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도시공식부문으로 분류하였다.²⁾

그러나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등의 복지혜택이 1988년전까지 5인 이상 전사업체에 까지 확대되지 않았고, 국민年金이 현재도 5인 이상 전사업체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정부 또는 조직적 보호의 차원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공식부문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비공식부문에 비해 공식부문은 고정된 임금으로 비교적 안정된 소득과 복지혜택(휴가, 상여금 보험등)을 누리기 때문에 공식부문에서 일했던 사람의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6을 보면 농민을 제외한 비농민가구주 중에서 전문직자영자가 46.7%로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가장 많고 비전문직자영자가 43.3%, 상용임금근로자가 41.6%로 그 다음으로 많다. 무직자는 35.8%가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임시, 일용임금근로자가 26.7%로 가장 적다.

따라서 비농민가구주 중에서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집단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 조형,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총, 41집, 1982, p.15.

〈 표 5 - 6 〉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10인이상 사업장 근무경험여부¹⁾

	무 직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예	77 (35.8)	14 (46.7)	244 (43.3)	79 (41.6)	60 (26.7)
아 니 오	138 (64.2)	16 (53.3)	319 (56.7)	111 (58.4)	165 (73.3)
계	215 (100.0)	30 (100.0)	563 (100.0)	190 (100.0)	225 (100.0)

CHI-SQUARE = 21.04, D.F.=4 P = 0.0003

6.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의 지위

1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여부도 중요하지만 퇴직할 때의 지위가 무엇이었느냐 역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7을 보면 1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평사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96.6%로 가장 높고, 상용임금근로자가 86.3%로 그 다음으로 높다.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는 69.2%, 69.8%로 별 차이가 없으며, 무직이 63.2%로 자영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것은 1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무직자가 높은 지위에서 퇴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무직자의 고령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낮은 직급에서 퇴직한 사람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으므로 노후준비에 가장 불리한 집단이고, 그 다음은 상용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무직가구주는 높은 직급에서 퇴직한 사람이 가장 많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노후준비에서

유리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무직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직이 곧 연금가입에서의 유리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 표 5 - 7 〉 경제활동별 가구주 퇴직시 지위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자 영 자	비 전 문 직 자 자 영 자	상 용 임 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평 사 원	48 (63.2)	9 (69.2)	169 (69.8)	63 (86.3)	56 (96.6)
대 리 급	7 (9.2)	2 (15.4)	31 (12.8)	4 (5.5)	1 (1.7)
차 장 급	4 (5.3)	-	11 (4.5)	-	-
부 장 급	8 (10.5)	1 (7.7)	10 (4.1)	4 (5.5)	-
임 원	9 (11.8)	1 (7.7)	21 (8.7)	2 (2.7)	1 (1.7)
계	76 (100.0)	13 (100.0)	242 (100.0)	73 (100.0)	58 (100.0)

CHI - SQUARE = 37.49, D.F. = 16, P = 0.0018

7.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하게된 동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하게된 동기에 따라서도 노후준비는 영향을 받는다. 질병이나 다른사람과의 불화등 부정적인 이유로 퇴직한 사람과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정년퇴직 등의 긍정적인 이유로 퇴직한 사람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었던 소득의 여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후준비실태가 다를 것이다.

표 5 - 8을 보면 기타부문을 제외하고,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

영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고 싶어서 10 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는 사람이 46.2%, 52.1%로 가장 많고 같은 이유로 퇴직한 상용임금근로자는 23.2%,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12.1%. 무직은 7.9%이다. 반면 무직은 정년때문에 퇴직했다는 사람이 26.3%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많은 반면, 임시, 일용임금근로자는 질병때문인가 20.7%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많고 상용임금근로자는 봉급이 적기 때문인가 23.2%로 가장 많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고 싶어서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퇴직한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가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가장 많았던

〈 표 5 - 8 〉 경제활동별 10 인이상 사업장 퇴직동기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정 년 퇴 직	20 (26.3)	-	6 (2.5)	1 (1.4)	1 (1.7)
질 병	8 (10.5)	-	3 (1.2)	3 (4.3)	12 (20.7)
봉급이적어서	2 (2.6)	-	31 (12.8)	16 (23.2)	10 (17.2)
승진기회가 적 어 서	2 (2.6)	-	3 (1.2)	2 (2.9)	1 (1.7)
다른 사람 과의 불화로	2 (2.6)	-	4 (1.7)	1 (1.4)	1 (1.7)
개 인 사 업 을 위 해 서	6 (7.9)	6 (46.2)	126 (52.1)	16 (23.2)	7 (12.1)
사 업 이 잘 되 지 않아서	6 (7.9)	2 (15.4)	16 (6.6)	6 (8.7)	5 (8.6)
기 타	30 (39.5)	5 (38.5)	53 (21.9)	24 (34.8)	21 (36.2)
계	76 (100.0)	13 (100.0)	242 (100.0)	69 (100.0)	58 (100.0)

CHI-SQUARE=171.69, D.F. = 28, P = 0.0000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상용임금근로자가 노후준비에 있어서 유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불리한 집단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인데 이는 중요한 퇴직이유가 질병이나 봉급이 적다 등의 부정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무직가구주는 임시·일용임금근로자에 비해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고, 퇴직할 때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높고, 퇴직 동기도 정년퇴직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임시·일용임금근로자보다 유리한 입장을 나타낸다. 이는 무직가구주의 연령이 다른 집단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무직가구주의 주요한 구성원이 사회에서 오래 일을 한 후 높은 직급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무직가구주의 노후준비실태가 임시·일용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게 할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무직가구주의 고령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연금가입 측면에서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8. 산업

농민과 무직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집단별로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표 5-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집단의 산업분포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자집단안에서도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의 산업분포가 상당히 다른바 전문직자영자의 63.3%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전문직자영자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집중도가 큰 반면, 비전문직자영자는 53.6%가 도소매업 및 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 임금근로자집단간에도 산업분포가 상당히 다르다. 상용임금근로자의 28.1%가 제조업에, 27.3%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15.4%가 도소매업 및 숙박업에 종사하여 세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임시, 일용임금근로자는 건설업에

〈표 5-9〉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산업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 용 임 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광 업	-	-	4 (1.6)	-
제 조 업	1 (3.3)	65 (11.3)	71 (28.1)	26 (11.0)
전기, 가스, 수도	2 (6.7)	12 (2.1)	5 (2.0)	4 (1.7)
건 설 업	4 (13.3)	36 (6.3)	21 (8.3)	94 (39.7)
도소매, 숙박업	1 (3.3)	309 (53.6)	39 (15.4)	12 (5.1)
운수, 창고, 통신	-	35 (6.1)	19 (7.5)	1 (0.4)
금융, 보험, 부동산, 용역	-	15 (2.6)	9 (3.6)	2 (0.8)
사회, 개인 서비스업	19 (63.3)	96 (16.7)	69 (27.3)	19 (8.0)
농 립 어 업	-	3 (0.5)	4 (1.6)	29 (12.2)
기 타	3 (10.0)	5 (0.9)	12 (4.7)	50 (21.1)
계	30 (100.0)	576 (100.0)	253 (100.0)	237 (100.0)

CHI-SQUARE = 621.94 , D. F. = 27, P = 0.0000

39.7%로 가장 큰 집중도를 보이고 기타가 21.1%, 농, 립, 어업에 12.2%, 제조업에 11%가 종사한다. 기타란 그 외의 자들과 특정 산업에 분류되기 어려운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매일 매일 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따라서 산업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집단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어떤 집단이 장해, 사망에 대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어느 집단이 國民年金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집단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10을 보면 각 산업의 산업재해율이 나와 있는데 광업과 건설업이 11%이상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이 각각 3%, 2.9%로 그 다음으로 높으며, 가스, 전기, 수도업이 0.8%이고 도, 소매업, 금융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농, 립, 수산업이 합쳐서 기타로 0.4%의 가장 낮은 재해율을 보인다. 이를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시·일용임금근로자와 광업 및 제조업에 많은 비율이 종사하고 있는 상용임금근로자가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國民年金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 5 - 10 〉 경제활동별 산재율

산 업	광 업	제 조 업	전 기, 가 스, 수 도 업	건 설 업	운 수, 창 고, 통 신 업	기 타
재해건수 (A)	10,369	79,811	285	33,357	12,631	4,607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수(B)	86,815	2,568,486	34,523	291,542	439,659	1,00,225
A/B	11.9%	3%	0.8%	11.4%	2.9%	0.4%

*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9. 은퇴예정연령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노후준비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은퇴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은퇴예정연령이 빠를수록 은퇴후의 생활에 대해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5-11을 보면 무직가구주를 제외하고 59세 이전에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용임금근로자가 25.8%로 가장 많고, 농민이 7.9%로 가장 적다. 반면에 능력이 있을때까지 일하겠다는 사람은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52.8%, 52.2%로 가장 많고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가 48.1%, 47.4%로 그 다음으로 많고, 상용임금근로자가 40.7%로 가장 적다. 이를 볼 때 상용임금근로자가 은퇴예정연령이 다른 집단보다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대책을 더 세울 가능성이 높으며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은퇴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령면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표 5 - 11 〉 경제활동별 은퇴예정연령

	농 민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59세 이하	55 (7.9)	3 (11.1)	83 (16.1)	61 (25.8)	25 (10.9)
60-98세이하	275 (39.3)	11 (40.7)	188 (36.5)	79 (33.5)	85 (37.0)
일할 수 있을 때 까지	369 (52.8)	13 (48.1)	244 (47.4)	96 (40.7)	120 (52.2)
계	699 (100.0)	27 (100.0)	515 (100.0)	236 (100.0)	230 (100.0)

CHI-SQUARE = 55.58, D.F. = 8, P = 0.0000

10.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 존재여부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의 존재여부는 가구주가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있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대체가족원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일단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얼마동안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다는 것은 가구주로 하여금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하여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용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임의로 자신대신 가족원을 대체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농민 및 자영자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가족원가운데 가구주의 하는 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있다면 임의로 노동이 대체가능하다. 표5-12를 보면,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농민간에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의 존재여부에 있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는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가 75%, 69.6%로 비슷한 반면, 농민의 경우는 47.9%로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에 비해 낮다. 따라서 농민

〈 표 5 - 12 〉 경제활동별 노동대체 가능 가족원여부

	농 민	전 문 직 자 영 자	비 전 문 직 자 영 자
예	389 (52.1)	7 (25.0)	173 (30.4)
아 니 오	358 (47.9)	21 (75.0)	397 (69.6)
계	747 (100.0)	28 (100.0)	570 (100.0)

CHI-SQUARE = 66.02, D.F. = 2, P = 0.0000

의 경우 가구주가 노령이 된 다거나, 장애를 입는다거나 사망할 때에도 가족원 중에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직자영자나 비전문직자영자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후계자선정여부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있느냐의 여부에서 상용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에게는 그들의 고용상태상 대부분이 가구주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계자선정여부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가족원 중에 자신의 일을 계승할 후계자를 선정해 놓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선정여부는 농민,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변수이다. 이때 후계자를 선정해 놓은 가구주는 후계자를 선정해 놓지 않은 가구주보다 후계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감소될 경향이 있다.

표 5 - 13 을 보면 가구주가 후계자를 선정해 놓은 경우가 농민의 경우 27.7 %로 가장 높고,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는 14.3 %, 5.5 %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민의 경우 전문직자영자나 비전문직자영자보다 본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적을 것으로 예견 된다.

〈 표 5 - 13 〉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후계자 선정여부

	농 민	전 문 직 자 영 자	비 전 문 직 자 영 자
있 다.	207 (27.7)	4 (14.3)	31 (5.5)
없 다.	540 (72.3)	24 (85.7)	537 (94.5)
계	747 (100.0)	28 (100.0)	568 (100.0)

CHI-SQUARE = 108.43, D.F. = 2, P = 0.0000

12. 가구 총근로소득

무엇보다도 가구주의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 그리고 國民年金 재원조달가능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소득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年金齎出料가 근로의 댓가로 버는 근로소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농민의 경우 온가족이 함께 땅을 경작하여 함께 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분만 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가구원 총 근로소득이 가구주의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나 國民年金 재원조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변수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집단간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각 집단의 가구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대책실태 및 각 집단으로부터의 재원조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14, 15, 16, 17에서는 농민가구의 총근로소득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그들과 비농민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였다. 네가지는 근로소득 1, 근로소득 11, 근로소득 2, 근로소득 22 이다.³⁾ 다음은 농민가구의 각 월평균 근로소득과 비농민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을 비교한 표들이다.

〈표 5-14〉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에 대한 ANOVA
(MEAN, S.D., S.E., : 1000 단위)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87839512.78	17567902.56	43.5148	0.0000	
WITHIN GROUPS	2056	830052501.2	403722.0336			
TOTAL	2061	917892014.0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민	747	373.38	277.89	10.16	-1101.17	4605.14
무직자	217	64.83	223.40	15.16	0.00	2700.00
전문직자영자	30	968.16	799.99	146.05	120.00	3500.00
비전문직자영자	576	708.99	1113.34	46.38	0.00	21000.00
상용임금근로자	253	408.88	228.97	14.39	0.00	1400.00
임시·일용근로자	239	315.70	268.51	17.36	0.00	2600.00
TOTAL	2062	440.98	667.35	14.69	-1101.17	21000.00

3) 이에 대한 정의는 pp. 35-36을 참고하기 바람.

〈 표 5-15 〉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1 에 대한 ANOVA

(MEAN, S.D., S.E., : 1000 단위)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106909281.1	21381856.22	53.5566	0.0000	
WITHIN GROUS	2056	820834855.2	399238.7428			
TOTAL	2061	927744136.4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747	252.96	254.69	9.31	-1005.58	3625.99
무직자	217	64.83	223.40	15.16	0.00	2700.00
전문직자영자	30	968.16	799.99	146.05	120.00	3500.00
비전문직자영자	576	708.99	1113.34	46.38	0.00	21000.00
상용임금근로자	253	408.88	228.97	14.39	0.00	1400.00
임시·일용근로자	239	315.70	268.51	17.36	0.00	2600.00
TOTAL	2,062	397.36	670.92	14.77	-1005.58	21000.00

〈 표 5-16 〉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 에 대한 ANOVA

(MEAN, S.D., S.E., : 1000 단위)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94942305.96	18988461.19	48.3607	0.0000	
WITHIN GROUPS	2056	807273173.6	392642.5942			
TOTAL	2061	902215479.6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747	317.69	216.07	7.90	-1003.63	1376.77
무직자	217	64.83	223.40	15.16	0.00	2700.00
전문직자영자	30	968.16	799.99	146.05	120.00	3500.00
비전문직자영자	576	708.99	1113.34	46.38	0.00	21000.00
상용임금근로자	253	408.88	228.97	14.39	0.00	1400.00
임시·일용근로자	239	315.70	268.51	17.36	0.00	2600.00
TOTAL	2062	420.81	661.63	14.57	-1003.63	21000.00

〈 표 5-17 〉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2 에 대한 ANOVA

(MEAN, S.D., S.E., : 1000 단위)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109805859.6	21961171.92	56.1195	0.0000	
WITHINGROUPS	2056	804572487.9	391329.0311			
TOTAL	2061	914378347.5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747	239.91	207.52	7.59	-1005.58	1279.76
무직자	217	64.83	223.40	15.16	0.00	2700.00
전문직자영자	30	968.16	799.99	146.05	120.00	3500.00
비전문직자영자	576	708.99	1113.34	46.38	0.00	21000.00
상용임금근로자	253	408.88	228.97	14.39	0.00	1400.00
임시·일용근로자	239	315.70	268.51	17.36	0.00	2600.00
TOTAL	2062	392.63	666.07	14.66	-1005.58	21000.00

우선 표 5-14, 15, 16, 17 에서 나타난 농민가구 근로소득 1 (현금+현물, 일계부와 원부 합계), 근로소득 11 (현금, 일계부와 원부 합계), 근로소득 2 (현금+현물, 일계부), 근로소득 22 (현금, 일계부) 를 비교해보면 각각 월평균 373,000 원, 253,000 원, 318,000 원, 240,000 원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1 과 근로소득 2 의 차이, 근로소득 11 과 근로소득 22 의 차이는 근로소득 1 과 근로소득 11 의 차이, 또는 근로소득 2 와 근로소득 22 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 이것은 원부에 기재된 재고농산물 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이 현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원부를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발생해야 될 소득차가 현금과 현물부분에서 대부분 포착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 1 과 근로소득 2 에서 나타나는 소득차는 그 성격상 원부에서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인 현물로 포착된 소득에 근거한다. 이것은 월평균 현물총소득 120,000 원 중 (근로소득 1 인 373,000 원 - 근로소득 11 인 253,000 원) 약 46 %인 55,000 원

이 (근로소득 1인 373,000 원 - 근로소득 2인 318,000 원) 된다. 즉, 농민가구의 총근로소득 중 현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 %이며 { (근로소득 1 - 근로소득 11) / 근로소득 1 } 그 중 46 %는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결론적으로 농민의 소득은 측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현물근로소득이 총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 %이고, 그중 46 %가 재고농산물증식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한 현물소득이 아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실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총근로소득의 약 15 % ($32\% \times 46\%$) 이내가 됨으로 농민의 酬出料부담능력이나 노후준비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

농민가구의 근로소득과 다른 집단의 가구근로소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 5-14, 5-15, 5-16, 5-17 을 보면, 무직가구주가구의 월평균 총근로소득이 65,000 으로 (천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함) 가장 낮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농민가구와 임시·일용임금근로자 가구주가구이다. 농민가구의 근로소득 중에서 현금소득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소득 11 과 근로소득 22 의 비교), 재고농산물과 동·식물증식액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농민가구의 총근로소득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것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원부에 기재된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이 현물로 이미 현금소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부의 포함여부가 현금소득의 차이를 유발하지 못함에 있다. 농민가구의 현물과 현금소득을 합한 근로소득을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소득 1 과 근로소득 2 의 비교), 재고농산물과 동·식물증식액을 합한 근로소득을 비교할 때는 (근로소득 1 의 경우) 농민가구의 것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가구의 것보다 높다. 그러나 재고농산물과 동·식물증식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비교할 때는 (근로소득 2 의 경우) 임시·일용임금근로자 가구의 것이 농민가구의 것과 비슷하다. 그 다음으로 상용임금근로자의 가구총근로소득이 높고,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가 가장 높은 가구총근로소득을 보이면서 두 집단

간의 소득의 차이는 유의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⁴⁾

위의 표에서 Bartlett Box M test의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Significance level < 0.0001) ANOVA의 기본가정인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homogeneity of variance)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러므로 위의 ANOVA test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집단에 대한 기본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non-parametric test인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표 5-18, 5-19, 5-20, 5-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의 ANOVA에서 얻은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농민가구의 현금근로소득은 비농민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볼 때 (가구근로소득 11과 가구근로소득 22의 경우), 근로소득의 가장 낮은 집단부터 높은 집단순으로 나열하면 무직자, 농민,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된다. 반면 현물과 현금소득을 합한 농민의 근로소득을 비농민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가구근로소득 1과 가구근로소득 2의 경우), 무직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민,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점점 근로소득이 높아진다.

각 경제활동집단별 소득차의 분석을 통해 네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농민가구의 소득은 소득요소를 결정하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4가지 근로소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재고농산물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의 포함여부는 소득차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에 현금만 포함하느냐와 현물 및 현금을 포함하느냐 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재고농산물증감액과 대동식물증식액이 현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현금소득간 비교할 때, 또는 현금+현물소득간 비교할 때 그 차이를 야기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재고농산물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의 포함여부로부터 나오는 소득차는 근로소득 1과 근로소득 2의

4) 두집단의 소득차에 대한 t-test의 유의수준은 0.206이었다.

〈표 5-18〉 가구근로소득 1 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MEAN RANK	CASES
농 민	1012.29	747
무직자	246.05	217
전문직자영자	1572.12	30
비전문직자영자	1360.47	576
상용임금근로자	1102.58	253
임시·일용임금근로자	868.75	239
	total	2062
CORRECTED FOR TIES		
CASE	CHI-SQUARE	SIGNIFICANCE
2062	600.47	0.0000
	CHI-SQUARE	SIGNIFICANCE
	601.34	0.0000

〈표 5-19〉 가구근로소득 11 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MEAN RANK	CASES
농 민	838.86	747
무직자	290.95	217
전문직자영자	1637.82	30
비전문직자영자	1445.52	576
상용임금근로자	1242.12	253
임시·일용임금근로자	1009.12	239
	total	2062
CORRECTED FOR TIES		
CASE	CHI-SQUARE	SIGNIFICANCE
2062	755.5388	0.0000
	CHI-SQUARE	SIGNIFICANCE
	756.64	0.0000

〈표 5-20〉 가구근로소득 2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MEAN RANK	CASES
농 민	939.26	747
무직자	262.17	217
전문직자영자	1603.55	30
비전문직자영자	1400.13	576
상용임금근로자	1160.46	253
임시·일용임금근로자	921.58	239
	total	2062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2062	648.74	0.0000
	CHI-SQUARE	SIGNIFICANCE
	649.69	0.0000

〈표 5-21〉 가구근로소득 22에 대한 KRUSKAL-WALLIS 1-WAY ANOVA

	MEAN RANK	CASES
농 민	828.86	747
무직자	292.16	217
전문직자영자	1642.82	30
비전문직자영자	1451.60	576
상용임금근로자	1249.97	253
임시·일용임금근로자	1015.69	239
	total	2062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2062	773.76	0.0000
	CHI-SQUARE	SIGNIFICANCE
	774.89	0.0000

차이인 월평균 15,000 원이거나 근로소득 11 과 근로소득 22 의 차이인 55,000 원인데 비하여, 현금과 현금 및 현물로부터 나오는 소득차는 근로소득 1 과 근로소득 11 의 차이인 120,000 원이거나 근로소득 2 와 근로소득 22 의 차이인 78,000 원이다. 이때, 현금화될 수 있는 재고농산물 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은 총근로소득의 15 %이내이기 때문에 농민의 釀出料 부담능력이나 노후생활대책마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째, 가장 비보수적인 재고농산물과 동식물증식액을 포함한 현금 및 현물소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소득계산방법을 취해도 농민가구의 근로소득이 무직가구를 제외한 다른 집단의 근로소득보다 높지가 않다. 네째, 비전문직 자영자집단과 전문직자영자집단의 소득분포가 가장 분산되어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볼 때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득분석을 통하여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구는 무직가구주 가구이고, 그 다음으로 농민가구,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구, 상용임금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의 순으로 준비실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소득분포의 분산치가 가장 큰 전문직, 비전문직자영집단의 소득과 악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분석된 농가소득자료는 1986 년 것이 사용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농가소득수준이 과소평가되었다. 추후 1986 년과 1987 년간 농가근로소득의 증가분을 계산하여 본 결과 월평균 근로소득 1 은 36,721 원 이, 근로소득 11 은 29,994 원이 증가하였다. 이것을 고려하여 타집단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의 순위는 근로소득 1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와 농가의 소득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외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위의 네 가지 결론은 농가소득의 1987 년 증가분을 고려한 후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재원조달측면에서 정액제로 釀出料를 부과할 때 釀出料부담을 가장 많이 느낄 집단을 찾기 위해 10 만원단위로 소득구간을 정해 각 구간별 가구

〈표 5-22〉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 분포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비	전문직	상	용	임	금	임	시	·	일	용
						자	영	자	자	영	근	로	자	근	로	자			자
1,000-	36	180	-	36	5	31													
99,000	(4.9)	(82.9)		(6.3)	(2.0)	(13.0)													
100,000-	121	10	1	22	21	40													
199,000	(16.5)	(4.6)	(3.3)	(3.8)	(8.3)	(16.7)													
200,000-	162	6	2	41	46	39													
299,000	(22.1)	(2.8)	(6.7)	(7.1)	(18.2)	(16.3)													
300,000-	151	10	2	73	70	56													
399,000	(20.6)	(4.6)	(6.7)	(12.7)	(27.7)	(23.4)													
400,000-	96	4	4	79	38	33													
499,000	(13.1)	(1.8)	(13.3)	(13.7)	(15.0)	(13.8)													
500,000-	73	3	3	89	30	21													
599,000	(10.0)	(1.4)	(10.0)	(15.5)	(11.9)	(8.8)													
600,000-	36	1	1	41	17	8													
699,000	(4.9)	(0.5)	(3.3)	(7.1)	(6.7)	(3.3)													
700,000-	18	2	3	39	7	5													
799,000	(2.5)	(0.9)	(10.0)	(6.8)	(2.8)	(2.1)													
800,000-	13	-	-	22	6	2													
899,000	(1.8)			(3.8)	(2.4)	(0.8)													
900,000-	10	-	3	13	3	1													
999,000	(1.4)		(10.0)	(2.3)	(1.2)	(0.4)													
1,000,000-	17	1	11	121	10	3													
	(2.3)	(0.5)	(36.7)	(21.0)	(4.0)	(1.3)													
계	733	217	30	576	253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383.83, D.F. = 50, P = 0.0000

〈 표 5-23〉 경제 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11 분포

	농 민	무 직 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1,000-	140	180	-	36	5	31
99,000	(19.6)	(82.9)		(6.3)	(2.0)	(13.0)
100,000-	196	10	1	22	21	40
199,000	(27.5)	(4.6)	(3.3)	(3.8)	(8.3)	(16.7)
200,000-	163	6	2	41	46	39
299,000	(22.8)	(2.8)	(6.7)	(7.1)	(18.2)	(16.3)
300,000-	94	10	2	73	70	56
399,000	(13.2)	(4.6)	(6.7)	(12.7)	(27.7)	(23.4)
400,000-	44	4	4	79	38	33
499,000	(6.2)	(1.8)	(13.3)	(13.7)	(15.0)	(13.8)
500,000-	25	3	3	89	30	21
599,000	(3.5)	(1.4)	(10.0)	(15.5)	(11.9)	(8.8)
600,000-	16	1	1	41	17	8
699,000	(2.2)	(0.5)	(3.3)	(7.1)	(6.7)	(3.3)
700,000-	12	2	3	39	7	5
799,000	(1.7)	(0.9)	(10.0)	(6.8)	(2.8)	(2.1)
800,000-	8	-	-	22	6	2
899,000	(1.1)			(3.8)	(2.4)	(0.8)
900,000-	8	-	3	13	3	1
999,000	(1.1)		(10.0)	(2.3)	(1.2)	(0.4)
1,000,000-	8	1	11	121	10	3
	(1.1)	(0.5)	(36.7)	(21.0)	(4.0)	(1.3)
계	714	217	30	576	253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314.28, D.F. = 50, P = 0.0000

〈표 5-24〉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 분포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1,000- 99,000	45 (6.2)	180 (82.9)	—	36 (6.3)	5 (2.0)	31 (13.0)
100,000- 199,000	162 (22.5)	10 (4.6)	1 (3.3)	22 (3.8)	21 (8.3)	40 (16.7)
200,000- 299,000	186 (25.8)	6 (2.8)	2 (6.7)	41 (7.1)	46 (18.2)	39 (16.3)
300,000- 399,000	144 (20.0)	10 (4.6)	2 (6.7)	73 (12.7)	70 (27.7)	56 (23.4)
400,000- 499,000	71 (9.8)	4 (1.8)	4 (13.3)	79 (13.7)	38 (15.0)	33 (13.8)
500,000- 599,000	56 (7.8)	3 (1.4)	3 (10.0)	89 (15.5)	30 (11.9)	21 (8.8)
600,000- 699,000	18 (2.5)	1 (0.5)	1 (3.3)	41 (7.1)	17 (6.7)	8 (3.3)
700,000- 799,000	8 (1.1)	2 (0.9)	3 (10.0)	39 (6.8)	7 (2.8)	5 (2.1)
800,000- 899,000	12 (1.7)	—	—	22 (3.8)	6 (2.4)	2 (0.8)
900,000- 999,000	12 (1.7)	—	3 (10.0)	13 (2.3)	3 (1.2)	1 (0.4)
1,000,000-	7 (1.0)	1 (0.5)	11 (36.7)	121 (21.0)	10 (4.0)	3 (1.3)
계	721 (100.0)	217 (100.0)	30 (100.0)	576 (100.0)	253 (100.0)	239 (100.0)

CHI - SQUARE = 1470.59, D.F. = 50, P = 0.0000

〈 표 5-25〉 경제활동별 가구의 근로소득 22 분포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1,000-	142	180	-	36	5	31
99,000	(19.9)	(82.9)		(6.3)	(2.0)	(13.0)
100,000-	203	10	1	22	21	40
199,000	(28.4)	(4.6)	(3.3)	(3.8)	(8.3)	(16.7)
200,000-	163	6	2	41	46	39
299,000	(22.8)	(2.8)	(6.7)	(7.1)	(18.2)	(16.3)
300,000-	92	10	2	73	70	56
399,000	(12.9)	(4.6)	(6.7)	(12.7)	(27.7)	(23.4)
400,000-	46	4	4	79	38	33
499,000	(6.4)	(1.8)	(13.3)	(13.7)	(15.0)	(13.8)
500,000-	27	3	3	89	30	21
599,000	(3.8)	(1.4)	(10.0)	(15.5)	(11.9)	(8.8)
600,000-	13	1	1	41	17	8
699,000	(1.8)	(0.5)	(3.3)	(7.1)	(6.7)	(3.3)
700,000-	8	2	3	39	7	5
799,000	(1.1)	(0.9)	(10.0)	(6.8)	(2.8)	(2.1)
800,000-	7	-	-	22	6	2
899,000	(1.0)			(3.8)	(2.4)	(0.8)
900,000-	6	-	3	13	3	1
999,000	(0.8)		(10.0)	(2.3)	(1.2)	(0.4)
1,000,000-	7	1	11	121	10	3
	(1.0)	(0.5)	(36.7)	(21.0)	(4.0)	(1.3)
계	714	217	30	576	253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335.48 D.F. = 50, P = 0.0000

분포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평균만을 보아서는 이것을 알 수 없으므로 구간별 가구분포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22, 23, 24, 25를 보면 농민가구의 네가지 소득종류와 다른 집단의 소득 분포상황이 나타나 있다.

위의 표 5-22, 5-23, 5-24, 5-25에서, 농민가구의 경우 현금소득만을 고려한다면, 월 평균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가구비율은 농민의 경우 약 20%이고,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경우 13%,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2%, 비전문직의 경우 6.3%, 전문직의 경우 0.0%로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가장 養出料부담능력이 적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물론 무직가구의 약 83%가 10만원미만의 월평균소득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금 및 현물소득을 고려할 때는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농민가구보다 더 부담능력이 적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에게 國民年金을 당연 적용할 때는 養出料부담능력이 적은 무직자와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집단내에서도 소득의 분포가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그 중 소득이 적은 일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재원조달방향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 종류별 집단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에 영향을 줄 여러 변수들과 경제활동 종류별 집단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 계속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무직자가구주, 농민가구주 그리고 임시·일용임금근로자 가구주이다. 무직자가구주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와의 사별로 안정되지 않은 가족환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직가구원 비율도 낮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할 여유가 적은 집단일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가구주는 연령, 교육수준, 유직가구원 비율, 은퇴예정연령, 후계자 선정여부, 소득면에서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불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임금근로자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와의 관계, 은퇴예정연령, 소득면에서 농민가구주나 무직자가구주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외에도 10인이상 사업체 근무경험, 10인이상 사업체에서 퇴직할 때의 위치, 10인이상 사업체에서 퇴직하게 된 동기, 산업면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나 자영자집단보다 불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정도는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외에 집단간의 분리, 통합측면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집단간의 고령화 정도차로 인하여 고령화정도가 심한 농민이나 무직자를 따로 분리하는 연금제도는 그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재정적 적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이다.

세째, 집단간의 소득분포차는 소득과악의 용이성, 즉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용이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분산값을 보이기 때문에 소득과악이 가장 어려운 집단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경제활동 종류별로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國民年金 당연가입 확대대상선정 방향과 재원조달방향,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방안의 측면에서 각 집단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를 다음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가설검증

여기에서는 앞장에서 검증하고자 한 가설들을 증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세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각 과제별로 자료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자료분석한 결과가 國民年金 당연가입 확대에 부여하는 정책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다.

1. 國民年金 당연가입 확대대상 선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가설검증

(1)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 수요, 釀出料객관적 부과가능성

1) 객관적 필요성

표 5-26을 보면 모든 집단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노후, 장해, 사망에 대한 준비대책은 저축, 계 또는 퇴직금이다.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의 30 %이상이 저축, 계 또는 퇴직금을 노후, 장해, 사망에 대한 준비대책으로 선택하고 농가의 28.5 %,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20.1 %, 무직자의 14.5 %가 저축, 계 또는 퇴직금을 노후, 장해, 사망에 대한 준비대책으로 선택함으로써 각 집단의 노후, 장해, 사망대책 중에서 저축, 계 또는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노후, 장해, 사망에 대비하여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을 준비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2.5 %에서 9.9 %까지 상당히 낮지만 그중에서도 비전문직자영자와 상용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생명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노후, 장해, 사망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직자영자가 23.3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전문직자영자가 14.2 %로 두번째로 높다. 그외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민, 무직자는 10 %이내로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앞서 예견했듯이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가 노후, 장해,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國民年金과 가장 근접한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인 것을 의미한다.

노후, 장해, 사망에 대해 아무런 준비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비율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와 무직자가 각각 71.5 %, 69.1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농민으로 54.1 %가 아무런 준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임금근로자는 비전문직자영자와 각각 43.9 %, 40.2 %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전문직자영자 중 아무런 준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람은 26.7 %로 전문직자영자가 노후, 장해, 사망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國民年金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농민, 상용

〈 표 5-26〉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노후대책

	농민	무직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생명, 산재 보험	41 (5.5)	7 (3.2)	7 (23.3)	82 (14.2)	21 (8.3)	8 (3.3)
공적, 사적 연금	38 (5.1)	12 (5.5)	2 (6.7)	57 (9.9)	23 (9.1)	6 (2.5)
저축, 계 퇴직금	213 (28.5)	31 (14.3)	11 (36.7)	185 (32.1)	89 (35.2)	48 (20.1)
부동산, 주식, 유산상속	36 (4.8)	13 (6.0)	2 (6.7)	12 (2.1)	6 (2.4)	2 (0.8)
자녀의존, 친척 도움, 준비안함	404 (54.1)	150 (69.1)	8 (26.7)	232 (40.2)	111 (43.9)	171 (71.5)
기 타	15 (2.0)	4 (1.8)	-	9 (1.6)	3 (1.2)	4 (1.7)
계	747 (100.0)	217 (100.0)	30 (100.0)	577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176.07, D.F. = 25, P = 0.0000

임금근로자 및 비전문직자영자, 그리고 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필요성

표 5-27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각 집단마다 78.6%에서 82%까지 國民年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나 각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3)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

國民年金에 가입하겠다고 國民年金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요를 나타낸 사람은 표 5-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민과 무직자가 68%로 가장

〈 표 5-27〉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금에 대한 필요성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필요하다.	439 (80.1)	75 (81.5)	22 (78.6)	423 (79.5)	195 (81.3)	169 (82.0)
필요없다.	109 (19.9)	17 (18.5)	6 (21.4)	109 (20.5)	45 (18.8)	37 (18.0)
계	548 (100.0)	92 (100.0)	28 (100.0)	532 (100.0)	240 (100.0)	206 (100.0)

CHI-SQUARE = 0.88, D.F. = 5, P = 0.9710

〈 표 5-28〉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가입의사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가입하겠다	300 (68.5)	51 (68.0)	18 (81.8)	342 (81.0)	156 (80.0)	120 (71.0)
가입하지 않겠다	138 (31.5)	24 (32.0)	4 (18.2)	80 (19.0)	39 (20.0)	49 (29.0)
계	438 (100.0)	75 (100.0)	22 (100.0)	422 (100.0)	195 (100.0)	169 (100.0)

CHI-SQUARE = 24.41, D.F. = 5, P = 0.0002

낮고, 그 다음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로 71 %이다. 상용임금근로자나 비전문직자영자 및 전문직자영자는 80 %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가능성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가능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조세기관의 자료를 통해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객관적으로 釐出料를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뉘어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조세기관에서 몇 사람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과세자료보유자수로 나타난다. 둘째는 과세자료보유자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과세자료상 나타나는 소득과 실제 소득수준이 일치하는가로서 이것은 개인의 과세표준소득액과 실제 소득분포간의 차이로 나타난다. 과세자료보유자수는 객관적으로 釐出料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수를 의미하는 반면, 과세자의 과세표준소득액 분포와 실제소득분포간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釐出料를 부담할 능력에 연결된 실제 소득과 과세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과세자료의 객관적 소득파악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현재 사업소득세나 농지세 면세점이 1년에 144만원으로⁵⁾ 월 12만원인데 현재 사업장당연가입자의 월보수는 7만 5천원부터 釐出料가 부과되므로(월평균보수가 7만 5천원미만인 사람도 7만 5천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釐出料를 납부한다) 그 소득수준에 준하는 사람들을 釐出料납부대상으로 한다면 농민이나 자영자의 경우 현재 과세자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釐出料납부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직자영자와 비전문직자영자간 과세자료보유율의 차이가 표 5-29에 나와 있다. 농민과 임금근로자의 항목이 제외된 이유는 실제로 개인의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농민, 임금근로자 개인이 알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이에 관계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과 임금근로자의 과세자료보유율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농민의 경우 1987년 조세상황에 의하면 전체 농가 자영업주 1,872,000명 중 과세대상인원은 농지세 납세인원 289,147명과 비과세 인원 1,545,554명을 합한 1,834,701명으로 농민의 98%가 농지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⁶⁾

5) 사업소득세 : 재무부, 중기세제방향과 '88세제개편과제, 1988.6.1, P.19.

농지세 : 재무부, 지방세정연감, 1987, P.56.

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P.142.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87, PP.419 - 440.

임금근로자의 경우 과세자료보유율은 통계로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용인으로서의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피고용인과 고용주 양자가 신고하도록 하면 비교적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영자의 과세자료보유율은 농민의 경우처럼 기존 통계에 나와 있지 않고 임금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보유율을 파악하였다. 이때, 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있게 되므로 사업자등록증보유율이 곧 과세자료보유율로서 대치될 수 있다.

〈표 5-29〉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자등록증 소유여부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영자
예	21 (75.0)	313 (55.1)
아 니 오	7 (25.0)	255 (44.9)
계	28 (100.0)	568 (100.0)

CHI-SQUARE = 4.28, D.F. = 1, P = 0.0384

위의 표를 보면 전문직자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사람은 75% 인 반면 비전문직자영자 중에서는 55.1%로서 전문직자영자가 비전문직자영자 보다 약 20% 더 많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졌다. 따라서 과세자료보유율은 농민, 임금근로자,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순으로 낮아지며, 무직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다음으로, 실제 과세 관청에서 종합소득세로 소득이 파악되어 있는 사람들의 과세표준소득액의 분포와 본 조사의 자영자표본의 실제 소득분포를 비교해 보고, 농지세를 통해 소득이 파악된 사람들의 농지세 과세표준소득액의 분포와 본 조사의 농민가구주 표본의 실제소득분포를 비교해 보면,

〈 표 5-30〉 농가의 근로소득분포와 농지세 과세표준액 분포의 비교

월 평균 소 득	농 근 로 소 득 1	농 근 로 소 득 11	농 근 로 소 득 2	농 근 로 소 득 22	농 업 소 득	농 업 현 소 득	농 지 세 과 표 준 액
150,000 이 하	12.3 %	36.0 %	17.7 %	36.8 %	24.5 %	53.9 %	98.46 % ¹⁾
150,001- 208,333	11.8	15.7	14.7	15.9	13.3	12.0	0.81
208,334- 291,667	17.7	18.2	21.0	18.3	18.5	13.7	0.41
291,668- 400,000	22.8	13.9	21.3	13.7	18.1	9.4	0.18
400,001- 525,000	15.7	7.1	11.5	7.4	11.5	4.8	0.07
525,001- 666,667	10.7	3.1	7.8	3.2	8.0	3.2	0.03
666,668- 833,333	4.4	3.1	7.8	3.2	2.9	1.3	0.02
833,334- 1,041,667	2.9	2.0	2.7	1.7	1.5	0.9	0.01
1,041,668 이 상	1.7	0.9	0.9	0.7	1.7	0.7	0.01
합 계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참고 : 1) 월평균 150,000 원이하 소득의 납세자 14.22 %에다 과세미
달자 84.24 %를 합계한 것. 과세미달자 84.24 %는 납세인원
(289,147 명) 과 비과세인원 (1,545,554 명) 을 합한 과세대상
자 1,834,701 명 (1986 년도) 중 실제 납세자를 제외한 사람
수의 비율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87.

실제 소득액과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영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대신에 종합소득세로 한 이유는 현 종합소득세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이다.

〈표 5-31〉 자영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과세표준액 분포

월 평균 소득	사업 소득분포	사업소득과세표준액 분포
평균 150,000 이 하	13.0 %	84.51 % ¹⁾
150,001- 208,333	5.9	3.41
208,334- 291,667	3.6	2.76
291,668- 400,000	24.1	2.28
400,001- 525,000	15.5	1.81
525,001- 666,667	8.1	1.38
666,668- 833,333	8.2	1.08
833,334-1,041,667	10.7	0.80
1,041,668 이 상	10.9	1.97
합 계	100 %	100 %

참고 : 1) 1986 년 비농가 총자영업주 2,996,000명 중에서 과세표준액이 월평균 150,000 원이하인 13.04 %의 실제 납세자와 비과세자 71.47 %를 합한 것. 비과세자비율은 1986 년 비농가 총자영업주 2,996,000 에서 1986 년 총납세자 854,731 을 제외한 2,141,269 가 총 자영업주 2,996,000 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재무부, 국세통계연보, 1987.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 수요, 釐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國民年金 당면가입 확대 방안을 선정하는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변수는 國民年金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 수요, 釐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이 주관적 필요

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상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주관적 필요성은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객관적 필요성, 수요,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측면에서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각 변수에 따른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객관적 필요성과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수요측면은 객관적 필요성과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측면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國民年金에 대하여 객관적 필요성이 높은 집단의 순부터 나열하면, 임시·일용임금 근로자 및 무직자, 농민,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 자영자, 전문직자영자의 순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釀出料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부터 과세자료보유자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농민,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순으로 된다. 물론 과세표준 소득액의 분포와 실제 소득분포간의 차이로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을 측정한다면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나 농민, 자영자간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앞으로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釀出料를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농민의 경우 땅의 소산을 기초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영자보다 소득파악이 용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과세표준 소득액의 분포와 실제 소득분포간의 차이는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와 농민이 자영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역시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은 농민 및 상용,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자영자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예로 농업현금소득분포를 볼 때는 농민의 농업현금소득분포와 과세표준소득액 분포간의 차이가 자영자 사업소득의 분포와 과세표준 소득액분포간의 차이보다 훨씬 적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필요성 및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측면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두가지 방법은 연금의 재원조달과 무관하지 않은데 어느 측면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재원조달측면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필요성 및 釀出料 객관적 부과 가능성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직자, 농민,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및 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가입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釀出料 부담 능력이 적은 앞의 세 집단에 대하여 釀出料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가입이 給與공식 중에 균등부분의 給與額 수준을 낮춰(만약 이 부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또는 보수로서 결정된다면) 현 10 인이상 사업장가입자의 給與수준이 낮아지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부담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반면, 수요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및 전문직자영자가 우선적으로 가입대상으로 되고 그 후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민 및 무직자가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國民年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 혜택을 가장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대의식의 고취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순서로 확대할 때 누릴 수 있는 재원안정측면에서의 장점이 현 조세체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단점이 덧붙여진다.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및 전문직자영자 중 자영자집단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釀出料 부담의 능력이 비교적 높아 재원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안정 측면에서의 장점은 곧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조세체제를 이용한다면 그들의 높은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파악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없는 한 재원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釀出料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영자를 우선적으로 가입시키는 확대방법은 행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확대순위는 필요성 및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측면에서 무직자, 농민, 임시·일용근로자 및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및 전문직

자영자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제, 위의 결론은 확대를 하되 일률적으로 모든 집단에 대하여 동시에 확대할 것인가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釐出料부와 給與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給與에서 균등부분을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 또는 보수에 기초하여 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일률적 확대의 장점은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같이 동시에 가입됨으로 給與 공식부분에서 균등부분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높은 집단의 소득과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영자의 소득과악이 조세에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세를 이용하여 釐出料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현 임의가입자대상자의 소득과악이 정확히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랜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비례의 釐出料 부담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성 측면에서나 釐出料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 한데 다만, 통합체계내에서 소득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대될 때 年金給與水準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무직자나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민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농민의 경우 현금근로소득)이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으며, 둘째로 그 낮은 월평균 근로소득조차 많은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현재 지역가입자에게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을 給與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러한 폐단은 없어지되 그대신 그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네째, 釐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과세자료보유율 및 과세표준 소득액과 실제 소득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을 볼 때 현재 조세제도로서 釐出料부과 기준을 삼는 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결론이 나

온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釀出料부과 기준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현 조세과약체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과세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조세제도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빠지지만 연금에서 釀出料를 내어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과세자료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실제 과세자의 소득과약도 정밀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2. 國民年金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설검증

(1) 釀出料 부담의 형태

釀出料 부담의 형태로 소득에 비례하는 정율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정율제를 원하나 정율제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32를 보면 정율제를 원하는 비율은 64.3% - 87.3%로 대부분의 사람이 정율제를 원하는 데 정율제를 원하는 비율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전문직자영자, 농민, 비전문직자영자, 무직자,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순으로 된다. 농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은 정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그 이유는 정율제를 선택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釀出料를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민은 소득이 낮아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정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의료보험에서 경험했듯이 농민소득과약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표 5-32〉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釀出料 부담형태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정율제	426 (77.7)	76 (82.6)	18 (64.3)	426 (80.1)	205 (85.4)	178 (87.3)
정액제	122 (22.3)	16 (17.4)	10 (35.7)	106 (19.9)	35 (14.6)	26 (12.7)
계	548 (100.0)	92 (100.0)	28 (100.0)	532 (100.0)	240 (100.0)	204 (100.0)

CHI-SQUARE = 17.41, D.F. = 5, P = 0.0038

(2) 정부의 釀出料 부담 당위성

정부가 釀出料의 일부분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47.5% - 58%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비율에 비해서 약간 많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집단간의 차이는 중요한데 비전문직자영자가 정부의 釀出料 부담 당위성에 대해 가장 적게 주장하는 반면 농민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소득의 수준과 의료보험에서의 釀出料부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표 5-33〉 정부의 釀出料부담 당위성여부에 대한 가구주응답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예	319 (58.0)	47 (51.6)	16 (57.1)	249 (47.5)	134 (56.3)	113 (55.1)
아 니 오	231 (42.0)	44 (48.4)	12 (42.9)	275 (52.5)	104 (43.7)	92 (44.9)
계	550 (100.0)	91 (100.0)	28 (100.0)	524 (100.0)	238 (100.0)	205 (100.0)

$$CHI-SQUARE = 13.24, \quad D.F. = 5, \quad P = 0.0212$$

(3) 정부의 釀出料 부담 가능성

앞에서 정부가 釀出料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간에 그리 차이는 나지 않지만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이 약간 많았는데, 표 5-34를 보면 실제로 정부가 釀出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간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단간 별 차이가 없다.

〈 표 5-34〉 정부의 醃出料 부담능력 유무에 대한 가구주응답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예	269 (49.7)	34 (37.4)	12 (42.9)	216 (41.9)	98 (42.2)	87 (44.2)
아니오	272 (50.3)	57 (62.6)	16 (57.1)	300 (58.1)	134 (57.8)	110 (55.8)
계	541 (100.0)	91 (100.0)	28 (100.0)	516 (100.0)	232 (100.0)	197 (100.0)

$$\text{CHI-SQUARE} = 9.81, \quad \text{D.F.} = 5, \quad P = 0.0807$$

(4) 정부가 醃出料를 부담해야 하는 수준

정부가 醃出料의 몇 %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표 5-3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43%~49%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의 폭은 상당히 작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醃出料 수준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무직자, 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되어, 전문직자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원하는 정부의 醃出料 부담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정부가 醃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표 5-36을 보면 정부가 실제로 몇 %의 醃出料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정부가 醃出料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이의 폭은 크지 않다. 각 집단별로 33%~45%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집단간의 차이는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의 폭은 역시 작은 편이다. 다만 농민 및 무직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상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전문직자영자의 순으로 정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醃出料 수준이 낮아져

〈표 5-35〉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釀出料수준에 대한 ANOVA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6839.7397	1367.9479	4.5981	0.0004	
WITHIN GROUPS	863	256746.2672	297.5044			
TOTAL	868	263586.0069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317	48.73	17.40	0.97	10.00	100.00
무직자	46	46.73	17.61	2.59	20.00	100.00
전문직자영자	16	45.00	19.23	4.80	15.00	90.00
비전문직자영자	246	42.56	15.51	0.98	10.00	100.00
상용임금근로자	133	43.75	17.37	1.50	5.00	100.00
임시·일용근로자	111	48.77	19.67	1.86	10.00	100.00
TOTAL	869	46.05	17.42	0.59	5.00	100.00

〈표 5-36〉 정부의 釀出料 실제부담 가능수준에 대한 ANOVA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4658.9061	931.7812	2.7787	0.0170	
WITHIN GROUPS	697	233729.0569	335.3358			
TOTAL	702	238387.9630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266	44.51	17.38	1.06	10.00	100.00
무직자	34	44.50	21.88	3.75	10.00	100.00
전문직자영자	12	32.75	16.83	4.86	8.00	50.00
비전문직자영자	209	39.16	19.75	1.36	2.00	100.00
상용임금근로자	98	42.68	19.43	1.96	1.00	100.00
임시·일용근로자	84	41.59	14.25	1.55	10.00	80.00
TOTAL	703	42.11	18.42	0.69	1.00	100.00

서 이것으로도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정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鰹出料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鰹出料 부담가능수준

현행 國民年金制度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鰹出料 수준 7,500 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물어본 결과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표 5-37 을 보면, 鰹出料 부담이 아주 작다, 작다, 알맞다로 대답한 사람은 농민이 24.6 %,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41.7 %, 무직자가 58.7 %, 상용임금근로자가 66.3 %, 비전문직자영자가 71.5 %, 전문직자영자가 78.5 %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鰹出料 부담을 작게 느끼는 비율이 많아진다. 특히 농민의 경우 부담이 크다, 매우 크다고 답한 사람이 75.4 %나 되기 때문에 농민의 경우 鰹出料 부담을 특별히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37 >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現 鰹出料 (7,500 원)에 대한 부담정도

	농 민	무직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매 우.작 다.	-	1 (1.1)	2 (7.1)	10 (1.9)	3 (1.3)	-
작 다	5 (0.9)	2 (2.2)	6 (21.4)	59 (11.1)	17 (7.1)	11 (5.4)
알 맞 다	130 (23.7)	51 (55.4)	14 (50.0)	310 (58.5)	139 (57.9)	74 (36.3)
크 다	297 (54.1)	25 (27.2)	6 (21.4)	135 (25.5)	67 (27.9)	87 (42.6)
매 우크다	117 (21.3)	13 (14.1)		16 (3.0)	14 (5.8)	32 (15.7)
계	549 (100.0)	92 (100.0)	28 (100.0)	530 (100.0)	240 (100.0)	204 (100.0)

CHI-SQUARE = 340.46, D.F. = 20, P = 0.0000

앞으로 釀出料를 정액제로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하기를 원하는지도 釀出料 수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집단에게 부담가능한 釀出料 수준을 물어본 결과 각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유의수준이 0.07 이므로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아니나 여기서도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담가능한 釀出料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표 5-38 을 보면 농민이 5,800 원으로 가장 낮고, 무직자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7,200 원, 상용임금근로자 및 비전문직자영자가 7,900 원, 그리고 전문직자영자가 9,100 원으로 가장 높다.

〈 표 5-38 〉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釀出料 부담가능수준에 대한 ANOVA
(MEAN, S.D., S.E., 모두 100 단위)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5	32422.5508	6484.5102	2.0047	0.0778	
WITHIN GROUPS	301	973616.0941	3234.6050			
TOTAL	306	1006038.645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119	58.14	54.02	4.95	0.00	500.00
무직자	16	71.56	29.36	7.34	20.00	100.00
전문직자영자	10	90.50	78.57	24.84	10.00	300.00
비전문직자영자	102	79.10	61.21	6.06	0.00	500.00
상용임금근로자	34	79.26	59.03	10.12	0.00	300.00
임시·일용근로자	26	72.11	51.88	10.17	30.00	300.00
TOTAL	307	70.38	57.33	3.27	0.00	500.00

(7) 釀出料 부담능력

현재 75,000 원이 사업장가입자의 釀出料부담의 기준이 되는 최저보수액이므로 그 기준을 國民年金任意가입자에게 적용할 때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이 몇 %나 되는가에 따라 각 집단의 釀出料 부담능력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월평균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도

70,000 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醃出料를 내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醃出料 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들의 분포가 각 집단간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아 각 집단의 醃出料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70,000 원 미만인 사람은 10,380으로 전체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수 3,618,962의 0.3%⁷⁾에 그치는 것에 비추어 각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75,000 원 미만, 75,000 ~ 249,999, 250,000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표 5-39, 40, 41, 42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각 집단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농민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의 경우, 대동식물증식액과 재고농산물증감액의 포함여부보다도 현금소득인가, 아니면 현물소득인가에 따라 소득분포가 상당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금 및 현물소득은 대동식물증식액과 재고농산물증감액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월평균 75,000 원 미만인 사람이 12.4%로 같아서 대동식물증식액과 재고농산물증감액의 포함이 소득분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 현금소득 및 현금+현물소득을 비교해 보면, 재고농산물과 대동식물증식액을 포함한 경우에는 월평균 75,000 원 미만인 비율의 차이가 현금소득과 현금+현물소득간에 8.9%가 된다. 그리고 재고농산물과 대동식물증식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현금소득과 현금+현물소득간에 월평균 75,000 원 미만인 비율의 차이가 이보다 더 높은 9.1%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농민의 현물 및 현금소득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월평균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은 무직자가 82%로 가장 많고,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11.3%, 비전문직자영자가 6.1%, 농민이 3.3~3.5%, 상용임금근로자가 1.2%, 전문직자영자가 0%의 순서로 적어진다. 반면 농민

7)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p.228

의 현금소득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농민 중 월평균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은 12.4 %로 임시·일용임금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 표 5-39〉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75,000원 미만	26 (3.5)	178 (82.0)	-	35 (6.1)	3 (1.2)	27 (11.3)
75,000-250,000원 미만	204 (27.5)	17 (7.8)	3 (10.0)	50 (8.7)	45 (17.8)	68 (28.5)
250,000원 이상	511 (69.0)	22 (10.1)	27 (90.0)	491 (85.2)	205 (81.0)	144 (60.3)
계	741 (100.0)	217 (100.0)	30 (100.0)	576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1124.67 D.F. = 10, P = 0.0000

〈 표 5-40〉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11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75,000원 미만	89 (12.4)	178 (82.0)	-	35 (6.1)	3 (1.2)	27 (11.3)
75,000-250,000원 미만	331 (46.3)	17 (7.8)	3 (10.0)	50 (8.7)	45 (17.8)	68 (28.5)
250,000원 이상	295 (41.3)	22 (10.1)	27 (90.0)	491 (85.2)	205 (81.0)	144 (60.3)
계	715 (100.0)	217 (100.0)	30 (100.0)	576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1104.48 D.F. = 10, P = 0.0000

〈표 5-41〉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2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용 일 근로자
75,000원미 만	24 (3.3)	178 (82.0)	-	35 (6.1)	3 (1.2)	27 (11.3)
75,000-250,000 원 미 만	281 (38.3)	17 (7.8)	3 (10.0)	50 (8.7)	45 (17.8)	68 (28.5)
250,000원이상	428 (58.4)	22 (10.1)	27 (90.0)	491 (85.2)	205 (81.0)	144 (60.3)
계	733 (100.0)	217 (100.0)	30 (100.0)	576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1214.46 D.F. = 10, P = 0.0000

〈표 5-42〉 경제활동별 가구의 월평균근로소득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용 일 근로자
75,000원 미 만	89 (12.4)	178 (82.0)	-	35 (6.1)	3 (1.2)	27 (11.3)
75,000-250,000 원 미 만	339 (47.4)	17 (7.8)	3 (10.0)	50 (8.7)	45 (17.8)	68 (28.5)
250,000원 이 상	287 (40.1)	22 (10.1)	27 (90.0)	491 (85.2)	205 (81.0)	144 (60.3)
계	715 (100.0)	217 (100.0)	30 (100.0)	576 (100.0)	253 (100.0)	239 (100.0)

CHI-SQUARE = 1120.66 D.F. = 10, P = 0.0000

따라서 釐出料부담능력은 첫째, 농민의 경우 소득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둘째, 각 집단간의 부담능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무직

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집단이며, 농민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비전문직자영자와 소득정의에 따라 부담능력 순위가 바뀌는데 현물 및 현금소득의 경우, 비전문직자영자가 농민보다 부담능력이 약한 반면, 현금소득의 경우 농민이 임시·일용근로자 및 비전문직자영자보다 부담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釀出料 부과시기

농가소득의 계절성으로 말미암아 농민이 선호하는 釀出料 부과시기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집단이 선호하는 釀出料 부과시기를 알아 보았다. 표 5-43을 보면 선호하는 釀出料 부과시기는 각 집단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매월 釀出料를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농민 24.7%, 무직 72.8%, 임시·일용임금근로자와 상용임금근로자가 각각 66.7%, 67.5%, 비전문직자영자와 전문직자영자가 각각 64.1%, 53.6%로 농민이 가장 적고 무직자가 가장 많다. 반면 농민은 일년에 두번이나 네번이 35.1%, 2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 따라서 소득의 계절성은 농민에게만 있는 현상이며, 다른 집단은 그것으로 인하여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경제 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釀出料 부과시기

	농 민	무 직 자	전 문 직 자 영 자	비 전문 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매 월	135 (24.7)	67 (72.8)	15 (53.6)	338 (64.1)	162 (67.5)	136 (66.7)
1 년에 4 회	146 (26.7)	13 (14.1)	5 (17.9)	102 (19.4)	41 (17.1)	37 (18.1)
1 년에 2 회	192 (35.1)	8 (8.7)	6 (21.4)	62 (11.8)	31 (12.9)	22 (10.8)
1 년에 1 회	74 (13.5)	4 (4.3)	2 (7.1)	25 (4.7)	6 (2.5)	9 (4.4)
계	547 (100.0)	92 (100.0)	28 (100.0)	527 (100.0)	240 (100.0)	204 (100.0)

CHI-SQUARE = 281.73, D.F. = 15, P = 0.0000

(9) 醗出料 부과단위

醗出料 부과단위는 개인단위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대주단위로 해야 하는가, 또는 이것을 경제활동별로 다르게 해야 하는가는 각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 수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무급가족 종사자 중 醗出料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등을 알아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조치는 가구주가 농민이거나 비농민 자영자일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민, 비농민 전문직자영자, 비농민 비전문직자영자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

표 5-44 를 보면 세 집단간 무급가족종사자수의 평균이 비교된다. 농민의 경우 한 가구당 평균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03 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자영자의 경우 0.21 명, 비전문직자영자의 경우 0.35 명에 그친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로 나타난다.

〈표 5-44〉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수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2	133.5418	66.7709	231.96	0.0000	
WITHIN GROUPS	1106	318.3662	0.2879			
TOTAL	1108	451.9080				
GROUPS	N	MEAN	S.D.	S.E.	MIN.	MAX.
농 민	550	1.0327	0.54	0.02	0.00	5.00
전문직자영자	28	0.2143	0.42	0.08	0.00	1.00
비전문직자영자	531	0.3465	0.54	0.02	0.00	3.00
TOTAL	1109	0.6835	0.64	0.02	0.00	5.00

무급가족종사자가 대체로 어떠한 가족구성원인가가 표 5-45에 나와 있다. 각 세집단에서 배우자가 66.7 % (전문직자영자)에서 86.0 % (비전문직자영자)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는 자녀가 약

〈 표 5-45〉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농민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배우자	582(79.3 %)	4(66.7 %)	147(86.0 %)
부모	11(1.5 %)	0	5(2.9 %)
자녀	99(13.5 %)	1(16.7 %)	14(8.2 %)
며느리, 사위	39(5.3 %)	0	1(0.6 %)
형제	3(0.4 %)	1(16.7 %)	4(2.3 %)
계	734(100.0 %)	6(100.0 %)	171(100.0 %)

CHI-SQUARE: 38.14, D.F. = 8, P = 0.0085

〈 표 5-46〉 경제활동별 무급가족종사자 중 연금가입 가능자의 비율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S	2	26547.2246	13273.6123	5.98	0.0026	
WITHIN GROUPS	668	1480302.419	2216.0216			
TOTAL	670	1506849.644				
GROUP	N	MEAN	S.D.	S.E.	MIN.	MAX.
농민	496	32.0565	46.13	2.07	0.00	100.00
전문직자영자	6	66.6667	51.63	21.08	0.00	100.00
비전문직자영자	169	44.8718	49.60	3.81	0.00	100.00
TOTAL	671	35.5936	47.42	1.83	0.00	100.00

15 %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정액 釀出料를 부과할 때 무급가족종사자 중 釀出料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표 5-4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민이 32.1 %로 가장 낮고, 전문직자영자가 66.7 %로 가장 높으며, 비전문직자영자는 그 중간인 44.9 %이다.

이를 볼 때,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 각 경제활동집단에서 배우자로 구성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수나 그 중 釀出料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각 집단간 큰 차이가 있다. 농민은 한 가구당 약 1명 정도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 하는 반면 비전문직자영자나 전문직자영자는 그 수가 0.3명 이내이다.

그러나 그 중 釀出料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농민이 가장 낮고 전문직 자영자가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무급가족종사자를 釀出料 부과대상으로 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민이 가장 부담이 큰 집단이 될 것이다.

國民年金의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釀出料 부담의 형태, 정부의 釀出料 부담당위성, 정부의 釀出料 부담 가능성,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야 하는 수준, 정부가 釀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釀出料 부담가능 수준, 釀出料 부담능력, 釀出料 부과시기, 釀出料 부과단위에 대한 가설에 대해 자료분석을 한 결과 이 변수들 중 정부의 釀出料 부담능력과 가구주의 釀出料 부담수준만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釀出料 부담 당위성,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야 하는 수준, 정부가 釀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중요하기는 하나 별로 크지 않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國民年金의 재원조달 방향설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釀出料 부담형태나 釀出料 부담가능수준, 釀出料 부담능력, 釀出料 부과시기에 따라 연금형태를 결정할 때, 각 집단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집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각 집단의 성격과 선호도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의 소득과 釀出料 부담가능 수준 및 형태가 일관성있는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釀出料 재원조달 방안이 각 집단간의 소득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釀出料 부담형태로서 대

부분의 사람들이 정율제를 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율제를 원하며, 현행 정액 釀出料에 대해 釀出料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釀出料 부담가능 수준도 낮고, 釀出料 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釀出料 수준이 소득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釀出料 부과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째, 각 집단내에서도 소득분포가 널리 퍼져 있어 각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고려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이 필요하다. 각 집단간의 소득차이는 각 집단내의 소득분포가 집단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반영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될 수 있다. 즉, 각 집단간,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 대해 그 집단내의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은 부적당할 것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집단별로 釀出料부과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집단과 무관하게 소득을 중심으로 釀出料를 부과하는 것이 각 집단간,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을 각 집단에 적용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더 혜택을 볼 것이며, 같은 집단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더 혜택을 보게 되어 집단간 소득계층간에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농민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개념안에서도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기준을 각 집단에게 적용하려면, 먼저 소득의 정의를 정확히 일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경우, 재고농산물 증감액이나 대동식물증식액이 재산적 수지로서 현금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하더라도 총근로소득의 15%이내에 한정되므로 농민의 소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농민의 경우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현금소득이 그들의 釀出料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축이 되는 소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업현금소득의 분포가 농지세 과세표준소득액의 분포와 가장 근

접한 분포를 보이므로 조세자료의 이용도의 가치가 이점에서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이들 중 일부는 농지소득으로 파악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도 파악되기 힘든 것이므로 현금소득만으로 농민의 釀出料 부담 능력을 측정할 때 그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섯째, 소득의 계절성이 釀出料 부과 선포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농민에게만 나타나며, 다른 집단에게는 심하지 않으므로 행정적 편의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釀出料 부과시기를 소득의 계절성을 반영하여 1년에 2번 내지 4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釀出料 부과단위는 소득발생 단위로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한 가구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가구당 평균 0.3명 - 1명을 넘지 않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가 가구주의 소득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지 않고 釀出料를 부담할 수 있는 비율도 농민과 비전문직자영자의 경우 각각 32%, 45%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배우자이므로 가급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구주의 소득발생단위로 할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國民年金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설검증

(1) 현행 國民年金制度에 대한 인식

현재 國民年金이 실시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國民年金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정책이 어느 정도로 지역가입자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고 있는가를 현행 가입자만의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國民年金 지역가입자제도가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인식부족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國民年金에 대한 인식정도가 지역가입자들간에 어떠한가, 인식은 하고 있으나 國民年金에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 또는 國民年金에 대해 설명을 통해 알게 되면서도 國民年金이 필요없다거나, 國民年金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國民年金의

가입형태는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1)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

표 5-47 을 보면 國民年金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15.1 %에서 56.7 %로 높지 않고 집단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國民年金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집단은 임시·일용임금근로자로서 84.9 %가 國民年金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민과 무직자가 각각 76.5 %, 73.7 %이다.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자영자는 각각 62.7 %, 62.6 %로 차이가 없고 전문직자영자가 43.3 %로 가장 적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집단은 國民年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유리한 집단으로 나타나 이것만으로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낮은 가입율이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소득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표 5-47〉 경제 활동별 가구주의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부

	농 민	무직 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일용 근 로 자
안 다	175 (23.5)	57 (26.3)	17 (56.7)	215 (37.4)	94 (37.3)	36 (15.1)
모 른 다.	571 (76.5)	160 (73.7)	13 (43.3)	360 (62.6)	158 (62.7)	203 (84.9)
계	746 (100.0)	217 (100.0)	30 (100.0)	575 (100.0)	252 (100.0)	239 (100.0)

$$\text{CHI-SQUARE} = 73.91, \quad \text{D.F.} = 5, \quad \text{P} = 0.0000$$

따라서, 현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國民年金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만 질문하였다. 표 5-48 을 보면,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소득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소

특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는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각각 68.5%, 71.4%로 가장 많고, 상용임금근로자가 48.9%, 비전문직자영자가 34.4%, 무직자가 29.1%, 전문직자영자가 17.6%의 순서로 비율이 낮아진다. 반면,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國民年金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전문직자영자가 17.6%로 가장 높으며,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와 무직자는 4% 이하로 낮다. 國民年金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든 경우, 즉 다른 것에 비해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연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연금보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답한 사람들은 집단간 별차이가 없으나 비전문직자영자는 25.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높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직자가 27.3%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무직자의 고령화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5-48〉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國民年金에 대해 알면서도 가입안한 이유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현재소득으로 가입할 여유가 없다.	113 (68.5)	16 (29.1)	3 (17.6)	73 (34.4)	44 (48.9)	25 (71.4)
다른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2 (1.2)	2 (3.6)	3 (17.6)	21 (9.9)	8 (8.9)	1 (2.9)
다른것에비해 國民年金 수급액이 너무 적다.	-	1 (1.8)	-	4 (1.9)	1 (1.1)	-
연금을 제때에 받을지 의심스럽다.	3 (1.8)	-	-	6 (2.8)	1 (1.1)	-
연금이 나에게 혜택을 줄것 같지 않다.	6 (3.6)	2 (3.6)	-	22 (10.4)	4 (4.4)	2 (5.7)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다른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	8 (4.8)	4 (7.3)	2 (11.8)	23 (10.8)	4 (4.4)	2 (5.7)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 절차를 잘 모른다	13 (7.9)	6 (10.9)	2 (11.8)	22 (10.4)	13 (14.4)	2 (5.7)
가입하고 싶으나 가입 장소가 너무 멀다	-	-	-	-	1 (1.1)	-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 (4.8)	15 (27.3)	2 (11.8)	13 (6.1)	4 (4.4)	1 (2.9)
기 타	12 (7.3)	9 (16.4)	5 (29.4)	28 (13.2)	10 (11.1)	2 (5.7)
계	165 (100.0)	55 (100.0)	17 (100.0)	212 (100.0)	90 (100.0)	35 (100.0)

$$\text{CHI-SQUARE} = 126.12, \quad \text{D.F.} = 45, \quad P = 0.0000$$

2) 國民年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

國民年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國民年金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그후 國民年金에 대한 주관적 필요성과 수요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이유가 집단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9를 보면,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현재 소득으로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72.2%, 8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많은데 비하여 소득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용임금근로자나 무직자는 각각 46.9%, 43.6%로 소득부족이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보다는 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직자영자나 비전문직자영자는 소득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가장 적은 집단으로 각각 20%, 32.3%가 소득부족을 이유로 國民年金이 필

〈 표 5-49〉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금이 필요없다거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농 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 영 자	상용임금 근 로 자	임시· 일 용 근로자
현재 소득으로 여유가 없다.	177 (72.2)	17 (43.6)	2 (20.0)	60 (32.3)	38 (46.9)	70 (82.4)
경제불안으로 제때지 급될지 의심스럽다	9 (3.7)	3 (7.7)	-	6 (3.2)	5 (6.2)	1 (1.2)
물가상승으로 불안전 하다.	3 (1.2)	-	-	11 (5.9)	3 (3.7)	-
혼자 힘으로 준비할 수 있다.	21 (8.6)	5 (12.8)	3 (30.0)	38 (20.4)	15 (18.5)	3 (3.5)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다.	2 (0.8)	-	1 (10.0)	6 (3.2)	1 (1.2)	-
다른 연금을 타고 있 거나 탈 예정이다.	8 (3.3)	3 (7.7)	2 (20.0)	24 (12.9)	9 (11.1)	3 (3.5)
기 타	25 (10.2)	11 (28.2)	2 (20.0)	41 (22.0)	10 (12.3)	8 (9.4)
계	245 (100.0)	39 (100.0)	10 (100.0)	186 (100.0)	81 (100.0)	85 (100.0)

CHI-SQUARE = 130.41, D.F. = 30, P = 0.0000

요없다거나 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직자영자나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혼자 힘으로 준비할 수 있다와 다른 연금을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50%, 33.3%, 29.6%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스스로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國民年金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소득에 영향을 미칠 釀出料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위의 두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다른 집단보다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선호하는 國民年金의 가입형태

앞으로 國民年金 임의가입대상자를 위한 자격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연가입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장점과, 강제성의 단점, 그리고 임의가입시 개인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제외된다는 단점을 설명해준 뒤 질문을 하였는데, 표 5-50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백분율이 집단간에 61.7%에서 74.7%까지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당연가입에 대한 선호도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보다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유의할 만하다. 농민의 당연가입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 표 5-50 >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연금가입 형태

	농민	무직자	전문직 자영자	비전문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당연가입	139	34	8	177	92	67
방식	(25.3)	(37.0)	(28.6)	(33.3)	(38.3)	(32.8)
임의가입	410	58	20	354	148	137
방식	(74.7)	(63.0)	(71.4)	(66.7)	(61.7)	(67.2)
계	549	92	28	531	240	2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7.30, D.F. = 5, P = 0.0040

위의 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 國民年金을 현 임의가입대상자에게 확대하여 당연 적용할 때는 다음의 결론을 반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현 임의가입대상자인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보 부족, 즉 國民年金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충분한 홍보를 하여 國民年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國民年金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현재 소득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집단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鰥出料부과방안은 연금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國民年金의 기본원리인 소득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소득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해 저축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의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연가입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격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때, 현 國民年金의 소득재분배와 재원안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저소득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현재 지역가입자의 명칭을 가진 임의가입대상자는 1988년 4월에 556명에 불과한 적은 수이고 따라서 실제로 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연금미가입 임의가입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의 83%에 이르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 임의가입대상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need)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여건을 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연금제도를 확대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체제의 기본골격을 세운다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수립과 연결시키는 세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 세가지 과제는 :

1. 국민연금 확대대상의 선정에 관한 과제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 수요, 鰥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목표집단을 선정하고 확대방법 및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었고,

2. 재원조달에 관한 과제로서 鰥出料 부과형태, 정부부담에 대한 기대, 鰥出料를 낼 수 있는 수준 및 부담능력의 측면에서 재원조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3. 가입방식 및 가입촉진에 관한 과제로서 선호하는 연금제도 가입형태, 연금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세가지 과제를 통하여 현재 임의가입 대상자집단을 이루고 있는 농민, 무직자, 전분직 자영자, 비전분직 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그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조건이 각 집단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발견된 사항들이 앞으로의 정책발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다음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각 집단의 사회적 요구 및 각 집단이 당면한 장애여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당연가입을 확대할 때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각 집단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장애여건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각 집단의 사회적 요구란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를 의미하며, 장애여건이란 필요성을 기준으로 國民年金을 확대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서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가능성, 소득과약의 문제, 國民年年에 대한 인지도, 國民年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을 의미한다.

2. 國民年金에 대하여 각 집단이 보이는 다양한 요구 및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을 연금확대 대상을 설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데 연금확대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검증을 통해서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받게 되었다.

(1)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國民年金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노후준비대책이 없는 비율이 무직자, 농민, 전분직자영자, 비전분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간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國民年金에 가입하겠다고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를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이들 집단간에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과세자료보유율과 실제 소득분포와 과세표준소득액의 분포의 차이로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측정되었는데 이에 있어서도 각 집단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 이 세가지 면에서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國民年金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측면에서 확대대상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각 변수에 따른 확대대상의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성 측면에서 國民年金을 가장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의 순으로 나열하면,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농민, 상용임금근로자와 비전문직자영자, 전문직자영자가 된다. 이 순위는 과세자료보유율이 높고 과세표준소득액과 실제소득액의 차이가 적어 상대적으로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순위로 나열한 농민,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자영자(무직은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외)의 순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반면 國民年金에 가입하겠다고 한 비율은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근로자가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민과 무직자의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의 우선순위는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측면과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측면에서의 우선순위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國民年金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 國民年金에 대한 수요,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측면에서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 당 측 면	우 선 순 위
필요성측면	임시·일용임금근로자 > 무직자 > 농민 > 상용임금근로자 > 자영자
수요측면	상용임금근로자 및 자영자 >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및 농민, 무직자
釀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	농민 > 상용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 자영자 (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필요성 및 鰥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측면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때 필요성 및 鰥出料의 객관적 부과 가능성이 높은 순위로 國民年金 확대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첫째, 國民年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부터 확대하기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복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둘째, 鰥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집단부터 확대하기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용이하다는데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확대순위는 소득이 높은 순위와 일치하여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을 은연 중에 제안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鰥出料를 납부할 능력이 높은 집단이 우선적으로 가입되어 연금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장점은 鰥出料를 소득비례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영자의 과세자료보유율이 가장 낮고 과세표준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차이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는 살려질 수 없다.

(3) 집단간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고 鰥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은 연금확대를 할때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소득에 비례하는 鰥出料부과방식으로 연금을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집단간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 및 鰥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같다면 굳이 단계적인 확대를 선호할 이유가 없고 일률적으로 모든 집단에게 國民年金을 한꺼번에 확대할 수 있다. 집단간에 國民年金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고 鰥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기때문에 어느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일률적 확대의 장점은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연금에 가입됨으로 給與공식부분에서 균등부분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그들이 가입하기 전보다 연금가입자의 연금수준이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높은 집단의 소득과약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하기 때문에 현

재와 같이 자영자의 소득과약이 조세에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세를 이용하여 釀出料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현 임의가입대상자의 소득과약이 정확히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경우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國民年金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고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농민, 임시, 일용임금근로자, 상용임금근로자, 자영자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합체계내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소득이 낮은 집단부터 우선적으로 확대가입되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집단이 가입하기전까지는 年金給與水準이 현재의 것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給與 균등부분을 산정할 때 모든 가입자의 평균보수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나 소득재분배면에서는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4) 釀出料를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낮은 과세자료보유율 및 과세표준소득액 과 실제소득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현재 조세자료를 釀出料부과 기준으로 삼는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는 釀出料 부과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釀出料부과 기준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현 조세과약 체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집단의 國民年金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키는데 또다른 장애요건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재원조달측면의 상황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은 선호하는 釀出料 부담의 형태, 정부의 釀出料부담 당위성, 정부의 釀出料 부담 가능성,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야하는 수준, 정부가 釀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釀出料 부담 가능수준, 보험료 부담 능력, 釀出料 부과시기, 釀出料부과단위 등이 있다. 여기에서 선호하는 釀出料 부담의 형태는 소득에 비례하는 정율제를 원하는지 아니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정액이 부과되는 정액제를 원하는지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釀出料 부담 당위성은

釀出料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釀出料 부담 가능성은 정부가 실제로 釀出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釀出料의 몇 %를 정부가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 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정부가 釀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釀出料의 몇 %를 정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釀出料 부담 가능수준은 현행 정액제 釀出料 수준에 대해 느끼는 부담과 앞으로 釀出料로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로 측정되었다. 釀出料 부담능력은 각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이 75,000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釀出料 부과 시기는 1년에 몇 번 釀出料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로 측정되었다. 이 중에서 정부의 釀出料 부담 가능성만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釀出料 부담 당위성,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야 하는 수준, 정부가 釀出料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집단간의 차이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을 통해서 결론 및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받게 되었다.

(1) 釀出料 부담형태나 釀出料 부담가능수준, 釀出料 부담능력, 釀出料 부과시기에 있어서 각 집단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기때문에 그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집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각 집단의 성격과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釀出料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釀出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 및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釀出料수준과 부담할 수 있는 釀出料수준은 집단간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더라도 그 차이폭이 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임의가입대상자들이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담능력을 근거로 하는 바램이 아니고 다만 본인외의 사람이나 조직이 釀出

料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가 釀出料를 부담해 주어야 하는가, 또는 釀出料의 어느 정도를 부담해 주어야 하는가는 임의가입대상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각 집단의 부담능력, 정부의 재정 상황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근거로 결정 내려져야 한다.

(3) 각 집단의 소득수준과 釀出料 부담형태 및 釀出料 부담가능수준, 그리고 釀出料 부담능력이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釀出料 형태 및 수준이 그 집단의 소득과 연관되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대부분이 정율제를 원하며, 정율제를 원하는 경향은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약하고(농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정율제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현행 정액 釀出料에 대해 釀出料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釀出料 부담 가능수준도 낮고, 釀出料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때 釀出料수준이 소득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각 집단내에서도 소득분포가 널리 퍼져 있어 각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반영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이 필요하다. 각 집단간의 소득차이는 각 집단내의 소득분포가 집단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반영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될 수 있다. 즉, 각 집단간,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 대해 그 집단내의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釀出料부과방안은 부적당할 것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집단별로 釀出料부과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집단과 무관하게 소득을 중심으로 釀出料를 부과하는 것이 각 집단간, 각 집단내의 소득차이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을 각 집단에 적용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더 혜택을 볼 것이며, 같은 집단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더 혜택을 보게 되어

집단간, 집단내 소득계층간에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농민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개념내에서도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기준을 각 집단에게 적용하려면, 먼저 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경우, 현금소득인가 아니면 현금과 현물을 합한 소득인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현물소득 중에서 현금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재고농산물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이 총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이내이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금소득이 가장 소득을 낮게 측정하게 되는 보수적인 기준이 되 그 중에서도 농업현금소득이 농지세 과세표준소득액의 분포와 가장 근접한 분포를 보이므로 농업현금소득을 釀出料부과기준 소득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민의 경우 재고농산물증감액 및 대동식물증식액과 그외의 현물소득이 전체소득의 32%를 차지하고 이러한 소득은 실제로 과세로 파악되기 힘든 것이므로 현금소득만을 釀出料부과대상으로 할 때 이점에서 농민이 다른 집단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釀出料 부담능력은 농민의 현금근로소득을 기초로 할 경우, 무직자, 농민 및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비전문직자영자, 상용임금 근로자, 전문직 자영자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釀出料 부담능력이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집단과 비슷한 給與水準을 유지하면서 각 집단이 독립적으로 연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부담능력이 낮은 집단이 재정불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 준다. 유의할 것은 농민과 임시·일용임금근로자의 부담능력이 차이가 없다는 것과, 농민의 현물소득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임시·일용임금근로자들의 부담능력이 농민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재정부담능력의 저조는 무직자와 농민의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그들이 독립적으로 연금을 운영할 때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다른 집단보다 더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연금운영을 하는 것에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7) 선호하는 醵出料 부과시기가 농민과 다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집단은 매월 醵出料납부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되 농민의 경우는 소득의 계절성때문에 醵出料를 1년에 2번 내지 4번 납부하기를 원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醵出料 부과방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8) 醵出料 부과단위는 세대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평균 0.3-1명에 그치고 그들의 醵出料부담능력도 높지 않으므로 소득발생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배우자이므로 가급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구주의 소득발생단위로 醵出料부과단위를 한다해도 배우자가 연금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각 집단이 선호하는 國民年金에 대한 가입형태와 國民年金加入에 영향을 미치는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 및 國民年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이 조사결과 國民年金의 당연가입확대에 장애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을 통한 자료분석결과 및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받게 되었다.

(1) 현 임의가입대상자인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보부족, 즉 國民年金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충분한 홍보를 하여 國民年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國民年金에 대해 알게되더라도 현재 소득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집단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醵出料 부과방안은 연금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소득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해 저축한다는 國民年金,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3) 전반적으로 소득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의가

입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연가입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적 확대, 또는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현 國民年金의 소득재분배와 재원 안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저소득자만, 또는 고소득자만 선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조사에서는 편의상 경제활동종류별로 임의가입대상자를 구별하였지만, 이것을 실제자격관리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경제활동종류별로 임의가입대상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현재 의료보험이 대상자를 농촌, 도시로 구분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다. 즉 농촌의 구성원을 다시 농민과 비농민으로, 비농민의 구성원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 전문직자영자, 비전문직자영자, 무직자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별로 가입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개념정의 설정과 유형분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6. 전국민에게 연금을 확대할 때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보험형태의 연금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國民年金의 기본적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집단의 고령화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보험형태를 계속 고수할 때 고령화정도가 심한 농민과 무직자집단 중에 연금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다른 집단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문제는 보험형태의 연금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험형태의 연금은 젊었을 때의 저축원리를 강조하기때문에 현재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당연히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형태의 연금은 현재 직업을 가져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연금이기때문에 연금확대에 대한 대상을 그만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임의가입대상자에게 연금을 확대한다고 할 때는 먼저 임의가입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 사회보험형태의 연금을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無醵出年金形態를 도입할 가능성도 전제로 하는지를 밝혀야 그에 따른 자격관리, 재원조달, 급여체계 등이 의도에 맞게 설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부 록 I

당연가입 확대대안

부 록 . I

당연가입 확대대안

本 附錄에서는 앞의 實態調査를 通하여 把握된 韓國의 現實的 與件을 바탕으로 國民年金 當然加入을 擴大하기 爲한 代案을 간단히 提示하고자 한다.

1. 現實的 與件

(1) 國民年金에 대한 主觀的 必要性 및 需要가 全般的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조속한시일내에 年金을 擴大할 必要가 있다.

1) 國民年金에 대한 主觀的 必要性, 즉 國民年金이 必要하다고 答한 사람은 全般的으로 80 %水準 前後로 높으며 經濟活動集團間 차이가 없다.

2) 國民年金에 대한 需要, 즉 加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자영자와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80 %정도이고,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농가, 無職者는 70 %前後이다.

(2) 課稅資料를 利用하여 全國民의 所得을 把握하기에는 課稅資料保有者數가 적고, 실제소득과 課稅資料上 집계되는 소득과 격차가 너무 커서 所得把握을 基礎로 한 所得比例釐出料賦課 및 그에 따른 給與의 擴大實施는 所得把握狀況이 改善됨과 함께 段階的으로 實施되어야 한다. 그러나 定額釐出의 年金制度나 所得比例釐出 및 所得比例給與를 除限된 對象에게만 실시한다면 年金擴大時期를 앞당길 수 있다.

1) 課稅資料保有者數는 農民自營者の 경우 約 98 %, 非農民自營者の 경우 約 56 %로 推定된다.

2) 實際課稅納付者數는 農民自營者の 경우 約 16 %, ¹⁾非農民自營者の 경우 約 29 % ²⁾로 推定된다.

1) 1986 年 總農民自營業主 1,872,000 名 중 289,147 名

2) 1986 年 總非農民自營業主 2,996,000 名 중 854,731 名

3) 實際所得과 課稅上 포착되는 所得과의 隔次가 相當히 큰데, 勤勞의 댓가로 얻는 家口 總所得과 課稅標準所得의 分布를 比較해 보면, 農民의 경우 課稅標準所得分布에서 月平均 150,000 원이하인 사람의 比率이 實際所得分布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백분율보다 約 62 %程度 많고(농가 現金勤勞所得을 基礎로 한 경우), 非農民自營者の 경우는 約 72 %程度 많다.

(3) 所得比例 釀出 및 所得比例 給與의 年金制度로 段階的 擴大時는 客觀的 必要성과 所得把握의 용이성의 차이를 基準으로 農民, 臨時, 日傭賃金勤勞者, 常傭賃金勤勞者, 自營者, 無職者의 순으로 擴大하여야 한다.

1) 老後準備實態에서 가장 불리한 位置에 있어 客觀的으로 國民年金을 必要로 하는 순서는 臨時, 日傭賃金勤勞者 > 無職者 > 農民 > 常用賃金勤勞者 > 자영자이다.

2) 釀出料를 客觀的으로 부과하기가 용이한 순서는 農民 > 常用 및 臨時, 日傭賃金勤勞者 > 자영자의 순이다. (무직자는 所得이 없으므로 除外하며 常傭賃金勤勞者 중 5人以上 事業體勤勞者는 현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所得이 把握되므로 年金未加入者 중에서 所得把握이 가장 용이한 집단이 될 것이다.) 농민자영자가 비농민자영자보다 釀出料를 客觀的으로 부과하기가 용이한 이유는 農民自營者가 非農民自營者보다 課稅資料 保有者數가 많고 實際所得과 課稅에 포착된 所得차이가 相對的으로 적으며, 所得分散程度가 적기 때문이다. 農民이 小規模常傭賃金勤勞者 및 臨時, 日傭賃金勤勞者보다 所得把握에 있어서 더 용이한 이유는 職業이 그들보다 安定되어 있고 所得測定의 基準이 될 수 있는 農地가 있기 때문이다. 小規模 常傭賃金勤勞者나 臨時, 日傭賃金勤勞者는 被雇傭人으로서 復雜한 所得計算이 必要없이 받는 報酬로서 勤勞所得이 測定되고, 所得分散程度가 自營者보다 더 작기때문에 自營者보다 釀出料를 客觀的으로 부과하기가 더 용이한 集團이다.

(4) 釀出料負擔 側面에서는 可能的한 한 所得比例 釀出 및 所得比例 給與를 採擇하고, 定額 釀出 方法으로 所得把握이 어려운 集團의 釀出料賦課 方案

을 補完해야하되, 定額際는 所得이 가장 낮은 階層의 負擔能力을 考慮하여 測定되어야 한다. 이때 所得은 勤勞의 댓가로 얻은 所得에 한정하며 事業所得, 勤勞所得, 農業所得 등이 釀出料賦課基準이 되어야 한다.

1) 釀出料負擔能力이 集團間 차이가 난다. 農民의 現金勤勞所得과 그 외 集團의 勤勞所得(勤勞의 댓가로 얻은 所得으로 事業所得, 被傭所得을 의미함)을 比較할 때, 負擔能力은 無職者<農民<臨時. 日傭賃金勤勞者<常傭賃金勤勞者<非專門職自營者<專門職自營者の 순으로 높아진다.

2) 年金未加入者 대부분이 정율제 釀出을 원하며(64.3% - 87.3%), 所得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율제를 원하는 比率이 낮다.

3) 現在 定額釀出料 월 7,500 원에 대해서는 所得이 낮은 집단일수록 負擔을 많이 느낀다. 負擔이 적다고 답한 사람은 農民의 경우 24.6%, 臨時. 日傭賃金勤勞者の 경우 41.6%, 無職者 58.7%, 常傭賃金勤勞者 66.3%, 非專門職自營者 71.5%, 專門職自營者 78.5%이다.

4) 유의수준은 0.05 가 넘지만 負擔이 可能的 釀出料水準 역시 所得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負擔可能的 釀出料水準은 農民의 경우 매월 5,800 원, 無職者 7,200 원, 臨時. 日傭賃金勤勞者 7,200 원, 常傭賃金勤勞者와 非專門職自營者 7,900 원, 專門職自營者 9,100 원 程度가 된다.

(5) 年金適用單位는 所得比例釀出, 所得比例給與制度에서는 所得發生單位로 하되, 定額釀出制度에서는 釀出과 所得이 무관하므로 所得發生單位를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

1) 全體的 經濟構造에서 無給家族從事者가 所得發生에 기여하는 重要도에 따라 年金適用單位에 無給家族從事者の 포함여부를 決定해야 한다. 賃金勤勞者の 경우, 家口主의 所得發生에 기여하는 無給家族從事者란 없으며, 實態把握에서 나타난 結果로는 自營者の 세대당 無給家族從事者數가 農民을 除外하고 平均 0.3 名을 넘지 않으므로 無給家族從事者가 세대주의 所得發生에 기여하는 程度가 平均的으로 그리 크지 않다. (農民은 平均 1 명꼴)

2) 無給家族從事者는 대부분 家口主의 배우자로 構成되는데 (農民 79.3%, 專門職自營者 66.7%, 非專門職自營者 86%) 所得比例年金의 경우 배우자는 가급연금에서 가구주의 年金給與에 添加되므로 所得發生單位로 年金適用單位로 할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3) 無給家族從事者 중 釀出料를 부담할 수 있는 比率이 農民의 경우 32%, 專門職自營者의 경우 67%, 非專門職自營者의 경우 45%로 農民 및 非專門職自營者의 경우 대체로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釀出料를 부과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렵다.

(6) 釀出料賦課時期는 各集團의 所得發生의 季節性에 맞게 定해져야 한다.

- 賃金勤勞者나 自營者集團의 大多數가 釀出料를 매월 納附하기를 希望하나 (53.6% - 72.8%) 農民의 경우 1년에 2回 - 4回 納附하기를 希望한다.

(7) 政府의 釀出料負擔은 各集團의 客觀的 負擔能力, 政府의 財政狀況, 福祉政策의 目標을 根據로 決定내려야 한다.

- 政府의 釀出料負擔에 대한 기대와 可能性與否, 기대수준과 負擔可能水準 등에 있어서 各集團間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때, 個人的 釀出料 負擔能力과 政府의 釀出料負擔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政府에 對한 단순한 기대가 政府의 實質釀出料 負擔을 定하는 根據로서 採擇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8) 年金財政의 사전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모든 集團을 統合하는 年金制度를 設計하여야 한다.

- 農民, 無職者는 集團間的 고령화정도가 相對的으로 심하고 釀出料 負擔能力이 약하여 分離된 制度를 設計할 시 年金財政不安定을 他集團보다 훨씬, 빨리 경험하게 될 것이다.

(9) 加入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年金에 대한 弘報가 必要하며 所得에 比例하는 釀出制度의 도입이 要請된다.

1) 國民年金에 대한 인지도는 全般的으로 낮고 (15 % - 56.7 %) 所得이 높은 集團일수록 인지도가 높다.

2) 國民年金에 대한 否定的인 반응은 所得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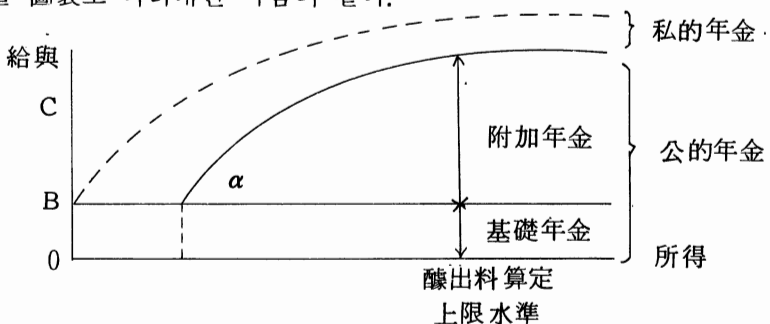
國民年金에 대한 否定的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所得이 相對的으로 낮은 農民과 臨時, 日傭賃金勤勞者의 경우 所得의 餘유가 없음이 各各 72 %, 82 %로 가장 많은 반면, 所得이 相對的으로 높은 非專門職自營者나 專門職自營者는 所得 以外의 이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0) 國民年金은 年金에 대한 國民들의 수용태도가 積極적으로 變化하는 것과 步調를 맞추어 段階的으로 擴大한다.

- 임의가입대상자 대부분이 임의가입을 선호한다. (61 % - 74.7 %) 따라서 當然加入은 相當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國民들의 年金에 대한 수용태세가 積極적으로 바뀌도록 유도하며 그와 보조를 맞추어 年金을 段階的으로 擴大하여야 한다.

2. 代案

購體的인 代案을 論議하기 以前에 代案의 基本틀이 되는 制度形態를 說明하고자 한다. 國民年金의 當然加入을 擴大하기 위하여 미래의 制度形態는 基礎年金과 所得比例에 따른 附加年金의 二重制度로 構成한다. 이 二重制度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α = 所得比例年金의 給與率

B = 基礎年金

總年金水準 = 基礎年金 (定額給與) + 附加年金 (所得比例給與)

基礎年金制度에 의해서 全國民의 最低生活水準을 保障하는 同時에 附加年金에 의한 보충으로 過去의 實質所得水準을 維持하고자 한다.

基礎年金制度和 附加年金制度를 同時에 包含하는 年金制度로 세가지 代案을 構想하였다. 代案Ⅰ, Ⅱ, Ⅲ에는 軍人年金, 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 加入者를 除外하였다.

代案Ⅰ, Ⅱ, Ⅲ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代案Ⅰ과 代案Ⅱ의 가장 큰 차이는 加入對象者의 單位의 選定에 있다. 加入對象者를 代案Ⅰ에서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選定하였고, 代案Ⅱ에서는 全國民을 중심으로 選定하였다. 代案Ⅲ에서는 加入對象者의 單位가 세대주 및 취업자가 된다. 즉, 代案Ⅱ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失業者, 無職者, 非經濟活動人口인 배우자가까지 包含하는 안이고 代案Ⅰ은 취업자, 代案Ⅲ은 就業者 및 就業者에서 除外되는 모든 세대주를 包含한다.

代案Ⅰ, Ⅱ, Ⅲ의 두번째 차이는 보험원칙의 고수정도에 있다. 代案Ⅰ에서는 就業者를 中心으로 年金制度가 設計되기 때문에 보험원칙이 강조되며, 釀出料를 負擔할 能力이 없는 자는 除外된다. 즉, 釀出料를 負擔할 能力이 없는 자는 年金制度에서보다도 공적부조제도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代案Ⅱ에서는 全國民을 中心으로 年金制度가 設計되기 때문에 보험원칙이 약화된다. 그 이유는 全國民의 當然加入을 要求함으로써 低所得層에 대한 국고보조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즉, 60세이상 되는 老人들에게는 누구나 最低生計를 維持할 수 있도록 年金에서 보장하겠다는 意志가 들어 있다.

代案Ⅲ은 代案Ⅱ와 마찬가지로 영세민에 대한 국고보조가 適用되므로 保險原則이 약화되지만, 代案Ⅱ와 다른 점은 세대주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代案Ⅰ, Ⅱ, Ⅲ의 세번째 차이는 釀出料賦課基準이 다르다는 것이다. 代案Ⅰ, Ⅲ에서는 釀出料賦課基準이 就業者로 됨으로써 자연히 세대주단위로 釀出料가 賦課된다. 이에 비해 代案Ⅱ에서는 釀出料賦課基準이 全國民으로 됨으로써 個人單位로 釀出料가 賦課된다. 즉, 배우자도 個人으로서

釀出料를 賦課하고 年金受給權을 獨立的으로 獲得하게 된다.

代案Ⅰ, 代案Ⅱ, 代案Ⅲ의 主要한 內容을 比較하면 表 1 - 3 과 같다.

〈 表 1 〉 各 代案別 加入者分類

	代案Ⅰ	代案Ⅱ	代案Ⅲ
加 入 者 分 類	○ 第 1 號 被保險者： 모든 被傭勤勞者 및 5 人以上 事業場 使用者 ○ 第 2 號 被保險者： 自營者(第 1 號 被 保險者 除外) ○ 第 3 號 被保險者： 第 2 號 被保險者 중 一定所得水準 以上 되는 者	○ 第 1 號 被保險者： 모든 被傭勤勞者 및 5 人以上 事業場 使用者 ○ 第 2 號 被保險者： 18 歲以上 60 歲 未滿의 모든 國民 (學生 및 第 1 號 被保險者 除外) ○ 第 3 號 被保險者： 左同	○ 第 1 號 被保險者： 被傭勤勞者 및 5 人 以上 事業章 使用者 (第 3,4 號 除外) ○ 第 2 號 被保險者： 自營者(第 1,3,4 號 除外) ○ 第 3 號 被保險者： 農業, 林業, 水產業에 從事하는 自營者(但, 4 號는 除外) ○ 第 4 號 被保險者： 都市영세민 (月所 得 132,000 원 以下 인者), 無職者

〈表 2〉 各 代案別 財源調達方案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I
財 源 調 達	○ 第 1 號 被保險者： - 所得比例釀出 基礎年金釀出料와所得 比例釀出料를 합한 總釀出料가 現行 事業場加入者の 釀 出料 算定方式에 의거하여 算定됨. (단, 法定退職金制 度가 適用되지 않는 10 人未滿 事業場勤 勞者는 被傭者와 使 用者 半半 負擔) ○ 第 2 號 被保險者： - 定額釀出 定額水準：月3,600 원 - 月 4,380 원 사 이 (制度施行初期 5 年間) 月 10,800 원 - 13,000 원 사이 (制 度 施行 11 年 以 後)	○ 第 1 號 被保險者： 左 同 ○ 第 2 號 被保險者： - 定額釀出 (40 年 加入) 定額水準：月 1,500 원	○ 第 1 號 被保險者： 左 同 ○ 第 2 號 被保險者： - 定額釀出：第 1 號와 같음 - 所得比例釀出： 第 1 號와 같음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I
財 源 調 達	○ 第 3 號 被保險者： - 所得比例釀出 釀出料率은 現行 事業場 加入者와 同一. 단, 本人 全額負擔(基礎年金 釀出料와 附加年金 釀出料를 합한 것)	○ 第 3 號 被保險者： 左同	○ 第 3 號 被保險者： - 定額釀出：一定 所得以下 - 所得比例釀出：一定所得以上 - 經營移讓年金：「農漁業公社」全額負擔 ○ 第 4 號 被保險者： 일단 釀出料는 면제해주나 本人이 임의로 내는 釀出料에 대해서는 政府가 같은 金額의 釀出料를 補助해 준다. 단, 政府의 補助金과 本人의 釀出料를 합한 金額은 月 132,000 원 所得者가 내는 總 釀出料를 超過하지 못함. (無職期間中 免除)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
	○ 政府負擔： 現行法과 同一	○ 政府負擔： 免除對象者에 該當하는 基礎年金齏出料 總額의 1/2 을 負擔	○ 政府負擔： 第 4 號 被保險者의 基礎年金 齏出料 總額을 負擔(단, 被傭者인 경우, 使用者와 政府가 各 各 1/2씩 負擔

〈表 3〉 各 代案別 給與構造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I
給 與	○ 基礎年金(第 1,2,3 號 同一) - 基本年金額 = 1 人 最低生計費 × $1.5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240}$ - 加給年金額 配偶者: 基本年金額의 1/3 子女: 基本年金額의 1/3 父母: 基本年金額의 1/6	○ 基礎年金 - 基本年金額 = 1 人 最低生計費 × 1.0 × 總加入月數 / 480 (第 1,2,3 號 被保險者 同一) - 加給年金額 配偶者: 없음 子女: 基本年金額의 1/2 父母: 基本年金額의 1/4	○ 基礎年金 - 基本年金額 = 1 人 最低生計費 × $1.5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240}$ (모든 被保險者 同一) - 加給年金額 代案 I 과 同一
	○ 附加年金(第 1,3 號만 該當)	○ 附加年金: 左同	○ 附加年金 - 基本年金額(代案 I 과 同一)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I
給 與	- 基本年金額 = 2.4 (A + B) × 0.05 n - 基礎年金 의 基本年金額 (第 1,3 號의 被保 險者로서 加入했던 期間에 대한 基礎 年金의 基本年金額)		
	○ 老齡年金 : 基本年金額 + 加給年 金額	○ 老齡年金 : 左同 (단, 基礎年金은 40 年加入)	○ 老齡年金 : 代案 I 과 同一
	○ 減額老齡年金 : 加入期間에 따라 給 與가 결정되므로 減 額老齡年金 不必要	○ 減額老齡年金 : 加入期間에 따라 給與가 결정되므로 減額老齡年金 不 必要	○ 減額老齡年金 : 現行 法律 그대로 適用
	○ 在職者 老齡年金 : 現行 法律을 그대로 適用하되 加入期間 에 대한 需給資格要 件은 除外시킴.	○ 在職者 老齡年金 : 左同	○ 在職者 老齡年金 : 現行 法律을 그대 로 適用
	○ 朝期老齡年金 : 現行 法律을 그대로 適用하되 加入期間 에 대한 需給資格要 件은 除外시킴	○ 朝期老齡年金 : 左同	○ 朝期老齡年金 : 現行 法律을 그대 로 適用

	代 案 I	代 案 II	代 案 III
給 與	○ 障害年金：現行法 適用	○ 障害年金：現行法 適用	○ 障害年金：現行法 適用
	○ 遺族年金：現行法 適用	○ 遺族年金：現行法 適用 (단, 基礎年 金の 경우 加入期 間이 15 年以上이 있거나 30 年이 상이었거나로 고침)	○ 遺族年金：現行法 適用
	○ 特別年金：農業經營 移讓年金	○ 特別年金：農業經營 移讓年金	

(1) 加入者分類

1) 代案 I

加入者分類는 第1號 被保險者, 第2號 被保險者, 第3號 被保險者로 區分한다.

第1號 被保險者: 모든 被傭勤勞者 및 5人以上 事業場 使用者.

第2號 被保險者: 第1號 被保險者를 除外한 모든 自營者로서 基礎年金 制度에 釀出金을 負擔하는 사람들.

第3號 被保險者: 第2號 被保險者 중 一定所得水準을 넘어서 所得比例 年金制度에 釀出金을 負擔하는 사람들.

위와 같은 分類는 원칙적으로 就業者를 中心으로한 保險形態의 年金制度의 根本이된다. 이들은 모두 18歲 이상 60歲未滿이어야 한다. 現行 10人以上 事業場勤勞者가 使用主나 被傭者에 관계없이 모두 事業場加入者로 되는 것과, 醫療保險이나 產災保險에서 1988年부터 5人以上 事業場을 被保險者로 把握하고 있으므로 5人에서 9人사이에 事業場에 國民年金을 빠른 시일내에 擴大할 수 있는 與件이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5人

以上 事業場勤勞者는 使用者도 第1號 被保險者에 包含시킨다. 그 외 모든 被傭者는 事業場規模에 關係없이 第1號 被保險者로 設定하고, 臨時, 日傭賃金勤勞者도 第1號 被保險者가 하여 年金需給資格을 勤勞하는 동안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第2號 被保險者는 第1號 被保險者를 除外한 모든 自營者로서 基礎年金制度에 釀出金을 負擔하는 사람들이다. 第3號 被保險者는 第2號 被保險者중에서 一定所得水準을 넘어서 附加年金制度에 釀出金을 負擔하는 사람들이다. 이때 第3號 被保險者를 分類하는 基準이 되는 一定所得水準은 所得再分配의 역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給與公式에 適用되는 全體 事業場加入者의 月平均報酬를 의미한다.

2) 代案Ⅱ

加入者分類는 第1號 被保險者, 第2號 被保險者, 第3號 被保險者로 區分한다.

第1號 被保險者: 代案1 과 같다.

第2號 被保險者: 學生 및 第1號 被保險者를 除外한 18歲以上 60歲未滿의 모든 國民.

第3號 被保險者: 第2號 被保險者 중 一定所得水準 以上되는 者

위와 같은 分類는 就業者만이 아닌 全國民을 對象으로 個人單位의 基礎年金を 構成하는 根本이 된다. 第1號 被保險者는 代案1 과 같이 모든 被傭者와 5人以上 事業場의 使用主를 包含한다. 第2號 被保險者는 學生 및 第1號 被保險者를 除外한 18歲以上 60歲未滿의 모든 國民이다. 第3號 被保險者는 第2號 被保險者 중 一定所得水準 以上되는 者이다. (代案1의 一定所得水準과 같다.)

3) 代案Ⅲ

加入者는 第1號 被保險者, 第2號 被保險者, 第3號 被保險者, 第4號 被保險者로 分類한다.

第1號 被保險者: 4號를 제외한 모든 被傭勤勞者 및 5人以上 事業場 使用者로서 農業, 林業, 水產業, 鑛業에 從事하지 않는 자. 즉 第3號 被

被保險者로 適用되는 사람은 第1號 被保險者에서 除外된다. 여기서 使用者란 사람을 雇傭하여 給料을 支拂하는 者를 의미한다. 被傭者 역시 他人에게 雇傭되어 일하는 者를 의미한다.

第2號 被保險者: 第1,3,4號를 제외한 自營者. 이때 自營者는 他人을 雇傭하지 않고 單獨으로만 營利行爲를 하는 者이다.

第3號 被保險者: 農, 林, 魚業과 水産業에 從事하는 모든 被傭者 및 使用者, 그리고 自營者를 包含하며 第4號 被保險者는 除外된다.

第4號 被保險者: 一定所得 以下인 자로서 1988年 現在 保社部基準 最低生計費 月 44,000 원에다 平均 家族員 3名을 供給한 月 132,000 원을 一定所得 基準으로 한다.

(2) 加入의 强制性

1) 代案I

第1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2號 被保險者: 當然加入...自營者로서 一定所得 以上인자(所得基準은 事業場加入者의 最低等級인 月平均 7萬원으로 한다.)

任意加入...第1號 被保險者以外的 者로 第2號 被保險者의 當然加入要件이 안되지만 임의로 加入을 원하는 자.

第3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1號, 3號 被保險者는 社會保險의 危險分散效果를 極大化하고 社會的 統合을 위하여 當然加入을 시킨다. 第2號 被保險者는 自營者로서 事業者登錄證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당연가입시키는데 그럴 경우 第1號 被保險者에도 속하지 않고 第2號 被保險者에도 속하지 않는 自營者가 發生할 것이므로 그들을 위해 임의가입규정을 둔다.

2) 代案II

第1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2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3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2號 被保險者의 경우, 第1號 被保險者가 아닌 모든 國民이 그 對象이 되고 就業基準이 적용되어 除外되는 者가 發生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當然加入시킨다.

3) 代案Ⅲ

第1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2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3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4號 被保險者: 當然加入

第1,2,3,4號 被保險者는 世帶主가 되며, 世帶主가 아닌 家族員 가운데 就業者는 임의로 選擇하여 年金에 加入할 수 있다.

(3) 擴大段階

代案Ⅰ, Ⅱ, Ⅲ 모두 우선적으로 5人에서 9人사이의 事業場加入者로 當然加入을 擴大하여 第1號 被保險者를 確保한 다음, 第2號, 3號 被保險者에 대하여(代案Ⅲ의 경우는 第4號 被保險者에 대하여서도) 一律적으로 擴大한다.

(4) 財源調達

1) 基本時刻

年金制度의 財源調達 方式에는 加入者 本人, 使用者, 政府 等 釐出料負擔 主體間에 負擔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1者負擔, 2者負擔, 3者負擔으로 나뉘어지고, 釐出料 算定方式에 따라 定額制와 定率制로 나눌 수 있다. 또한 年金財源調達方式들은 年金給與 內容과 연계되어 具體的인 形態를 지니게 되는데, 擴大實施 代案의 給與構造가 加入者 모두에게 共通되는 基礎年金을 基本으로 報酬比例年金이 주어져도록 되어 있어, 財源調達 역시 이에 相應한 構造를 지니게 된다. 基礎年金과 報酬比例年金으로 나누어 各各의 財源調達方式을 政策代案別로 考察해 본다.

2) 基礎年金의 재원조달방식

가) 代案 1

가) 1號被保險者: 5人以上 事業場의 從事者와 그 外 모든 被傭者를 包含하는 1號被保險者들은 現行의 報酬比例制 및 釀出料率을 그대로 維持한다. 즉, 標準報酬月額을 基準으로 3%(1988-1992年), 6%(1993-1997年), 9%(1998年以後)의 釀出料率을 適用하여 求해지는 額數가 釀出料總額이며, 이 總額內에는 基礎年金額에 대한 釀出料와 報酬比例年金에 대한 釀出料가 함께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만 概念的으로만 總釀出金 중 일부는 基礎年金의 釀出金이며 나머지가 附加年金의 釀出金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擴大實施를 爲한 本 研究代案에서 1號被保險者의 경우 基礎年金 釀出金을 爲한 새로운 釀出이나 追加負擔은 없는 것이다.

釀出料負擔 主體間의 配分은 10人以上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 現行의 方式이 維持된다. 즉, 加入者 個人의 기여금, 使用者의 負擔金, 退職金轉換金으로 釀出金이 構成되며 이 3者間의 比率도 現行法과 같다.

法定退職金制度가 適用되지 않는 5-9人 事業場 加入者는 釀出料의 1/2을 加入者個人이 負擔하며, 1/2을 使用主가 負擔한다.

5人以上 事業場 加入者以外的 모든 被傭者들인 1號被保險者는 釀出料 負擔配分을 使用者와 被傭者間에 各各 1/2, 1/2씩 한다. 10人以上 事業場에 比하여 10人未滿 規模 就業場의 사용주부담 比率이 더 적은 까닭은 10人미만 規模 就業場 就業者의 사용주가 영세하며, 退職金에 대한 관행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5人미만 規模 就業場의 경우 被傭者는 17.6%에 불과하며, 自營業主와 無給家族 從事者가 차지하는 零細性을 보이고 있다.

〈表 4〉 1986年 5人未滿規模 就業場 就業者의 從事上 地位別 數

	非賃金勤勞者		賃金勤勞者	
	自營業主	無給家族從事者	상시고	일고
數	4,659	2,508	800	727
百分率	53.6	28.9	9.2	8.4

資料: 經濟企劃院, 雇傭構造特別調查 結果報告書, 1987.

나) 2號被保險者: 就業者 중 1號被保險者를 除外한 나머지 就業者들로 構成되는 2號被保險者の 재원조달과 관련된 가장 뚜렷한 特性은 이들 段層의 所得水準이 客觀的으로 把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個人所得水準에 대한 客觀的 資料는 1次的으로 租稅機關에서 구할 수 있겠는데, 조세자료에 의하면 自營者 中 71.1%가 非課稅 및 課稅未達者로 分類되고 있는 것이다. (地方財政年監 1987. 國稅統計年報 1987 年) 그외의 個人別 所得資料는 地域醫療保險組合이 被保險者 世代別로 把握한 所得과 財産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資料 역시 所得部門은 稅務資料에 의거한 것이며, 獨自的으로 所得把握을 한 것이 아니어서, 稅務資料에 대한 補完的 機能을 기대할 수 없다. 事實상 조세기관이 아닌 여타제도의 施行機關이 個人別 所得水準을 조세기관보다 더 精確히 把握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비조세기관에서 과도히 個人的 所得把握을 하려고 하면 頑強한 저항을 야기하며, 目的하는 制度自體의 施行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따라서 稅務資料에 의한 所得水準 把握率이 저조한 2號被保險者들에 對해 附加年金 釀出制를 適用하려면, 租稅行政의 革新的인 개혁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租稅把握率이 어느 水準以上 높아질 때 까지는 所得水準에 무관한 定額釀出制의 適用이 不可避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지에서 2號 被保險者の 基礎年金 釀出金은 定額制로 設計되어졌다. 定額制로 할 경우 그 水準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定額으로 주어지는 基礎年金額의 어느 程度를 現世帶가 負擔하며, 나머지는 次世帶가 負擔할 것인지를 定하는 世帶間 負擔配分比率에 依하여 決定되어 진다.

世帶間 配分比率를 決定함에 있어서 考慮할 事項은 現行 事業場 加入者들의 給與收益率 (年金受給總額 / 加入期間中釀出總額) 과의 形평문제이다. 現行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 給與收益率은 標準報酬月額의 等級에 따라 대략 1.63-8.69 를 시현한다.³⁾ 그러나 현재 3.6,9%의 段階的 인상을 考

3) 給與收益率을 計算하는 方法에 대해서는 박능후, “國民年金制度의 給與構造分析,” 人口保健論集, 第8卷, 1988을 參照

慮하지 않고 制度가 9%로 성숙되었을 때의 報酬等級間 給與收益率을 比較하면 대략 1.21-6.48 이 된다. 따라서 2號加入者の 경우에도 이 範圍를 參考하여 給與收益率이 決定되어져야 할 것이다. 特히 制度가 성숙하였을 때, 즉 釀出料率이 9%로 계속 維持되는 것을 가정하여 給與收益率이 決定되어져야 한다.

第2號 被保險者의 定額釀出料를 算定하는데 基礎가 될 수 있는 給與收益率은 크게 네 가지로 區分된다. 첫째, 世代間 負擔配分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定額釀出料를 算定하여 給與收益率이 1이되게 하는 方法과 둘째, 現在 事業場加入者 중에서 가장 낮은 收益率을 適用하는 方法, 셋째, 現在 事業場加入者의 平均收益率을 適用하는 方法과 넷째, 20年 年金加入後 같은 給與額을 받는 事業場加入者의 給與收益率을 適用하는 方法이다. 이 중 採擇하는 給與收益率에 따라 年金의 財政狀態가 影響을 받게 되고 第2號 被保險者와 第1,3號 被保險者間의 형평문제가 發生하기 때문에 어떠한 給與收益率을 定해야 하는지는 이 두가지 변수, 즉 年金의 財政狀態와 다른 被保險者間의 形평문제를 基準으로 採擇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方法에서 넷째 方法으로 갈수록 年金財政의 減少速度는 빠르다. 그리고 第2號 被保險者가 第1號 被保險者보다 給與收益率 이 높아 一般的으로 有利하게 되며, 그 반대방향으로는 第2號 被保險者 가 第1,3號 被保險者보다 一般的으로 不利하게 된다.

첫째 方法으로 世代間 負擔配分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즉, 給與收益率을 1이 되게하는 경우, 20年 加入者가 1988年度 2人의 最低生活費 88,000원⁴⁾에 해당하는 基礎年金을 12年間 受給받고 그 後 배우자가 유족 年금을 7年間 받으려면, 대략 月平均 12,000 원을 釀出金으로 納付해야 한다. 12,000 원의 도출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단, 加入期間 중 賃金 上昇率에 의거하여 行해지는 再評價率을 適用하지 않았음)

4) 보사부에서 發表한 1人 最低生計費 44,000 원을 適用함, 保健社會部, '88 主要業務資料, 1988. p. 31

ACA: 釀出金年額 (Annual Contribution Amount)

i : 年利子率

ABPA: 基礎年金年額 (Annual Basic Pension Amount)

RR : 給與收益率 (Rate of Return)

$$(RR) \times \sum_{i=1}^{t=20} ACA_i \cdot \prod_{j=i}^{j=20} (1+i_j) = ABPA_1 + \sum_{i=1}^{t=11} ABPA_i / \prod_{j=1}^{j=i} (1+i_j) \\ + (0.6) \sum_{i=12}^{t=18} ABPA_i / \prod_{j=1}^{j=i} (1+i_j)$$

여기서 ACA가 매년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i = 0.1

RR = 1

BPA = 88,000 원이라면,

ACA = 142,790 원

그러므로 釀出金月額は $ACA/12 = 11,899$ 원, 대략 12,000 원이 된다. 따라서 月 12,000 원씩을 20年間 定額 釀出した後, 12年間 基礎年金을 受給받고 그後 遺族年金으로 7年間 受給받으면 世代間 이전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現行 事業場 加入者の 경우 月釀出料 12,000 원을 負擔하는 標準報酬等級은 (釀出料率 9%를 적용) 7等級으로서 130,000 원이다. 이들은 20年 가입된 最終報酬에 대한 임금 대체율이 72%로서 대략 월 199,248 원의 年金을 받게 되며, 給與收益率が 6.27로서 2號被保險者보다 매우 유리하다. 給與收益率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事業場加入者の 경우 釀出料率을 段階的으로 인상작용하기 때문인데, 제도가 성숙하여 釀出料率을 처음부터 9%씩 낸다면 給與收益率は 4.67이 된다. 만약 2號被保險者에 대해서도 制度施行初期 5年間은 12,000 원의 1/3인 4,000 원, 다음 5

年間은 2/3人 8,000 원, 그 다음부터 12,000 원을 釀出하고, 給與額은 月 88,000 원을 維持한다면, 給與收益率이 1.6 으로 向上되지만 事業場 加入者보다는 여전히 不利하다.

둘째 方法으로 現行 事業場加入者中에서 가장 낮은 給與收益率을 받는 者の 收益率을 適用하여 第2號 被保險者의 定額釀出料水準을 決定할 수 있다. 年金釀出料率이 9%로 성숙하였을 때 最低收益率을 나타내는 等級은 現行 53等級의 標準報酬月額者로서 그 收益率이 1.21 이 된다. 이 率을 첫째 方法의 釀出料 求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매월 釀出料가 9,834 원이 된다.

세째 方法으로 現行 事業場加入者의 平均收益率(各 等級 收益率의 平均値)을 대입하여 定額釀出料를 求할 수 있다. 이 때의 收益率은 2.73으로서 이것을 공식에 대입하면 매월 釀出料가 4,359 원이 된다.

네째 方法으로 만약, 最低生活費의 給與額을 維持하면서 2號被保險者의 給與收益率을 事業場 加入者와 같게 하려면 年金加入 20年 뒤인 2008 年에 1988 年度 生活水準으로 月 88,000 원의 年金額을 受給받게 될 事業場加入者의 釀出金으로 定하면 된다. 그러나 現 事業場加入中에서 20 年後에 1988 년도 生活水準으로 月 88,000 원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事業場加入者들은 過去實質所得: 水準維持를 위하여 賃金上昇率을 勘案하여 受給算定の 基礎가 되는 標準報酬月額의 平均額과 平均報酬月額을 計算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신 年金受給月額이 가장 적은 最低等級 事業場加入者를 比較對象으로 한다면, 1988 年 最低等級으로서 月 標準報酬가 70,000 원인 者가 이에 該當한다. 이 者는 20 年後에 最終月報酬인 159,399 원을 다 받게 된다. 이 者의 給與收益率은 6.48이다. 그러나 이 給與收益率을 대입하여 月釀出料를 구한다면 年金財政은 매우 빠른 速度로 쇠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給與收益率이 6.48 이므로 現世帶와 次世帶의 分擔配分이 1:5.48로 이뤄져, 財政에 對한 負擔이 과중한 것이다. 이것은 現行 國民年金制度의 給與構造가 所得階層間 再分配를 위해 低所得層일수록 收益率이 커지도록 設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號被保險者의 경우, 대부분이

所得把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所得水準이 제대로 把握된 경우에도 다양한 所得水準에 속하는 者들이 모두 한等級으로 包含되므로, 現行 事業場加入者에 比하여 所得에 대한 釀出料負擔比率이 낮은 層이 다수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實報酬에 比例하여 釀出料를 納付하는 事業場加入者의 最低等級 70,000 원 所得者에게 適用된 世代間 負擔配分 比率을 2號被保險者에게 適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보다 작은 配分比率이 適用되어야 한다.

따라서 네번째 給與收益率을 除外한 위의 첫 세가지 給與收益率을 適用하여 算定된 第2號 被保險者의 定額釀出料는 表 5 와 같다. 定額釀出料水準을 決定하는 要因은 給與收益率外에도 釀出料 納入期間이 있으므로 釀出料 納入期間을 20 年, 40 年으로 하여 釀出料水準의 高低를 比較할 수 있다.

〈 表 5 〉 給與收益率 및 釀出料 納付期間에 따른 第2號 被保險者의 定額釀出料

給 與 收 益 率				
釀納 出 付 年 料 數		1.00	1.21	2.73
	20	12,000 원	9,834 원	4,359 원
	40	1,540 원	1,273 원	564 원

위의 세가지 給與收益率中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第1號 被保險者와 第2號 被保險者와의 形평을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表에 따라 第2號 被保險者의 定額釀出金水準을 정해보면, 加入期間이 20 年인 것으로 고려할 때 第2號 被保險者의 釀出料는 現 事業場加入者의 最低收益率(1.21)과 平均收益率(2.73)을 상한, 하한으로 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事業場加入者가 收入의 高低에 관계없이 본인이 낸 釀出金總額보다 받아가는 年金受給額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러한 혜택을 第2號 被保險者에게도 주어야 하므로 給與收益率이 1 인 것을 適用할 수 없고 - 만약 第2號 被保險者에게 給與收益率이 1 인 것을 適用한다면 第2號 被保險者의 釀出料로 第1號 被保險者 給與를 보조해주는 結果가 될 것이다. —,

둘째, 現在 最低等級에 屬하는 事業場 加入者의 收益率을 실제 所得이 70,000 원인 사람을 對象으로 所得再分配의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인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실제 所得이 75,000 원 以下인 者가 1.2 % (10 人. 未滿 事業場의 상용임금근자의 경우) - 12.4 % (農民自營者의 경우로서 現金 所得만을 基準으로 했을 때) 밖에 되지 않는⁵⁾ 狀態에서 그 外의 모든 者 에게도 事業場加入者의 最低等級에 屬하는 最高의 給與收益率을 適用한다면 事業場加入者와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2號 被保險者의 釀出料는 給與收益率이 1.21 인 月 9,834 원 을 상한으로 하여 平均給與收益率이 適用된 月 4,359 원이 하한인 이 範圍에서 決定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施行初期 5 年間은 1/3, 그 다음 5 年間은 2/3, 그후부터 1 을 負擔시킨다면, 各各 1,453-3,278 원, 2,906-6,556 원, 4,359-9,834 원이 된다.

다만 釀出料率이 9 %일때 第1,3號 被保險者는 第2號 被保險者에 比해 賃金上昇率의 適用으로 因하여 20 年後 받는 給與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納付하는 基礎年金+所得比例釀出金이 第2號 被保險者가 내는 基礎年金 釀出金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면 第1,3號와 第2號間에 形평의 問題가 發生한다. 따라서 事業場 加入者 중 最低等級의 70,000 원 月報酬者가 納付하는 釀出料 6,300 원 (9 %일 경우) 보다 높게 第2號 被保險者의 釀出料가 測定되면 안될 것이다.

設定된 第2號 被保險者의 釀出料는 年金受給權者의 給與測面에서 物價 상승으로 因한 最低生計比의 인상을 充當하기 위하여 物價上昇率만큼 인상 되어야 한다.

다) 3號 被保險者

3號 被保險者는 2號 被保險者 중 客觀的로 把握되는 所得이 一定水準 以上の 所得者이다. 따라서 3號被保險者는 1號 被保險者와 同一하게 所得比例에 의한 釀出金を 負擔하도록 設計되었으며 釀出料率과 제도시행

5) 表 5 - 2 를 參照

初期의 낮은 釀出料率 적용 등도 1號 被保險者와 같다. 그리고 2號 被保險者 중 所得이 一定 水準을 넘어 3號 被保險者로 分類되면, 全體 釀出料算定이 所得比例制로 바뀌고, 總 釀出料의 一部가 基礎年金의 釀出料로 觀念지어지는 것도 1號 被保險者와 같다.

3號 被保險者의 釀出料 賦課에 있어서 어떤 範圍의 所得까지를 賦課基準으로 삼느냐가 問題된다. 現行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 노무의 댓가로支給받는 모든 금품(國民年金法 3條 1項 3號)을 釀出料算定 基準로 삼고 있음을 勘案하면, 自營者로 構成된 3號 被保險者의 釀出金도 노무로 인한 所得을 그 基準으로 잡는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 예로서 農民의 경우에는 農業所得과 兼業所得이 이에 該當되며, 非農民 自營者의 경우 事業所得이 이에 該當된다. 2號와 3號 被保險者를 구분짓는 一定 所得水準은 2號 被保險者와 3號 被保險者間에 年金額의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同時에 可能한 많은 數의 2號 被保險者를 3號 被保險者로 수용할 수 있는 水準에서 決定되어야 한다.

라) 政府負擔

就業者만을 擴大適用 對象으로 삼고 있고, 2號 被保險者 중 一定所得以下者는 임의가입하도록 設計된 代案 1의 경우 釀出金에 대한 政府負擔은 없다. 이것은 임의가입자에 비해 相對적으로 高所得層인 加入者에 對해 政府가 釀出金의 一部를 負擔해 주게 되면 所得再分配가 역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의가입 狀態로 남은 低所得層의 將來所得保障이 問題時 된다. 釀出料負擔能力이 없는 低所得層에게 釀出料負擔을 강요하는 保險方式에 의하여 所得保障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부조 방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點과 將來의 低所得階層에 대한 所得保障은 將來의 政府와 現在의 政府가 비용을 分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點을 考慮하면 임의가입자로 分類된 低所得者가 加入하게 되면 釀出料의 절반을 國庫負擔하는 방식도 考慮될 수 있겠다

나) 代案Ⅱ

가) 1號被保險者

代案 1의 1號被保險者 재원조달 方式과 同一

나) 2號被保險者

18歲以上 60歲未滿의 國民 중 1號被保險者를 除外한 모든 國民을 包含하는 2號被保險者의 基礎年金 釀出料은 定額制로 設計되었다. 定額의 水準은 1人의 釀出料가 1人의 最低生計費를 充當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代案 1의 2號被保險者 釀出金은 배우자를 考慮하여 加入者 1人當 2人 몫의 最低生活費를 基礎年金으로 給與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全國民이 年金에 當然加入되는 代案 2의 경우 加入者 1人當 몫의 最低生活費에 該當하는 給與의 釀出金만 負擔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定額釀出金額은 加入期間을 40年으로 할 경우 앞의 表 5를 參考로 하여 給與收益率이 1일때 대략 月 1,500 원이 된다.

1號被保險者의 배우자인 2號被保險者의 釀出金은 1/2을 1號被保險者의 使用者가 追加負擔하며, 나머지 1/2은 1號被保險者가 負擔하도록 한다. 1號被保險者의 배우자를 除外한 나머지 2號被保險者들은 釀出料의 全額을 本人이 負擔한다. 이 경우 當然加入되었으나 保險料 納付能力이 없는 2號被保險者에 대해서는 保險料 納付義務를 면해주는 면제제도를 둔다. 면제제도는 법정면제와 申請면제로 區分되는데, 法定免除은 一定要件을 갖춘 자로서 要件이 確因되면 保險料 納付義務가 當然免除되는 것이다. 그 要件으로서 生活保獲對象者 및 그 家族構成員, 所得活動이 없는 장애인 등이 예견된다. 申請면제는 所得은 있으나 그 水準이 매우 낮아 保險料 納付가 힘들거나, 실업으로 인한 所得活動의 중단 등의 경우에 加入者 本人의 申請과 關聯機關의 審査에 의하여 保險料 納付義務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申請면제의 대체적인 基準은 現行 의료부조대상에 準하는 低所得 水準이며, 關聯機關에서 매년 그 水準을 고시하도록 한다.

다) 3號被保險者

代案Ⅰ의 3號被保險者와 재원조달 방식이 同一하다.

라) 政府負擔

加入者 중 면제대상자의 數에 該當하는 定額釀出料 總額의 1/2을 政府가 負擔하도록 한다. 여기서 釀出金의 1/2을 政府가 負擔하는 취지는 將來의 低所得層에게 支給될 年金給與費의 절반을 現行 政府가 負擔한다는 것이다.

대 代案Ⅲ

가) 第1,2,3,4號 被保險者

第1號, 2號 被保險者の 定額釀出額은 代案Ⅱ의 것과 同一하다. 第3號 被保險者는 一定所得以下の 경우는 定額釀出하고 一定所得以上이면 所得比例 釀出한다. 第4號의 경우 농업경영이양 年金은 「農魚業公社」에서 지불한다. 第4號 被保險者는 零細民임이 確認될 경우 釀出金이 면제되며, 加入期間 중 加入者가 원하면 임의로 釀出金を 納付할 수 있다.

나) 政府負擔

國民年金의 運營費를 補助하는 것 외에도 第4號 被保險者가 임의로 釀出金を 納付할 때에는 國家가 동액의 釀出金(matching fund)을 補助해주되, 總釀出金의 合計는 月 132,000 원의 所得者가 내는 定額釀出金を 초과할 수 없다.

3) 附加年金의 財源調達 方式

(가) 代案Ⅰ과 代案Ⅱ

附加年金은 1號, 3號被保險者에게만 適用되는 것인데, 代案Ⅰ, 2 간에 差異가 없다. 1號 및 2號被保險者의 財源調達方式은 現行 事業場 加入者의 報酬比例釀出方式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概念的으로만 總釀出金

中 일부는 기초연금의 釀出金이며, 나머지가 附加年金의 釀出金으로 構成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附加年金의 釀出料를 위한 獨立된 釀出金이나 釀出算式이 필요치 않다. 즉, 앞서 基礎年金의 財源調達方式에서 言及된 1, 3 號被保險者의 報酬 및 所得比例釀出金이 附加年金의 釀出金까지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나) 代案Ⅲ

第1, 2 號는 代案1 과 같다. 第1 號 農漁民中 一定所得以上인 者만 所得比例 釀出義務를 지게 되고, 所得比例釀出額도 現行方式에 따른다.

(4) 給 與

1) 基礎年金

(가) 代案Ⅰ

모든 被保險者에 해당하는 基礎年金의 基本年金은 最低生計費를 基準하여 정하되, 世帶主單位의 年金이므로 配偶者의 最低生計費를 考慮하여 最低生計費의 1.5 倍에 해당하는 額數로 한다. 基本年金을 最低生計費의 1.5 倍에 該當하는 額數로 한 이유는 世帶主單位의 年金일 때 配偶者가 年金受給權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을 고려하여 가급연금 0.5 倍를 합하여 夫婦의 最低生計가 保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夫婦 모두 年金受給權이 있을 경우는 配偶者 加給年金을 支給하지 않고 각각 最低生計費의 1.5 倍씩을 받으므로 夫婦중에 한 쪽만 일을 해왔던 경우보다 1.5 倍 유리하다.

$$\text{基礎年金額의 基本年金額} = 1 \text{ 人 最低生計費} \times 1.5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240}$$

基礎年金額의 基本年金額을 計算할 때는 20 年을 加入한 사람이 1 人 最低生計費의 1.5 倍되는 給與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加入月數에 따라 給與額이 比例하도록 만든다. 이때 總加入月數는 年金에 加入한 總月數로서 각 被保險者間의 身分移動에 상관없이 被保險者로서의 모든 加入期間

을 합한 月數이다.

(나) 代案Ⅱ

모든 被保險者에 該當하는 基礎年金의 基本年金은 最低生計費와 같은 額數로 定한다. 이때의 給與公式은 다음과 같다.

$$\text{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 1 \text{ 人 最低生計費}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480}$$

이것은 釀出金을 매월 40年間 納付했을 때를 前提한다. 延遲기간에 대해서는 100 % 인정해 주기로 한다. 이것은 차후세대의 政府가 低所得層에 대한 最低生計費의 50 %는 부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現政府가 免制期間에 대한 釀出金의 50 %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차후세대의 政府의 부담은 50 %로 준다.

(다) 代案Ⅲ

代案Ⅰ과 같다. 第1, 2, 3, 4號 被保險者에게 모두 공통된 定額給與를 준다.

2) 附加年金

(가) 代案Ⅰ, Ⅱ, Ⅲ

附加年金은 第1, 3號 被保險者에게만 該當한다. 附加年金의 給與方式은 代案Ⅰ과 代案Ⅱ의 방식이 同一하다.

第1, 3號 被保險者의 附加年金 給與額은 다음 給與公式에 의하여 算定된다.

$$\text{附加年金額} = 2.4(A+B) \times 0.05n - \text{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基本年金額)

n = 第1, 3號 被保險者로서의 加入期間

A = 年金受給前年度の 平均報酬月額

B = 加入者 個人の 加入期間 中 標準報酬月額の 平均額

즉, 20年을 基準으로 할 때 現行 事業場加入者의 給與公式에 의한 것과 同一한 給額을 받으며, 20年초과하는 年數마다 5 %씩 給與額이 늘어

난다. 附加年金總額은 所得比例部分인 $2.4(A+B) \times 0.05n$ 에서 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을 제한 것인데 이때 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은 第1, 3號 被保險者로서 加入한 期間에 대한 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을 의미한다.

단, 第1號 被保險者의 附加年金額이 基礎年金額보다 적을 때는 基礎年金額을 支給하여 最小年金制를 導入한다. 最小年金制란 年金加入者 누구나 最低生計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 金額을 받는 것을 意味한다.

結果的으로 第1號 被保險者나 第3號 被保險者 모두 基礎年金額과 附加年金額을 합하면 같은 所得의 現行 事業場加入者가 받는 給與額과 같은 年金額을 받게 되므로 基礎年金額과 附加年金額을 따로 計算할 필요가 없이 平均報酬月額, 또는 平均所得月額에 대한 現行 事業場加入者의 給與公式를 그대로 適用하면 基礎年金額과 附加年金額을 합한 年金額이 된다.

〈例示1〉 平均報酬月額이 300,000 원인 第1號 被保險者의 總基本年金額의 計算(代案Ⅰ에서는 20年加入, 代案Ⅱ에서는 40年加入을 前提로 함.)

* 代案Ⅰ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5 倍에 該當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2.4(A+300,000)$ - 基礎年金額

總年金額= $2.4(A+300,000)$

* 代案Ⅱ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 倍에 해당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2.4(A+300,000)$ - 基礎年金額

總年金額= $2.4(A+300,000)$

〈例示2〉 平均所得月額이 200,000 원인 第2號 被保險者의 總基本年金額의 計算(代案Ⅰ에서는 20年加入, 代案Ⅱ에서는 40年加入을 전제로 함.)

* 代案Ⅰ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5 倍에 該當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0

總年金額=基礎年金額

* 代案Ⅱ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 倍에 該當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0

總年金額=基礎年金額

〈例示3〉 平均所得月額이 300,000 원인 第3號 被保險者의 總基本年金額의 計算(代案Ⅰ에서는 20年加入, 代案Ⅱ에서는 40年加入을 전제로 함.)

* 代案Ⅰ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5 倍에 該當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2.4(A + 300,000) - \text{基礎年金額}$

總年金額= $2.4(A + 300,000)$

* 代案Ⅱ

基礎年金額=最低生計水準의 1 倍에 該當하는 額數

附加年金額= $2.4(A + 300,000) - \text{基礎年金額}$

總年金額= $2.4(A + 300,000)$

〈例示4〉 平均所得月額이 20 만원으로 25年間 第2號 被保險者로 있었다가 平均報酬月額이 30 만원으로 15年間 第1號 被保險者로 있었던 자의 總基本年金額의 計算

* 代案Ⅰ

基礎年金額 = 最低生計費 $\times 1.5 \times 480/240$

附加年金額 = $2.4(A + 300,000) \times 0.05 \times 15 - \{ \text{基礎年金額} \times (180/240) \}$

總年金額 = $2.4(A + 300,000) \times 0.05 \times 15 + \text{基礎年金額} \times 300/240$

* 代案Ⅱ

基礎年金額 = 最低生計費 $\times 480/480$

附加年金額 = $2.4(A + 300,000) \times 0.05 \times 15 - \{ \text{基礎年金額} \times (180/480) \}$

總年金額 = $2.4(A + 300,000) \times 0.05 \times 15 + \text{基礎年金額} \times 300/480$

(나) 代案Ⅲ

基礎年金額 = 代案Ⅱ와 같다.

附加年金額 = $2.4(A + 300,000) \times 0.725^*$

* 減額老齡年金受給加重値

3) 給與種類

給與種類는 現 國民年金의 給與와 共通되게 完全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早期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으로 하고, 現在 있는 반환일시금제 도는 强制加入 및 위험분산의 極大化를 성취하고자 하는 社會保險의 目的에 위배되므로 削除한다. 이외에 特別年金으로 農業經營移讓年金을 新設할 수 있다. 이들 年金額은 基本年金額에 基礎하여 算定된다.

(가) 基本年金額

모든 年金額의 算定에 基礎가 되는 것은 基本年金額인데 各 基礎年金과 附加年金의 基本年金額은 다음과 같다.

가) 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 代案Ⅰ

$$\text{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 1 \text{ 人 最低生計費} \times 1.5 \text{ 倍}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240}$$

* 代案Ⅱ

$$\text{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 1 \text{ 人 最低生計費} \times 1 \text{ 倍} \times \frac{\text{總加入月數}}{480}$$

나) 附加年金의 基本年金額

* 代案Ⅰ, Ⅱ, Ⅲ

$$\text{附加年金의 基本年金額} = 2.4(A+B) \times 0.05n - \text{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

A : 年金受給前年度 第1號 被保險者 全體의 平均賃金

B : 年金受給前年度 本人의 平均報酬月額 또는 平均所得
月額

n : 年金加入年數

* 代案Ⅲ

$$\text{附加年金의 基本年金額} = 2.4(A+B)(1+0.05n)$$

A, B는 代案Ⅰ, Ⅱ와 同一하고 n은 20年을 초과한 年金加入年數이다.

(나) 가급연금액

現行 國民年金法에서 가급연금액을 탈 수 있는 基準을 그대로 適用하여
그러한 基準에 該當되는 者에게 가급연금액을 支給한다.

* 代案Ⅰ

가급연금액으로는 對象別로 다음과 같다.

配偶者 : 基礎年金 基本年金額의 1/3

18歲未滿의 子女 또는 障害等級 2級이상에 該當하는 子女 : 基礎年金 基本年金額의 1/3 (단, 年金受給者 除外)

60 歲以上 또는 障害等級 2 級以上에 該當하는 夫母 : 1 人當 基礎年金 基本年金額의 1/6 (단, 年金受給者 除外)

* 代案Ⅱ

配偶者 : 가급연금액은 없다.

그외 : 子女－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의 1/2

父母－1 人當 基礎年金의 基本年金額의 1/4

* 代案Ⅲ

代案Ⅰ 과 같다.

(다) 老齡年金

老齡年金額은 基本年金額과 가급연금액을 합한 額으로 한다.

(라) 減額老齡年金

* 代案Ⅰ, Ⅱ

加入期間에 따라 給與額이 決定되므로 減額年金이 따로 필요치 않다.

* 代案Ⅲ

現行 法律을 따른다.

(마) 在職者老齡年金과 早期老齡年金

第 1 號, 第 2 號, 第 3 號 被保險者 모두에 대해 現行法을 그대로 適用한다. 단, 代案Ⅰ, Ⅱ에서 加入期間은 制限을 除去한다. 代案Ⅲ에서는 現行法律을 그대로 適用한다.

(바) 障害年金

現行法律을 그대로 適用한다.

(사) 遺族年金

現行 法律을 그대로 適用한다.

단, 代案Ⅱ에 基礎年金의 경우는 遺族年金受給要件 중 加入期間이 15 年以上인 被保險者였던 자를 30 年이상인 被保險者였던 자로 한다.

(아) 特別年金

* 代案 I, II

農業生産性向上을 위한 農業構造改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獨逸, 프랑스, 日本에서 시도되고 있는 經營移讓年金을 新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獨逸, 프랑스, 日本에서 經營이양농지의 대부분이 後繼자에게 農地를 賃貸하는 式으로 나타남으로써 農業經營主의 연소화 및 農地規模의 加勢적 效果가 實地적으로 農業生産性의 向上에 미친 效果가 明確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인 실시를 통하여 效果가 證明된 後 全國적으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傳達體系

1) 對象管理

(1) 代案 I

第1號 被保險者는 擴大段階에서 두 段階로 나누어 진다. 처음에는 5人에서 9人사이 事業場勤勞者를 當然適用對象으로 하는데 이때 使用者와 被傭者를 다 포괄한다. 이 段階는 現在 醫療保險과 產災保險이 5人以上 事業場加入者를 對象으로 하여 5人以上 事業場이 이미 把握되어 있는 狀態이므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對象을 管理할 수 있다. 그 다음 段階로는 5人未滿의 事業場勤勞者인데 이때 使用者는 第2號 被保險者로 分類되고 상용 및 臨時·일용피용자가 第1號 被保險者로 加入된다. 이때 피용자는 年金에 加入하면 使用者가 釀出金의 50%를 負擔하는 惠澤을 받게 되므로 자신의 法的 年金加入權에 대한 認識을 높여 5人未滿 使用者의 자발적 신고와 皮用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이때 어떠한 理由에서든지 皮用자이면서 第1號 被保險者에서 除外되는 사람은 第2號 任意加入被保險者로 포용하도록 한다.

第2號 被保險者로는 課稅資料를 基礎로하여 기초공제가 되지 않은채로의 綜合所得課稅標準額이 現事業場加入者의 最低等級인 月平均 70,000 以上되는 者를 當연가입시킨다.

第3號 被保險者는 第2號 被保險者 중에서 과세자료상 勤勞에 대한 댓가로 얻은 신고소득액이 一定水準以上 되는 者를 當然加入시킨다. 여기서 一定所得水準은 所得再分配의 역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前年度 全體 事業場加入者 平均報酬月額을 適用하도록 한다.

(2) 代案Ⅱ

第1號, 3號 被保險者에 대한 管理는 代案Ⅰ과 같다.

第2號 被保險者는 18歲以上 60歲未滿 모든 國民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基準으로 該當하는 모든 國民을 當然加入시킨다.

(3) 代案Ⅲ

第1號, 2號, 3號, 4號 被保險者는 우선 住民登錄登本을 基礎로 하여 選拔된 모든 世帶主를 對象으로 한다. 이 世帶主들은 本人 스스로 자신의 職業 및 經濟活動上의 지위(僱用자인지, 사용자인지, 아니면 自營者인지의 與否)를 밝히며, 그를 基礎로 被保險者의 種類를 分別한다. 이때, 租稅機關의 所得資料를 基礎로 第4號 被保險者를 區分해 낸다.

2) 관리기구

第1號 被保險者, 第2號, 3號 被保險者는 (代案Ⅲ의 경우 第4號 被保險者까지) 모두 統合하여 同一機關에서 管理하는 一元體系를 갖춘다. 그 理由는 위험분산을 극대화하며, 第1號, 第2號, 第3號 被保險者間의 연대의식을 提考하고, 또한 第2號, 第3號를 따로 分離할 시 工業化和 都市化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그 집단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財政不安定을 미리 補完하려는 것에 있다.

第1號, 第2號, 第3號 被保險者間의 (代案Ⅲ의 경우 第4號 被保險者까지) 統合뿐만 아니라 他社會保險管理機構와의 統合與否도 全國民에게 國民年金을 當然適用할 때 대두될 問題이다. 代案Ⅰ, Ⅱ, Ⅲ 중 어떠한 代案을 택 하던지 간에 現行 醫療保險組合과 國民年金管理公團의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論議가 發生할 것이다. 그 理由는 비슷한 對象에 대해서 所得을 把握하고, 釀出金を 걷으며, 給與를 支給하는 일이 두 機關

에서 중복되게 遂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全國民에게 年金을 擴大할 때, 國民年金管理公團으로 하여금 年金加入者와 직접 接觸하게 되는 하부기관을 새로 따로 設立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醫療保險組合을 利用하여 上部構造는 따로 있지만 서로 協同하여 情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構成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現在 醫療保險組合과 統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그에 따른 國民的 合意가 있어야 한다.

醫療保險組合과의 統合은 管理機構 側面에서 情報의 자유로운 교환과 給與重複에 대한 손쉬운 調整, 重複된 業務의 간소화의 長點과 加入者側面에서 接觸해야 될 機關의 單一化로 인한 接近容易도가 높아질 長點이 있으나 現行 醫療保險組合의 獨立性에 의해 業務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醫療保險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인 態度를 그대로 年金에 대해 轉移시킬 수 있는 短點이 있다. 반면, 醫療保險組合과의 分離는 年金에 대한 독특한 特性을 醫療保險과 連結시키지 않고 加入者에게 傳達할 수 있고, 年金 특유의 釀出料賦課基準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基準을 設定하기가 용이한 長點이 있는 반면, 加入者の 接近容易度の 減少, 醫療保險과 중복된 業務遂行, 情報에 대한 制限된 交換과 給與重複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短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方法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에 반영될 이외의 側面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論議는 충분한 時間을 거쳐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부 록 Ⅱ —

전국민 연금확대방안 기초조사 조사표

- 비농가조사표
- 농 가 조 사 표

경제기획원통계국 : 340-21-08
승인번호

조사구번호				지역및거처번호				가구번호			
							-				

전국민 연금확대방안 기초조사

(비농가 조사표)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 군) _____동(읍, 면) _____리 _____번지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가구주 성명: _____

가구주: _____시(도) _____구(시, 군) _____동(읍, 면) _____리 _____번지
 근무처: _____

근무처 전화번호: _____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제 1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1. ____ 완료 2. ____ 부분미완 3. ____ 가구주부재 4. ____ 응답거부
제 2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1. ____ 완료 2. ____ 부분미완 3. ____ 가구주부재 4. ____ 응답거부
제 3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1. ____ 완료 2. ____ 부분미완 3. ____ 가구주부재 4. ____ 응답거부

1988 년

보 건 사 회 부

한 국 인 구 보 건 연 구 원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는 생계책임을 지고 지출에 대해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분을 가구주로 정의하고 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필히 가구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주 및 가족의 기본사항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_____ 남 ② _____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3.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① _____ 유배우자 ② _____ 배우자사별 ③ _____ 이혼 ④ _____ 미혼

4.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_____ 무학

② _____ 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③ _____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④ _____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⑤ _____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⑥ _____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

5. 가족사항 (이 문항에서의 가족은 가구주 및 가구주와 1년에 3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만을 포함합니다)

가족부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직업 유무 여부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며느리/사위 6. 손자/손녀 7. 형제	만 나이를 말씀해 주 십시오.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 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무직) 3. 기타 (가구주의 사업을 봉급 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 는 경우)
01	1. 가구주		
02			
03			
04			
05			
06			
07			
08			
09			
10			

6. 선생님께서는 현재 군지역 (시, 군 할때의 군)에서 사십니까?

① _____ 예 (* 7 번으로 가시오)

② _____ 아니오

- 6-1. 아니라면, 전에 군지역에서 사신적이 있습니까?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7 번으로 가시오)

- 6-2. 사신적이 있다면, 군지역에서 총 몇년간 사셨습니까? 총 _____ 년

7. 선생님께서는 전에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한 급료를 받으면서 1년에 3 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1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10인 이상인 사업체란 지사에서 일했던 경우 본사 및 다른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총 일하는 사람수가 10인 이상인 때를 말함)

① _____에 ② _____아니오 (* 8번으로 가시오)

7-1. 총 몇년동안 거기서 일하셨습니까? 총 _____년

7-2.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그만둘 당시 직장내에서 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_____평사원 (일반사원, 사무원, 기능공, 비서, 보일러기사, 청소부, 수위등)

② _____대리급

③ _____차장급

④ _____부장급

⑤ _____임 원 (이사, 사장)

7-3.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_____정년퇴직

② _____질병

③ _____봉급이 적어서

④ _____승진기회가 적어

⑤ _____다른 사람과의 불화

⑥ _____본인의 개인사업을 하고 싶어서

⑦ _____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⑧ _____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8. (*가구주가 무직이면 II. 가구주의 노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로 가시오)

선생님께서는 고용되어 봉급이나 수당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이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자영업자이십니까?

① _____임금근로자 ② _____자영업자

9. 선생님이 하시는 일중 가장 주된 일은 다음 어느 산업에 속합니까?

- ① _____ 광업
- ② _____ 제조업
- ③ _____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④ _____ 건설업
- ⑤ _____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 ⑥ _____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⑦ _____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 ⑧ _____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 ⑨ _____ 농업, 임업, 어업
- ⑩ _____ 기타

10. 선생님의 직업이 다음 전문직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_____ 의료전문직 (의사, 약사, 간호원, 병리검사원등으로 의 료계통 의
해 당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
- ② _____ 법률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등으로 법률계통의 해 당면허
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
- ③ _____ 예술전문직 (저작가, 언론인, 조각가, 작곡가, 연예인, 배우등 예
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 ④ _____ 기타 전문직 (건축사, 회계사등)

11.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곳, 혹은 경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료를 받으
면서 1년에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명입니
까?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일 경우는 본사 및 다른 지사에서 일하는 사
람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 주십시오)

① _____ 10인 이상 (* 12 번으로 가시오)

② _____ 1-9인 사이

→ 11-1, 1-9 사이면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_____ 명

12. 선생님께서는 몇살쯤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은퇴하실 예
정이십니까? _____ 세

II. 가구주의 노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

13. 선생님께서는 노후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① _____ 생명보험

② _____ 산재보험

③ _____ 공적연금

④ _____ 사적연금

⑤ _____ 저축

⑥ _____ 계

⑦ _____ 퇴직금

⑧ _____ 부동산구입

⑨ _____ 주식구입

⑩ _____ 유산상속기대

⑪ _____ 자녀의존

⑫ _____ 친척도움

⑬ _____ 준비하고 있지 않다.

⑭ _____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바람): _____

13-1. (* 13 번에서 ⑪, ⑫, ⑬에만 답을 한 경우에)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_____ 노후나 장애, 사망이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사건같지 않아서

② _____ 현재 소득으로 그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서

③ _____ 자녀의존으로 충분해서

④ _____ 노후대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⑤ _____ 기타: _____

13-2. (* 13 번에서 ⑥항 계에 답을 한 경우에) 계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타게 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 이미 타신 경우

는 0 원입니다) _____ 원

→ 13-3. (* 13 번에서 ⑤항 저축에 답을 한 경우에) 저축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적금의 경우 나중에 타게되는 금액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_____ 원

14.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_____ 예 (* IV. 가구주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② _____ 아니오

→ 14-1.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_____ 안다.

② _____ 모른다. (*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시오)

→ 14-2.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_____ 현재 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

② _____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③ _____ 다른 것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다.

④ _____ 내는 것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⑤ _____ 연금제도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⑥ _____ 연금외 다른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⑦ _____ 가입하고 싶으나 국민연금에 가입절차를 잘 모른다.

⑧ _____ 가입하고 싶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장소가 너무 멀다.

⑨ _____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⑩ _____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면 IV. 가구주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젊을 때에 버는 수입의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가가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60세가 될 때 매달 일정액수의 연금을 지급해 주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서 일

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자와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제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장래 받을 연금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보다 현실키로 비교해 볼 때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게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되 받을 때는 소득이 많았던 사람보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이 낸 것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타가므로 국민전체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근로자는 봉급의 3%중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이 반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영자인 경우는 월 7,500 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자가 현실키로 월 7,500 원을 20년간 보험료로 내면 60세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월 약 49만원씩(현실키로 11만원)기본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에 가입한 자가 도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5. 이 같은 국민연금제도가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 필요하다. ② _____ 필요없다.(* 15-2번으로 가시오)

→ 15-1.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시겠습니까?

① _____ 차차 가입하겠다.(* 16번으로 가시오)

② _____ 가입하지 않겠다.

→ 15-2. 국민연금제도가 필요없거나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① _____ 현재 소득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다.

② _____ 경제불안으로 연금을 제때에 지급받게 될지 의심스럽다.

③ _____ 물가상승 때문에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제일 안전한 노후준비 방법이다.

④ _____ 혼자의 힘으로 노후, 장애, 사망을 대비해 준비할 수 있다.

⑤ _____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다.

⑥ _____ 다른 연금을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이다.

⑦ _____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연금이 필요없다고 답했다라도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봉급의 3%중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외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7,500 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본인이 매월 납부해야 한다면 보험료가 현재 본인에게 주는 부담은 어느정도 입니까?

① _____ 매우 작다. ② _____ 작다. ③ _____ 알맞다. ④ _____ 크다. ⑤ _____ 매우크다.

17. (* 17 번은 자영자에게만 질문)

현재 일정한 봉급을 받지 않고 선생님의 사업을 직접 돕고 있는 가족중에 한 사람당 매월 7,500 원씩 보험료를 내거나 일년에 몇번 나누어서 낸다면 몇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돕고 있는 가족 _____ 명중 _____ 명

18. 현재 근로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에 정부가 부담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가 부담해 주는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라도 선생님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18-1. 정부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생님의 보험료를 어느정도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의 _____ %

19.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선생님의 보험료중 일부를 부담해 줄 능력이 현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19-1. 정부가 부담해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의 보험료를 어느정도 실제로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의 _____ %

20. 선생님께서는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과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중 어느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받을 때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일단 내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① _____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

② _____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

→ 20-1.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께서는 매월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까?

월 _____ 원

21.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합니까?

① _____ 매월 ② _____ 1년에 4번 ③ _____ 1년에 2번 ④ _____ 1년에 한번

22.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에 전 국민을 모두 당연히 가입시키는 것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에는 모든 국민을 당연히 가입시키는 방법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모두 당연히 가입시키면 현재 국민연금제도로 볼 때, 소득이 적은 사람도 가입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낸 것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가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연금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① _____ 모두 당연히 가입시키는 것 ② _____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는 것

IV. 가구주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사항

○ 23,24 번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협조를 받으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23. 같이사는 가족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음식, 옷, 집세, 교육비, 의료비, 저축, 세금등 모든 지출을 포함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 원

24. 같이사는 가족의 월평균 식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원

25. 가구주 및 가구주와 1년에 3개월 이상 같이사는 가족의 소득종류 및 월평균 소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가족이 주는 용돈은 소득에서 제외되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보내주는 용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가족부호	가구주와의 관계	소 득 종 류	월평균소득액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사위 / 며느리 6. 손자 / 손녀 7. 형제	1. 봉급 및 임금 2. 사업소득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 3. 부동산소득(임대료, 집세 등) 4. 기타소득(이자, 주식, 배당,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보내주는 용돈등)	
01	1. 가구주		
02			
03			
04			
05			

(*가구주가 무직인 사람은 질문 끝.)

V. 가구주의 직업 및 조세에 관한 사항 : (* 임금근로자에게만 질문하십시오)

26. 선생님께서는 근무처에서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십니까?

- ① _____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② _____ 3개월 미만 임시 근무
 ③ _____ 일용근무 (매일매일 일당을 받으면서 일함)

27. 1987년에 선생님께서는 봉급 및 임금의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흔히 갑근세란 명칭으로 월급에서 미리 제하여 짐) 내셨습니까?

-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사람은 질문 끝.)

VI. 가구주의 직업 및 조세에 관한 사항 : (* 자영업자에게만 질문하십시오)

28. 선생님께서는 노후시 본인의 사업을 물려 받아서 할 자녀를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29. 선생님께서 혹시 아프셔서 일을 장기간 못하게 될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하던 일을 능히 맡아서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족원 가운데 있습니까?

- ① _____ 있다.
 ② _____ 없다.

30. 선생님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31. 선생님께서는 1987년에 번 총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내셨습니까?

-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아닌 경우는 질문 끝)

→ 31-1. 1987년에 번 총 사업소득에 대해 내신 사업소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사람 질문 끝)

전 국민 연금확대방안 기초조사

(농가 조사표)

주소 : _____ 도 _____ 시(군) _____ 동(읍, 면) _____ 리 _____ 번지

가구주 성명 : _____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제 1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1. _____완료 2. _____부분미완 3. _____가구주부재 4. _____응답거부
제 2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1. _____완료 2. _____부분미완 3. _____가구주부재 4. _____응답거부
제 3 차 방문일자 방문결과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1. _____완료 2. _____부분미완 3. _____가구주부재 4. _____응답거부

1988 년

보 건 사 회 부

한 국 인 구 보 건 연 구 원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는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지출에 대해 가족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분을 가구주로 정의하고 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입을 얻기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① _____에 ② _____아니오 (*아닌 경우는 질문 끝)

2. 선생님의 주업이 농업이십니까?

① _____에 ② _____아니오 (*아닌 경우는 질문 끝)

I. 가구주 및 가족의 기본사항

3.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_____남 ② _____여

4.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5.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다음중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① _____유배우자 ② _____배우자사별 ③ _____이혼 ④ _____미혼

6. 선생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_____무학

② _____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③ _____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④ _____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⑤ _____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⑥ _____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

7. 가족사항(이 문항에서의 가족은 가구주 및 가구주와 1년에 3개월 이상 함께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만을 포함합니다.)

가족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직업유무여부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며느리/사위 6. 손자/손녀 7. 형제	만 나이를 말씀해 주 십시오.	수입을 얻기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무직) 3. 기타(가구주의 농업을 봉급을 받지않고 도와주고 있는 경우)
01	1. 가 구 주		
02			
03			
04			
05			
06			
07			
08			
09			
10			

8. 선생님께서는 노후시 본인의 농업을 물려받아서 경영할 자녀를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9. 선생님이 혹시 아프셔서 일을 장기간 못하게 될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하던 일을 능히 맡아서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족원 가운데 있습니까?

① _____ 있다. ② _____ 없다.

10. 선생님은 몇살 쯤 수입을 얻기위해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은퇴하실 예정이십니까? _____ 세

I. 가구주의 노년, 장애, 사망에 대한 준비실태

11. 선생님께서는 노후,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하여 다음중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① _____ 생명 보험

② _____ 산재 보험

③ _____ 공적연금

④ _____ 사적연금

⑤ _____ 저축

⑥ _____ 계

⑦ _____ 퇴직금

⑧ _____ 부동산구입

⑨ _____ 주식구입

⑩ _____ 유산상속기대

⑪ _____ 자녀의존

⑫ _____ 친척도움

⑬ _____ 준비하고 있지 않다.

⑭ _____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바람) : _____

→ 11-1. (* 11번에서 ⑪, ⑫, ⑬항에만 답을 한 경우에)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_____ 노후나 장애, 사망이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사건
같지 않아서

② _____ 현재 소득으로 그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서

③ _____ 자녀의존으로 충분해서

④ _____ 노후대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⑤ _____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11-2. (* 11 번에서 ⑥항 계에 답을 한 경우에) 계의 규모
는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타게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 이미 타신 경우는 0원입니다.)

_____ 원

→ 11-3. (* 11 번에서 ⑤항 저축에 답을 한 경우에) 저축의 규
모는 얼마나 됩니까? (적금의 경우 나중에 타게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원

Ⅲ. 국민연금에 관한 질문

12.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_____ 예 (* IV. 농지경영 현황으로 가시오)

② _____ 아니오

→ 12-1.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_____ 안다.

② _____ 모른다. (*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시오)

→ 12-2.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① _____ 현재 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

② _____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③ _____ 내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 수입액이 너무 적다.

④ _____ 내는 것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⑤ _____ 연금제도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⑥ _____ 연금외 다른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⑦ _____ 가입하고 싶으나 국민연금 가입절차를 잘 모른다.

⑧ _____ 가입하고 싶으나 국민연금 가입하는 장소가 너무 멀다.

⑨ _____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⑩ _____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가구주가 60 세 이상이면 IV. 농지경영현황으로 가시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988 년 1 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젊을 때에 버는 수입의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가가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60 세가 될 때 매달 일정액수의 연금을 지급해 주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자와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제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장래 받을 연금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총액보다 현싯가로 비교해 볼 때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게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되 받을 때는 소득이 많았던 사람보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이 낸 것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타가므로 국민전체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근로자는 봉급의 3%중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이 반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영자인 경우는 월 7,500 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자가 현싯가로 월 7,500 원을 20년간 보험료로 내면 60세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월 약 49만원씩 기본연금을 받게 됩니다.(현재 싯가로 11만원) 이에 추가로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가급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에 가입한 자가 도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3. 이같은 국민연금제도가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_____ 필요하다. ②_____ 필요없다.(* 13-2 번으로 가시오)

→ 13-1.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시겠습니까?

①_____ 차차 가입하겠다.(* 14 번으로 가시오)

②_____ 가입하지 않겠다.

→ 13-2. 국민연금제도가 필요없다거나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①_____ 현재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다.

②_____ 경제불안으로 연금을 제때에 지급받게 될지 의심스럽다.

③_____ 물가상승 때문에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제일 안전한 노후준비 방법이다.

④_____ 혼자의 힘으로 노후, 장애, 사망을 대비해 준비할 수 있다.

⑤_____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다.

⑥_____ 다른 연금액을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이다.

⑦_____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연금이 필요없다고 답했다라도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봉급의 3%중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이 반반씩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외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7,500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본인이 매월 납부해야 한다면 현재 보험료가 본인에게 주는 부담은 어느정도입니까?

①_____ 매우 작다. ②_____ 작다. ③_____ 알맞다. ④_____ 크다.

⑤_____ 매우 크다.

15. 현재 일정한 봉급을 받지 않고 선생님의 농업을 돕고 있는 가족중에 한 사람당 매월 7,500원씩 보험료를 내거나 일년에 몇번 나누어서 낸다면 몇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을 돕고 있는 가족 _____명 중 _____사람

16. 현재 근로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에 정부가 부담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가 부담해 주는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건어서라도 선생님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에 ② _____아니오 (* 17번으로 가시오)

→ 16-1. 정부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생님의 보험료를 어느정도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의 _____ %

17.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선생님의 보험료중 일부를 부담해 줄 능력이 현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에 ② _____아니오 (* 18번으로 가시오)

→ 17-1. 정부가 부담해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의 보험료를 어느정도 실제로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의 _____ %

18.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과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과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받을 때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일단 내면 받을 때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②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것

발원

③ 1 ½ 2 ¼ ④ 1 ½ 1 ¼

②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는 것

- 181 -

21-1. 자작 소유지의 규모(평수) -- 본인의 것으로서 본인이 손수 경영하는 농지의 규모는 몇평입니까?

가족부호	가구주와의 관계	논	밭	과수원	목초지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사위 / 며느리 6. 손자 / 손녀 7. 형제				
01	1. 가 구 주				
02					
03					
04					
05					
06					
07					

21-2. 임대지의 규모(평수) -- 본인의 것으로서 본인이 자작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농지는 몇 평입니까?

가족부호	가구주와의 관계	논	밭	과수원	목초지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사위 / 며느리 6. 손자 / 손녀 7. 형제				
01	1. 가 구 주				
02					
03					
04					
05					
06					
07					

21-3. 임차지의 규모(평수) -- 남으로부터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몇 평입니까?

가족부호	가구주와의 관계	논	밭	과수원	목초지
	1. 가구주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사위 / 며느리 6. 손자 / 손녀 7. 형제				
01	1. 가 구 주				
02					
03					
04					
05					
06					
07					

22. 선생님께서 노후로 인하여 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게 된다면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 ① _____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
 ② _____ 자녀에게 임대해 주겠다.
 ③ _____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해 주겠다.
 ④ _____ 팔 것이다.
 ⑤ _____ 농지 주인에게 되돌려 주겠다.
 ⑥ _____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3. 선생님께서 1987년에 농지세를 내셨습니까?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 질문 끝)

→ 23-1. 냈다면 1987년의 농지세는 얼마를 내셨습니까?

연 총 _____ 원

24. 본인이 납부하는 농지세를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 볼 때 농지세 부담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_____ 매우 작다. ② _____ 작다. ③ _____ 적당하다.

④ _____ 크다. ⑤ _____ 매우 크다. (* 질문 끝)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 _____. 도시저소득층의 현황과 대책. 1988.
- _____. 인구센서스보고서. 1970, 1975, 1980, 1985
각 연간.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3, 1987 각 연간.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87.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 _____.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결과 요약분). 1986.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7.
- 농림수산부 유통경제통계담당관실. 농가경제조사요령. 1988.
- 박재간, 임춘식.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1983.
-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관계법령집. 1987.
- _____.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88.
- 서기문. 도시거주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
거노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 유양순. 재가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지역 및 직종의료보험조합 86결산 및 87예산현황.
임종권 외 4인. 한국 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재무부. 증기세제방향과 88세제개편과제. 1988.
- 정명채, 김정기, 김태곤. 농어민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연구.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 1987.
- 조형.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총,
41집, 1982.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파급효과. 1986.9.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4.
-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88.
- Fowler, Floyd J. Survey Research Metho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1984.
- Nouris, M. J. SPSS X-Advanced Statistics Guid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5.
- Rejda, George 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2nd ed., Englewoods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4.
- Rossi, P. H.; Wright, J. D.; Anderson, A. B. Handbook of Survey Research. Ohan: Academic Press Inc., 1983.
- Thompson, Kenneth. Introduction of Social Schemes for Self Employed Persons. Report for the Eighth ISSA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1988.
- Titmuss, Richard M. Commitment to Welfar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6.
- U.K. Statistical Office. Statistical Yearbook. 1985.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5. 1986.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The Social Protection of Self-Employed Workers. 1981.